

비교법제 연구 09-15-□□-6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

이 준 호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Summary Report**

연구자 : 이준호(부연구위원)
Lee, Joon-Ho

2009. 11. 30.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럽각국, 중남미, 호주,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에너지개발법제와 투자법제에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상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유럽각국에 대한 에너지개발 법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상대국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법제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 과거에 비하여 많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개발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호주와 중남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외교의 중요한 상대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국가들의 에너지개발법제 뿐만 아니라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유럽국가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은 회의가 이미 유럽 전체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에 관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은 여전히 유럽 에너지법의 핵심과제이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보장과 환경 문제가 에너지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막중하다. 해상 풍력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여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규제의 등장으로 인해 에너지규제법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을 정도이다.

한편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수입국으로서의 의미가 큰

지역으로서 우리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주요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자원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더 개발할 지역이나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쟁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개정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원개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쟁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념하여 자원개발투자의 진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 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에너지개발법제, 에너지투자법제, 유럽, 중남미, 카자흐스탄, 호주, 규제합리화,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

Abstract

This reports make the research on Europe, Latin-America, Australia and Kazakhstan. In the view point of the current necessity, this countries are very proper and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at, the focused international current issues are the energy development law and the energy investment law.

The research on the energy law of Europe is of small importance in that Europe is not a energy diplomatic partner country.

But, Because Europe is similar to Korea in that there is few energy resource and Europe have a good governance of the energy development, the research on the energy law of Europe is very significant.

The other hand, Because Latin-America, Australia and Kazakhstan have rich energy resource, in the standing of Korea, the research on not only the energy development law, but also the energy investment law is of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In Europ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of questions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of a carbon-based economy, are already marked and will become more so in the decades to come. Whil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of energy and increased liberalization remain key themes for energy law in Europe, it is striking the extent to which security of supply and environmental issues increasingly dominate the regulatory landscape. It has even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area of energy law regulation, the development of wind energy offshore.

In other hand, the Latin America including Brazil, Venezuela, Peru, Chile, and Argentine have significant meaning to Korea not merely the importing countries but the investment market.

Kazakhstan is internationally regarded as the major country that has rich energy resources. Many Countries have already launched the development and investment on energy sector of Kazakhstan. But, it is Kazakhstan have still had rich energy resources. Therefore, The relevant dispute have happened and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strengthen the control power to amend the energy acts. In these situations, for the new energy dispute not to be happened, it is considered the Kazakhstan's domestic situations and the energy development & investment law.

Australia relatively has weak found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y and depends on service industry, it has a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nd is evaluated as one of resource-exporting countries. Especially, i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safest countries for investment in the field of energy sources with a stable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As a conclusion, Australia has friendly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that wants overseas expansion to invest and explore Australia's natural and energy resources because it encourages foreign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vest in its energy sources in spite of the global nationalism over resource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Korea try to invest and participate in development plan of Australia's energy resources as soon as possible.

※ Key Words : the energy development law, the energy investment law, Europe, Latin-America, Australia, Kazakhstan, the reasonable regulation, the foreign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the energy sector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11
I. 연구의 목적	11
II.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9
I. 주요 내용 및 범위	19
II. 보고서의 체계	20
제 2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25
제 1 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25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25
II. 유럽국가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26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산업 현황	29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29
II. 호주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36
제 3 절 중남미의 에너지 산업 현황	39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39

II. 중남미 국가별 에너지 자원 현황	40
III.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47
제 4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	56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56
II.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59
제 3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61
제 1 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61
I. 석탄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61
II.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65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79
I.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79
II. 광업권의 내용	80
III.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84
IV. 최저 지출 조건	85
V. 환경 보호	86
VI.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91
VII.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94
제 3 절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100
I. 브라질	100
II. 베네수엘라	109
III. 페 루	112
IV. 아르헨티나	116
V. 콜롬비아	124

제 4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126
I. 지하자원개발법의 의의	126
II.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	126
III.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	130
IV. 석유법의 주요내용	132
제 4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135
제 1 절 호주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135
I. 호주에 대한 에너지산업 투자 진출 형태	135
II. 투자진출 형태별 절차	136
III.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140
IV.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142
V.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142
V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145
제 2 절 중남미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149
I. 브라질	149
II. 베네수엘라	155
III. 페 루	163
IV. 칠 레	170
V. 아르헨티나	177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188
I. 카자흐스탄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188
II. 수용의 문제	193
III. 투자특혜제도	196

제 5 장 결 론 205

참 고 문 헌 2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I.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지역별로 국가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협정 또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간 시스템 구축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의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 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별됨. 이러한 정책의 특징은 에너지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미 국 형	유 럽 형
대상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정책접근	현 에너지 문제점 해결 (Positive Approach)	미래 목표 설정, 경로 역추적 (Normative Approach)
정책중점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주체	정부 적극 주도	민간 정부 함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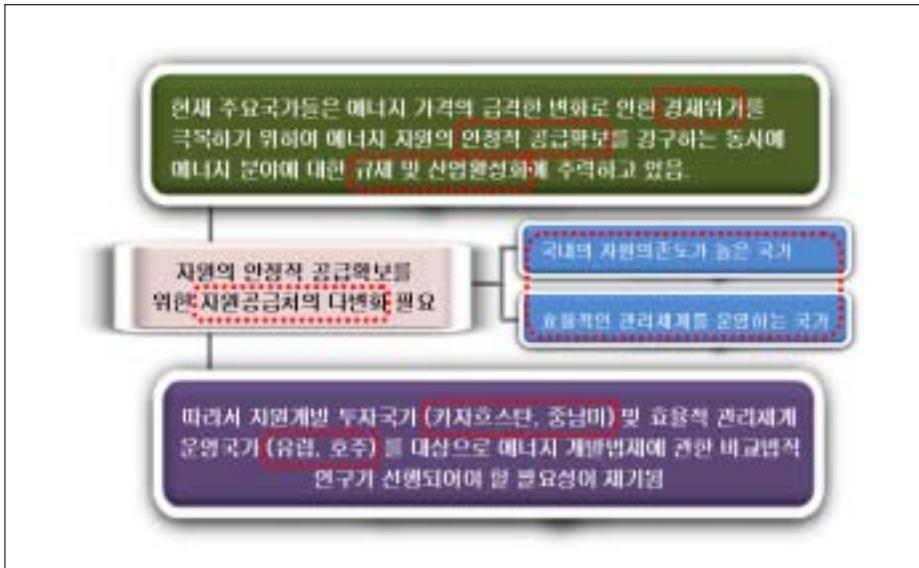
위의 도표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의 에너지정책과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시사하며, 둘째 정부의 규제와 민간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규제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는 에너지정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에너지법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 등이 중요한 이슈로 평가될 수 있다.

- (1)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 (3) 에너지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항목 등에 대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 및 국내법적 시사점에 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1. 유럽국가(EU)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유럽의 경우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변화하는 에너지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EU차원에서의 유럽전략보고서를 작성·수립하였고,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시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EU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대규모 수입국가로서, 기술개발이나 에너지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인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을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EU는 미국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서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통일적인 정책마련과 집행을 시도한다.

즉, 현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현재의 50%에서 2030년에는 65% 정도로 더욱 높아지고 역내 에너지 시장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07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EU의 에너지 안정성 제고, 경쟁력 보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안을 담고 있는 “An Energy Policy for Europ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 EU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요인 분석, (2) 모든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에 지침이 될 전략적 목표 설정, (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계획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가로부터의 가스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범유럽 차원의 공조체제를 공공하게 추진한다는 국제협력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법제 및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집행한다는 시사점 등이 있는 국가로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카자흐스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유럽의 에너지법제 정책과는 다른 경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의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카스피해 연안국가로서 2000년대 이후로 중동국가의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에너지산업 협력 대상국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국가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주위 국가와 협력하여 활발한 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운송 및 판매 루트 확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2001년 11월 천연가스의 탐사·생산·운송 분야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10년간의 장기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국내의 가스 생산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신규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보다는 카자흐스탄은 자국산 천연가스의 장래 수출량증가를 피하기 위해 카라차가나크 등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변국가로서 국가경제력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송유관 시설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석유자원에 대한 자원교류를 수행한 것과 같이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자국의 에너지개발을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산업혁신전략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원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IT, BT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장기국가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 2008년도 WTO가입을 목표로 금융서비스, 관세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장경제 확립 및 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노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2030년 세계 5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국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현대화와 경제구조 다변화 등의 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전략 추진과정에서 수도개발 등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균형 있는 인프라 개발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해외자원개발투자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현재 국제적인 외국의 거대기업들에 의하여 이미 투자진입이 선점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탐사가

완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함으로써 차후의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대상국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투자확대를 도모하려고 하는 국가라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호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호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서 평가받는다. 특히 경제적·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국가라고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호주 자원개발의 참여는 자원개발에 대한 호주의 세계적인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최근 호주는 2003년과 2007년에 동티모르와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해외 에너지자원에 관한 투자협정의 일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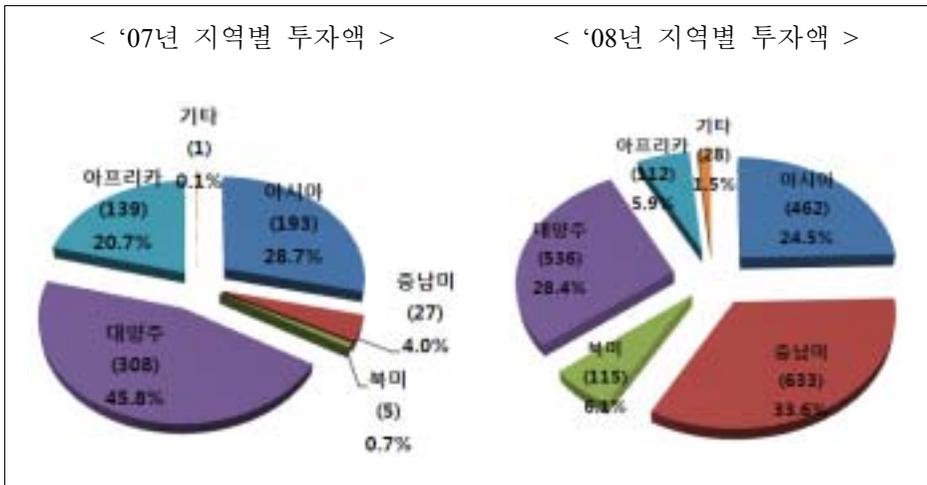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 ※ 한국·호주간 자원협력위원회 에너지 관련 주요 의제
- 에너지 정책 (에너지수급 전망, 양국 에너지정책 소개)
- 석탄, LNG, 우라늄, 광물자원 교역·투자·개발 협력
 - * 유연탄 등 자원개발사업 현안점검, 신규프로젝트 협의 및 정보입수, LNG도입 등
- 청정·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CCS, Clean coal 협력 등)
- 다자협력 프로그램에서의 공조 (APP, APEC EWG, EAS 등)
 - * APP : 아·태 기후변화파트너쉽, EWG : 에너지워킹그룹, EAS : 동아시아정상회의

4. 중남미 국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현재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수입국으로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에너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또한, 다음의 도표에서 설명되듯이 단순한 자원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서 당해 지역의 에너지개발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서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계약체결한 콜롬비아 CPE7 광구 및 CPE5 광구 그리고 CPO-2 외 3개 광구에 대하여 콜롬비아 석유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생산광구가 있는 크루도스 페사도스 분지의 유망 CPO 광구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경질 원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등과 같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자원수입대상국뿐만 아니라, 해외자원투자대상국가로서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국가들에 대한 에너지개발 법제 및 투자법제의 연구는 국내 에너지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정부는 러시아, 중앙아, 남부아프리카 등 대규모 경제·산업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 콜롬비아 등 외국인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산업 협력을 연계한 정상급 순방 및 초청외교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I. 주요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는 국가별 개별보고서의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내용은 개별보고서의 내용으로 하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각 국가별 개별 보고서의 공통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법제와 정책현황에 대하여 서술한다. 특히 에너지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에너지 법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분석하며, 아울러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동향과 해외자원개발 현황을 서술한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여 향후 진행된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제 정책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총론내용의 중심으로서 에너지 법제에 관하여 본 보고서와 개별보고서가 중심으로 취급할 쟁점사항에 관하여 서술한다. 일반적인 에너지 법제의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에너지자원에 관한 규제법리에 관한 내용을 서술·분석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 투자법제에 관하여 개별보고서에 국가별 상황을 분석하는데 전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개별보고서 연구내용의 주요 범위는 상기한 국가인 「유럽각국」, 「카자흐스탄」, 「호주」,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테마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 및 구성한다.

(1)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 ①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입,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독점 등에 대한 규제체계
- ② 규제기관의 역할과 성격 및 조직 운영
- ③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유연화
- ④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조치 등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 ①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설비 감독 체계
- ② 국가간 에너지 공급에 관한 설비 및 시설 운영
- ③ 국제시장에서의 산업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체적 내용과 설비감독에 관한 규제기법

(3)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등

- 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제의 구체적 내용
- ②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 에너지산업에 대한 안보와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환경
- ③ 대상국가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례

II. 보고서의 체계

총론적 연구의 진행을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하여 개별 대상국가에 대한 개별 보고서 형태로 연구를 진행한다. 개별 대상국가별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일한 항목의 목차구성에 의하여 보고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진행을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원 센터내의 연구인력에 의하여 각 개별대상국가별 보고서를 종합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분석을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정책기여 및 입법지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유럽국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투자분석보다는 유럽각국의 개별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시사점이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에, 목차구성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차별화를 시도함.

□ 서 론

-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관계
- EU 역내 협력체제
- 2009년 이후의 에너지정책 전망
- 연구범위 :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영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비교

- 정책의 변천
- Ownership issues
- 규제관청의 조직
- 규제수단

화석에너지자원의 개발에 대한 규제 비교

- 석 탄
- 석 유
- 가 스

가스산업 규제 비교

- 시장구조
- 1998년 Directive 이후의 국별 가스시장
- Directive 2003/55/EC
- Gas trading

전력산업 규제 비교

- 발전원
- 전력산업의 구조
- 1996년 Directive 이후의 국별 전력시장
- Directive 2003/54/EC
- Electricity trading

비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 비교

- 원자력
- 재생가능에너지
-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조세

- 에너지와 환경규제 비교
 - 에너지분야에 대한 환경규제
 - Abandonment and removal of offshore installations
 - 공기오염과 환경변화

- 결 론

제 2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제 1 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본 연구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가운데 석탄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상인 국가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및 영국 4개국뿐이다. 그렇지만 이 4개국들도 높은 생산비와 정부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해 생산량이 점차 줄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 생산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나 석탄을 전혀 생산한 실적이 없거나 생산을 중단한 국가들 중 유연탄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예컨대 덴마크와 네덜란드). 이들 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청정석탄’(clean coa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흥미를 끌고 있다. 이것은 CO₂를 회수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발전소를 말한다. 이러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폴란드와 같은 다른 EU 회원국이나 남미, 남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석탄을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은 예외적인 국가이다.

16.50 생산량의 감소와 원가의 양등으로 인해 영국, 스페인 및 독일은 지난 20년간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깊은 지하에 부존된 석탄의 채굴에 드는 비용과 공해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깨끗한 석탄을 수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무연탄(hord coal)과 갈탄(lignite; brown coal)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가 주로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대규모의 탐사와 생산을 행하고 있

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대륙붕 그리고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Barents Seas)에서 석유와 가스의 매장이 확인되었지만 영국과 네덜란드의 육상(onshore)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해상보다 육지의 가스 생산이 훨씬 중요하다. 앞에서 열거한 4개국 외에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된 나라로서 독일(북독일 및 북해), 프랑스(the Lacq field), 이탈리아(Po Valley) 및 폴란드(육지 및 Baltic Sea)가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의 석유 생산은 북해와 비교할 때 양에서 큰 차이가 있다.

II. 유럽국가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어느 나라나 국회가 에너지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름이 없지만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행정적 전통, 에너지산업의 구조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 행하는 정치적 배려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다.

모든 산업을 하나의 행정부처와 1인의 장관이 총괄하는 나라가 가장 많다. 에너지산업도 수많은 산업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도의 에너지부를 따로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것은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서 비롯되거나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에너지산업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직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에너지문제를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1994년 환경부와 합쳐서 환경에너지부가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중시되면서 수송에너지부(Ministry of Transport and Energy)로 통합되었다. 노르웨이는 1978년 석유에너지

부(Ministry of Oil and Energy)를 신설하였다. 영국도 한 때 에너지부를 따로 두었지만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후에는 그 책임자가 장관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부서로 격하되었다. 즉 에너지 문제를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이 담당하게 되었다.

재정, 경쟁, 외교, 환경 및 기술과 같은 문제를 담당하는 수많은 행정관청들도 에너지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관청 사이의 효과적인 조정이 어느 나라나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 의한 상업적 성격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기업(State companies or public corporations) 형태를 활용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정책적 관심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혼동될 위험 다시 말해서 정책수립자로서의 기능과 규제자로서의 기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정부가 에너지산업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데 위의 기능들을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별로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s)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부터 법률에 의해 전력과 가스 및 난방의 가격과 공급조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두 위원회(Electricity Price Commission과 Gas and Heat Price Commission)를 두고 있었는데 위원의 50%가 업계 대표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만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1999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이어 2000년에 에너지규제청(Energy Regulatory Authority; DERA)이 설립되자 비로소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덴마크는 에너지청(Energy Authority)이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DERA가 에너지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능

을 분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력과 천연가스 분야의 독립규제기관 Ofgem이 2000년 창설되었으며 정책 결정은 통상산업부의 Director General이 담당한다. 스페인은 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ssion; CNE)가 전력 및 가스 부문의 규제를 담당한다. 노르웨이는 에너지법에 따라 수자원·에너지이사회(Norwegian Water Resources and Energy Directorate; NVE)가 에너지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석유에너지부(MPE)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재무산업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지만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기위원회(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lectricité; CRE)가 담당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쟁청(Nederlandse Mededingings Autoriteit; NMa) 산하의 독립된 부서(independant chamber)로서 1998년 창설된 DTe(Directie Toezicht Energie)가 에너지산업의 규제를 담당한다. 독립규제기관은 모두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영업과 요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담당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규제기관에 대한 통제는 별도의 불복제도(recourse systems)에 의해 행해진다. 즉 규제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청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EC market directives에는 회원국은 반드시 전기·가스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하나 이상의 규제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정부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규제기관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일상적인(day-to-day)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상당히 장기간 거액의 투자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안정성을 부여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에너지사업자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특수한 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경쟁의 촉진 및 공급사업

자와 고객의 이해관계 조정, 사업 허가(issuing licenses), 가격규제, 품질관리, 법규준수 감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산업 현황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1. 개 요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이나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다. 이에 반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자본의 외국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호주 국내의 경제 개발 과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3차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하여, 제조업은 GDP 기여율이 12%에 불과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호주 수출은 농림 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산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전통적인 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원산업이라고 보아야 하며, 해외투자자본의 유입도 이러한 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하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호주는 세계 자원보유 및 생산면에서 주재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국토 총 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7,686,850 평방km)에 이르는

호주는 주요 광산물 수출국으로 OECD 국가 중 수출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이다.

이밖에 주요 광물 자원으로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세계 7% 차지, 세계 1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호주는 광물 자원 외에도 원유(세계 0.3% 차지, 세계 4대 수출국)와 액화 천연가스(LNG, 세계 1.4% 차지, 5위 수출국)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지하자원 현황 및 생산 동향

① 원 유 (Petroleum)

호주의 원유 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주요 매장 지역은 남호주 Bass Strait(18억 배럴) 및 서호주 Carnarvon Basin(11억 배럴) 지역이다. 원유는 호주의 4대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의 4.2%(연 A\$ 50억)를 차지하고, 주 수출국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다.

호주 원유 생산 및 탐사협회(APPEA; 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and Exploration Association Ltd.)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호주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감소한 1억2천만 배럴로 나타났는데, 호주 원유산업의 경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및 탐사 비용이 70%가량 상승한 것이 감소의 주원인으로 평가된다.

주요 유전으로는 Roller, Skate, Bass, Wanea-Cossack, Laminaria, Corallina, North Rankin, Goodwyn, Gorgon 등이 있다.

②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는 70년대 서호주 북서해상 지역인 North West Shelf (NWS)에서 발견되어 생산이 시작됐고, 1989년부터 LNG수출을 개시하여 세계 제5위 및 아태 지역 제3위의 수출국으로 세계 LNG 수출의 7%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LNG 수출은 연 A\$ 24억으로 주로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일본지역 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와서 중국, 한국 등 수출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천연가스(natural gas)보유국으로 그 매장량이 아태 지역에서 최대 수준인 약 100Tcf (trillion cubic feet)로 세계 총 매장량의 2%를 차지하고, 현 생산량 기준시 약100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탐사를 통해 추가 발굴 가능한 잠재 보유량도 50~170 Tcf 정도 존재한다.

주요 매장지역은 서호주의 North West Shelf(매장량 40Tcf), 남호주의 Cooper/Bass Basin(매장량 10Tcf) 등이며, 그 외 서호주 주변 해상 및 티모르 해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LNG의 경우 서호주, NWS에서 연 12백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서호주 지역의 Gorgon(2010년부터 연 4백만 톤 생산) 및 Scott Reef / Brecknock (2014년부터 연 4백만 톤 생산), 북호주 및 동티모르 해협 근역의 Bayu-Udan(2006년부터 연 3백만 톤 생산) 및 Sunrise 광구 등이 있다.

한국(가스공사)은 지난 2003년 최초로 호주와 LNG 중기 도입계약(7년간, 350만 톤)을 체결하였다.

③ 석 탄 (Coal)

세계 총 매장량의 8.3%에 해당하는 약 821억 톤의 석탄 매장량(향후 230 여년 채굴 가능)을 보유함과 아울러, 세계 제1위 석탄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교역의 32%를 차지한다. 연간 2.7억 톤을 생산하여 세계 제4위 생산국(세계 총 생산의 7%)이며, 국내생산의 79%(2.2억 톤)가 해외로 수출된다.

탄종별로는 제철용탄(coking coal)이 세계 총수출의 50%이상을, 발전용탄(thermal coal)이 세계 총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호

주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총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이며, 한국은 석탄 총 수입의 약 4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석탄 생산지역은 호주 동부지역인 퀸즈랜드 주(주로 제철탄, 380억 톤)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주로 연료탄, 매장량 320억 톤)로 호주 석탄 생산의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는 호주 갈탄 생산량의 전량을 차지하며, 호주는 세계 갈탄 매장량의 24%, 세계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주가 호주 석탄(black coal) 생산량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9-10년 석탄(black coal)(판매용)의 생산량을 3.64억 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④ 우라늄 (Uranium)

호주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확정 매장량(RAR: Reasonable Assured Resources, US\$ 80/kilogram의 비용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 714,000톤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RAR의 27%로 세계 최대 매장국이다.

호주의 6개 주요 우라늄 광상으로는 올림픽 댐(남호주, 세계 최대 매장지), 엘리게이터 강 주변의 Ranger와 Jabiluka, Koongarra(노던 테러토리), Kintyre와 Yeelirrie(서호주)가 있다.

2006년 호주는 Ranger(산화 우라늄 4,736톤, 노천 채광법), 올림픽 댐(3,382톤, 갱내 채광법), Beverley(825톤, 용해채광법) 세 곳에서 우라늄을 채광한다. 총 생산량은 8,943톤으로 2005년보다 20% 줄어들었으나, 세계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대 우라늄 생산국(캐나다, 25%)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호주는 평화적 사용을 보장하고 군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준 하에 2006년 산화 우라늄 8,660톤(A\$529m)을 수출함. 한국은 연간

천연우라늄 3,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호주 수입이 약 30%(1,000톤)를 차지하고 있다.

⑤ 니켈

호주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으로 세계 매장량의 19.3%인 2,700만톤이 매장되어 있다. 호주의 니켈 생산량은 연간 약 19만톤이며, 서호주의 Ravensthorpe와 타즈마니아의 Avebury에서 새로 생산이 진행되면서 호주의 Murrin Murrin의 생산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제련된 2007/08 니켈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약 114천 톤이었으며, 이는 Kalgoorlie 제련소와 Yabulu 제련소의 보수로 인한 생산부진이 원인이었음. 2008년 상반기에 Yabulu 제련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니켈 수출소득은 약 A\$58억으로 31% 감소했으며, 이는 니켈 단가가 세계적으로 낮고, 호주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⑥ 구리

세계 구리 매장량의 4.6%인 43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2007/08년 호주 구리 광산에서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가량 상승한 878천톤이었으며, 퀸즈랜드의 Lady Annie 광산(연간 25,000톤), Matrix Metals Leichhardt 광산(연간 10,000톤), 서호주의 Jabiru Metals Jaguar 광산(연간 9,600톤)이 2007년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구리 생산을 개시하였다. 2007/08년 호주는 제련된 구리, 구리 광석 및 정광의 수출로 약 A\$62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제련한 구리의 수출 물량은 13% 가량 상승했으며, 구리 정광의 수출 물량은 약 4% 가량 상승하면서 낮은 수출 가격 및 호주 달러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였다.

⑦ 아 연

호주는 세계 아연 매장량의 23.3%인 42백만 톤을 보유한 세계 2위 아연 매장대국이다. 아연광의 2007/08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1.5백만 톤이었다.

2007년 9월 후반 Mount Isa의 납-아연 광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4/4분기 정광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Broken Hill, Endeavor, McArthur River 광산에서의 생산 증가로 감소분이 상쇄되었다. 2007/08년 제련된 아연의 생산량은 3%가량 감소한 약 480천 톤이었는데, 이는 Mount Isa에서의 화재로 인해 아연 정광의 생산 감소 및 그에 따른 Townsville 제련소 4/4분기 생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수요와 생산량의 증가로 2007/08년 아연 광석 및 정광의 수출은 8% 가량 상승한 약 2.1백만 톤 기록하고 있다.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련된 아연의 수출물량도 2007/08년 증가하였으나 낮은 단가와 호주 달러 상승으로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⑧ 철광석

호주는 세계 매장량의 10.7%인 16억 톤을 보유, 세계 4위 철광석 매장대국이다. 철광석 생산량은 2006/07년 288백만 톤으로 24백만 톤이 증가, 2007/08년에는 312백만 톤으로 역시 24백만 톤 가량 증가. 이는 과거 5년간 철광석 탐사 및 개발에 투자한 노력의 결과이다. 2007년 호주의 철광석 수출은 전년 대비 9% 가량 상승한 약 269백만 톤이었으며, 2008년에는 13% 가량 상승, 305백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가 상승과 수출물량의 증가로 철광석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6/07년 호주의 철광석 수출액은 21% 가량 증가한 약 A\$155억이었으며, 2007/08에는 16% 가량 상승한 약 A\$180억으로 추산된다.

⑨ 금

호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은 세계 2위 금 생산국이다. 전국적으로 금광이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이 노천 채굴법으로 생산된다.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탄광은 빅토리아 주의 Ballarat East 금광과 퀸즈랜드의 Twin Hills 금광 등이다.

향후 2년 내 운영을 시작할 탄광으로는 빅토리아 주의 Bendigo 탄광, 서호주의 Fortnum 탄광, 퀸즈랜드의 Gully탄광, Union Reef 탄광 등 다수가 존재한다.

금 생산 능력의 증대, 국제 시장에서의 금값 상승, 중국, 인도, 중동의 금장신구 수요 증대로 호주의 금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⑩ 망 간

호주는 세계 최대 망간 생산국으로 Bootu Creek 탄광, Groote Eylandt 탄광, the Woodie Woodie 탄광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노던 테러토리 소재 Bootu Creek 탄광은 2005년 말에 운영을 시작, 연간 생산량이 6십만 톤에 이르며 전량 수출 예정이다.

역시 2005년 확장을 마친 Woodie Woodie 광산은 연간 생산능력이 1백만 톤 증가하였다.

⑪ 알루미늄

2006/07년에 알루미늄 생산량이 4% 증가(18.5백만 톤)하였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퀸즈랜드 글래스톤 소재의 Rio Tinto's Yarwun 제련소에서 30% 증가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07/08년에는 노던 테러토리 Gove 제련소(연 생산량 1.8백만 톤)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6/07년 호주가 알루미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AS62억이며, 이는 높은 수출단

가와 늘어난 수출물량 덕분으로 추정된다. 2007/08년에는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⑫ 다이아몬드

호주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주요 생산지는 서호주의 Argyle 탄광이다. 2005년 Rio Tinto사는 갱내 붕락식 채굴법 개발에 A\$7억6천만 투자. 2008년 완전 가동 후, 갱내 생산량은 Argyle 탄광 총 생산량의 30% 차지 전망. 노천채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II. 호주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1. 연방 정부 주무 관청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ies)

연방 정부에서는 광업활동에 직접 관련한 기능을 가지는 관청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청이 있다. 이러한 관청이 해외투자자에게 있어서 최초의 접촉창구가 된다. 호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기관은 비자의 취득 및 외자 투자신청의 허가와 유산 보호 그리고 환경관련사항(국제 조약 관계, 선주권 등) 등 국가수준의 정책을 소관하고 있어서,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협의, 허가 및 인가 절차, 감독 업무 등은 각주와 준정부의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2. 산업관광자원부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DITR)

산업관광자원부(DITR)의 소관 사항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사항인 혁신과 투자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 향상 등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이나 사업 원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호주의 제조 부문, 자원

부문,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 경쟁력 및 혁신적 기술 기능이나 인프라의 개발, 해외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외무 무역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외무무역성(DFAT)은 연방 정부 정책에 따른 무역정책과 외무 정책을 소관하고 있으며, 호주의 국익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무 무역성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할 수 있다.

- 호주의 안전 보장 강화
- 호주 경제, 고용의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의 기여
- 호주의 국익을 높이는 글로벌인 협력 관계 강화
- 해외의 호주사람 거주자, 여행자에게의 지원
- 호주의 외무 무역정책에 대한 국민에게의 계몽, 국제적 선전

4. 다문화이민선주민부 (Department of Multicultural, Immigration and Indigenous affairs, DIMIA)

다문화이민선주민관계부(DIMIA)의 소관 사항으로서 다문화, 출입국, 선주민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수행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 체재
- 국경 이민 관리
- 이민 인도적 입국자의 정주에 관한 협의
- 시민권
- 민족 관계
- 다문화 관계
- 선주민 및 화해 문제

DIMIA는 합법적인 입국이나 체재를 통하여 호주의 사회 및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호주의 시민권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감독하여 이민자를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5. 환경유산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DEH)

환경 유산부(DEH)는 자연 환경, 문화적 유산을 포함한 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업계 단체, 기업, 지역사회, 주정부 및 준정부의 정부와 협력하고, 대기 보전, 환경 보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 및 문화적 유산의 보전, 평가를 위하여,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 1999(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를 포함한 환경 관련 법규의 관리 및 실행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환경 조약에 관한 일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6. 외국투자규제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재무부(Treasury)의 외국투자규제위원회(FIRB)는 외국 기업에 의한 호주의 직접투자신청(호주 기업의 흡수 합병 포함)을 접수받아서,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FIRB는 심사 및 조언을 실시하고 최종결정 권한은 재무부장관이 가진다.

7. 연방해외투자촉진청 (Invest Australia)

산업관광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 Resources, DITR)의 외청으로서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호주의 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외국 투자자를 적절하게 산업 및 정부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규칙, 조건에 관한 정보를 외국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2003년 7월에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Axiss Australia와 통

합되었다. Axiss는 1999년에 호주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의 중심으로서 평가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이다.

제 3 절 중남미의 에너지 산업 현황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2007년말 현재 중남미 지역 전체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총 1,234 억 배럴로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50년 후가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 최대 원유보유국은 베네수엘라이며 2007년말 현재 870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여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1987년 현재 거의 비슷한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규 유전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여 20년 사이에 확인매장량이 급감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정부의 적극적 신규 유전개발 촉진정책에 따라 새로이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있다.¹⁾

또한,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자원도 최근의 활발한 탐사 개발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거의 20%에 가까운 확인매장량의 증가를 보여 전세계 천연가스자원 시장에서 4.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약 51년의 가채연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은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이 활발한 신규 가스전 개발에 힘입어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²⁾

1)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4~5쪽.

2)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5~6쪽.

한편으로, 중남미 지역의 석유 일일생산량을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이 지역의 원유생산량은 급증하여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4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결과 이 지역의 석유생산량은 전세계 석유생산의 12.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³⁾

이 지역의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을 보면, 석유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사이에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였다. 2007년말 현재 이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87년 대비 258.9%의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이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2007년 현재 1987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이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6.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⁴⁾

II. 중남미 국가별 에너지 자원 현황

1. 브라질

브라질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대표적인 부존자원으로는 철광석, 니오븀, 탄탈, 주석, 흑연, 질석, 보크사이트, 활석,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이 있다.

브라질은 매장량 기준 세계 5위,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의 대표적 철광석 부존국가이다. 철광석 매장량은 332억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9.8%, 생산량은 3.5억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매장지는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아마존 동부 파라, 중서

3)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7쪽.

4) 외교통상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4~8쪽.

부 마토 그라소 두 술 등이다.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철의 4각 지대(Iron Quadrilateral)’에 집중 부존되어 있으며, 이 지대는 Rio Doce Valley 지역과 Paraopeva Valley 지역으로 구분된다. 최대 철광석 광산은 Carajas(전체 10% 생산)이며, Itabira, Mariana, Germano, Casa de Pedra 등 전국에 53개가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광업회사인 VALE⁵⁾(본사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1977년 민영화)를 중심으로 36개 철광석 생산회사가 53개 철광석 노천광산과 54개 가공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회사인 캐나다의 Rio Tinto와 호주계 BHP Biliton 등 2개 회사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의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연간 약 3,378 톤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수출량은 1,250만 톤,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주요 원자재인 보크사이트는 호주, 기니, 브라질, 자메이카 4개국이 전체 매장량의 66.7%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3위의 보크사이트 부존국가인 브라질은 세계 매장량의 10.6%인 36억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라주 북부지역은 브라질 전체 보크사이트 매장량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철강재 첨가 원료인 망간은 철과 유사한 회색광택을 띠는 금속으로 철, 알루미늄, 동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이며 세계적으로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다. 망간의 세계 매장량은 56.7억 톤이며, 세계 2위의 망간 부존국가인 브라질은 이 중 10.1%인 1억 5,165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망간 광산은 VALE 계열 회사인 Sibra Eletrosiderurgica가 보유하고 있는 파라주의 Carajas 지역에 있는 Azul 광산이다. 세계 2위의 망간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2007년 전세계 생산량의 16.6%인 186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 Azul 광산에서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5) 종전 이름은 Companhia Vale do Rio Doce(CVRD)이었다.

니켈의 세계 매장량은 1억 4,236만 톤이며, 브라질 매장량은 이 중 6.4%인 944만 톤이다. 주요 매장지는 고이아스주의 Americano do Brasil 지역과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Fortaleza de Minas 지역이며, 파라주에서도 많은 양의 니켈 광맥이 매장되어 있다.

2007년 니켈의 세계 생산량은 142만 톤이었으며, 브라질은 이 중 3.6%인 5만 8,317 톤을 생산하였다. 2007년 니켈의 수출규모는 6억 4,133만 달러로 주요 수출시장은 독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미국 등이다.

2. 베네수엘라

BP 2006 통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경우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6위(781억 배럴, 6.6%), 생산량 기준으로도 세계 8위(301만 b/d, 4.0%)의 주요 산유국이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추정 매장량이 196조 ft³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⁶⁾ 석탄의 경우에는 약 528 Mms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역청탄으로서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는 현저히 낮아서 중남미 3위의 석탄 수출국이다.⁷⁾ 또한, 전력발전원별 구성(2005년 기준)을 보면, 수력(74%), 가스(13%), 화석연료(7%), 디젤(5%), 그 밖의 연료(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 4.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말 기준 석유(초중질유 포함) 확인 매장량이 993억 7,700만 배럴,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313만 배럴이라고 관보에 공식 게재하였다(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질유 매장량 합산시 3,20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 BP 통계 등 국제공인 자료에 따

6)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러시아 1977조, 이란 742조, 카타르 250조, U.A.E. 205, 사우디아라비아 186조, 미국 164조, 알제리 160조, 베네수엘라 150조, 나이지리아 110조, 이라크 110조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베네수엘라-, 2007, 35쪽.

7)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베네수엘라-, 2007, 46쪽.

르면, 원유 매장량의 70% 이상이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extra-heavy oil)이며, 일일 282만 배럴을 생산하고 264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리노코 초중질유 유전지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외국기업(국영석유회사 포함)과의 합작사업을 통하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리노코 오일벨트의 초중질유 매장량은 2,6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 4개 유전에서 일일 약 80만 배럴의 성숙 개질 중질유(ungraded heavy crude oil; 일명 synthetic crude oil(합성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지역은 경질유 및 중질유는 Maracaibo, Falcon, Apure, Oriental 지역이고, 중질유 및 초중질유는 Faja del Orinoco(오리노코 벨트) 지역이다.

2008. 4. 베네수엘라 정부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170조 8,600억 입방 피트(ft³)로 관보에 공식 게재하였다. 이는 미주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이다.

2007년도 연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은 1조 4,200억 ft³, 일일 평균 생산량은 38억 9,000만 ft³, 총 매장량 중 90% 정도는 원유 생산시 산출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이며, 순수 천연가스인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는 10% 정도로 동부 Anaco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가스 생산량의 34%는 석유 생산용(유전에 재주입 등), 20%는 국내발전용, 12%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연간 840만 톤의 석탄을 생산(2002년 기준)하여 대부분을 중남미 역내 국가 및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콜롬비아와의 접경지대인 Guasare 분지가 주 생산지역이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연간 2,16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여 왔으나, 현 Chavez 정부의 광업 및 산업 정책 상 철광석의 국내 소비가 증가(전체 생산량의 약 70%)함에 따라 수출량은 2004년 931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3. 페 루

페루는 자원부국으로서 광업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광물가의 상승으로 1차 산업의 대외 수출증가에 따른 지속적 무역흑자 달성 등 장래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석유의 경우 2005년 기준 일일 수요가 15만 6천 배럴이나 일일 생산은 11만 9백 배럴에 불과하여 에콰도르 등 인접 국가에서 부족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15개의 신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석유자원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⁸⁾

페루의 확인된 석유가스전 매장량은 원유 약 11억 배럴과 천연가스 11조 4,000 ft³이나 실제 매장량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나 천연가스 대부분이 아마존 정글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미탐사 지역이 많아 개발 잠재력이 크다. 생산량을 보면, 석유의 경우 일일 11만 3천 배럴(2005년 Perupetro), 천연가스의 경우 일일 2.4억 ft³(2005년 Perupetro), 연간 196억 ft³(2003년 미 에너지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140만 ft³(2005년 페루 에너지광업부)이다. 석유 및 가스 매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칠 레

칠레의 경우 광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특히 구리는 세계 제1위의 부존·수출국이며, 몰리브덴의 경우도 제2의 수출품이다. 2007년 칠레의 전체수출 중 광산물이 64%를 차지하였고, 구리 수출은 광산물 수출의 74.1%,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13위), 은(6위), 망간, 아연 등 금속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며, 약 22종의 미금

8)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페루-, 2008. 7, 13쪽.

속 광물을 생산하며 그 중 질산염(nitrates), 요드(iodine), 리튬(lithium)은 세계 제1위, 붕산염은 제4위의 생산국이다.⁹⁾

구리의 200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557천 톤(세계 1위)이며, 세계 전체 생산량 15,550천 톤의 36%에 해당한다. CODELCO가 칠레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민영 광산 생산분이다. 구리의 국가별 확인매장량 비율을 보면, 칠레 38.4%(3억6천만 톤), 미국 7.5%, 중국 6.7%, 페루 6.4%, 폴란드 5.1%, 호주 4.6%, 멕시코 4.3%, 인도네시아 4.1% 순이다.

원유와 가스는 마젤란해협 인근에 소량 부존되어 있으나 국내수요의 극히 일부만 충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요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북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낮다. 원유의 경우, 한때 국내 수요의 15%를 충족시켰으나 2002년에는 약 2%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지역의 일부 수요만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르헨티나로부터 8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칠레 각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의 경우에는 화력(56%)과 수력(44%)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국토의 75% 가량이 자원 미탐사 지역으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¹⁰⁾ 칠레와 볼리비아와 국경이 인접한 4,500km에 달하는 안데안 산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의 탐사 및 채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맥의 정상지역에는 납·아연·은·주석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고, 산맥의 남쪽에는 붕산염·리튬·칼륨 등이, 그리고 서쪽에는 동과 금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특히, 광산물 중 최근 수년간 가격

9)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칠레-, 2008. 7, 16~18쪽.

10) Mining Journal에 의하면, 국별 잠재력 평가에서 중국·페루·필리핀·브라질·칠레에 이어 세계 6위 정도로 보고 있다.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쪽.

이 10배 이상 상승한 동(Copper) 매장량이 칠레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과 몰리브덴 등 특수 광물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1993년 광업법 제정 이후 광물자원 개발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4개 외국계 기업만이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11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다.¹¹⁾ 2003년 이후 5년 연속 광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광업 투자는 전년 대비 56.4%, 생산은 67% 증가하였다.

광업관계기관에 의하면 최근 광산물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광산물 가격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광산물 수출금액은 200억불에 이를 것이며, 이와 관련한 고용창출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6. 콜롬비아

총 면적 114만 km²(남한의 11.6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지닌 콜롬비아는 매장량·광종·순도 면에서 자원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석탄(생산량 기준 중남미 1위·세계 12위), 금(중남미 4위·세계 8위), 페로니켈(세계 2위), 백금, 에메랄드(세계 1위), 석유, 우라늄 등이 있으며, 매장량의 대부분이 태평양 연안·안데스 산계 북서부 고지인 서부·중부·동부산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¹²⁾

콜롬비아는 규모 면에서 중남미 1위·세계 12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매장량은 17조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7년 현재 확인 매장량은 7조 톤).

11) 캐나다 기업이 전체의 45%, 아르헨티나 기업이 14%, 미국기업이 8%, 영국기업이 6%, 이 외에도 브라질(5%)·스위스(3%)·독일(3%)·칠레(3%)·페루(3%)·멕시코(2%)·남아공(1%) 등도 진출하여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1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콜롬비아-, 2007. 12, 3쪽.

주요 산지로는 크게 북서부 카리브해 연안(Cordoba), 국경 북단 베네수엘라 인접지역(La Guajira), 서부산맥(Valle del Cauca, Antioquia), 동부산맥(Cesar, Norte de Santander, Santander, Cundinamarca, Boyaca)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채굴량 대부분은 발전 및 야금용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Norte de Santander, Santander, Cundinamarca 지역의 경우 소량의 무연탄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중장기 광업개발 프로젝트 Vision 2019에 따르면, 현재 7천만 톤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석탄 생산량은 2019년 경 현 수준의 2배에 가까운 1억 3,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세계 8위·중남미 4위의 금 생산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5%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생산량 35.7톤으로 추정). 매장량의 대부분이 서부·중부·동부 산맥 협곡 및 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Antioquia, Bolivar, Caldas, Choco 지역이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금 채굴량은 '91~'98년 간 긴 침체기를 겪었으나, '99년 이후 귀금속 시세 급등에 힘입어 성장동력을 회복하였고, 2004년 이후 생산규모면에서 '9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내 연간 금 생산가능량은 40~46톤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광업에너지부는 Vision 2019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금광 현대화 및 신규 채굴지 확대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40톤 내외의 연간 생산가능량이 2019년까지 231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Ⅲ.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1. 브라질

브라질 에너지부에서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산업개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들이 있다. 투자관련

제 2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기관으로는 무역투자진흥청(APEX), 중앙은행(Banco Central) 등이 있다.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www.desenvolvimento.gov.br
브라질 석유관리국(ANP) (본사, 상파울루)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ANP-Sede, são Paulo) www.anp.gov.br
광물생산관리국 (DNPM)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www.dnpm.gov.br
응용경제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www.ipea.gov.br
에너지환경연구소 (IBAMA)	Inst. Bra. de Meio Ambiente e Energias Renováveis www.ibama.gov.br
브라질 광업협회(IBRAM)	Instituto Brasileiro de Mineração www.ibram.gov.br
브라질 중앙은행	Banco Central www.bacen.gov.br
브라질 금속협회	Associação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is www.abmbrasil.com.br
브라질 철강협회	Instituto Brasileiro de Siderurgia www.ibs.org.br
브라질 무역투자진흥청	Agência de Promoção de Exportações e Investimentos www.apex.org.br
페트로브라스	Petrobras Brasileiro S.A. www.petrobras.com.br

2.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산업은 개발 상류 부문(upstream, 탐사·생산)에서 하류부문(downstream, 수송·정제·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 국영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부서가 감독기능까지 보유한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물분야의 경우 규제기관 및 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물양허권 관리부 (Direction General de Concesiones Mineras)	광물지적부 관리, 상업등기관련 행정절차
광물 개발·경제부 (Direction General de Planificacion y Economia Minera)	광물관련 통계관리, 연구·계획 및 통제 절차
조세·광물통제부 (Direction General de Fiscalizacion y Control Minero)	광물조세 관리, 감독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석유부(MENPET)¹³⁾가 관할하며, 2007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석유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인 PDVSA 사장을 겸하고 있다. 에너지석유부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다양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관리하며, 석유와 전력시장 분석, 가격 조정, 환경오염대책 마련, 탄화수소와 관련 정책 및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¹⁴⁾

한편, 베네수엘라 최대의 공기업이면서 석유 핵심기업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 S.A.; PDVSA)가 있다. 탄화수소와

13) 2005년까지 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erías; MEM)이었지만, 2007년부터 석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너지석유부(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MENPET)로 부르고 있다.

14) www.mem.gov.ve

관련된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PDVS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력사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 PDVSA는 에너지자원 개발에서 정제 및 발전부문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지배적 역할을 하는 수직통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¹⁵⁾ PDVSA의 주요 자회사 및 부속기관으로는 PDVSA CVP(원유 개발·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약정 체결업무), PDVSA GAS(가스 개발·생산 등 가스사업), PEQUIVEN(석유화학 사업(플랜트 및 제품)), INTEVEP(원유 탐사 및 개발 조사, 에너지관련 기술연구 수행), BARIVEN(PDVSA 구매입찰 담당회사), PDV MARINA (PDVSA의 조선사업 총괄), DELTAVEN(PDVSA의 직영 석유제품 유통 담당), CITGO(미국 내 PDVSA 정유시설(2곳) 운영, 미국 내 직영주유소 운영 및 가솔린, 등유(난방유) 등 공급·판매), PDVAL(PDVSA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한 식품 유통) 등이 있다.¹⁶⁾

이외에도 에너지석유부의 산하기구로는 전력공사(C.A de Administracion y Fomento; CADAFE), 석유공사(Petroleo de Venezuela S.A; PDVSA), 가스공사(Ente Nacional del Gas; ENAGAS), 전력서비스지원국(Fundacion Para el Desarrollo del Servicio Electrico; FUNDELEC), 석유화학공사(Petroquimica de Venezuela S.A; PEQUIVEN), La Costa Oriental del Lago 전력공사(ENELCO), 베네수엘라 전력에너지국(ENELVEN), Barquisimeto 전력공사(ENELBAR), La Costa Oriental del Lago 지역발전협회(DUCOLSA),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등이 있다.¹⁷⁾

국영광업공사 (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 www.cvg.com
투자청 (CONAPRI)	Consejo Nacional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www.conapri.org

15)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베네수엘라-, 2007, 16쪽.

16)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9쪽.

17)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베네수엘라-, 2007, 18~19쪽.

기초산업 · 광물부 (MIBAM)	Ministerio de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 www.mibam.gob.ve
광물협회 (CAMIVEN)	Camara Minera de Venezuela www.camiven.org.ve
금속 · 광물협회 (AIMM)	Asociación de Industriales Metalúrgicos y de Minería de Venezuela www.aimm-ven.org
제철연구소 (IVES)	Instituto Venezolano de Siderurgia www.ives.org.ve
지질 · 광물연구소 (INGEOMIN)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www.ives.org.ve

3. 페 루

정부기관으로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¹⁸⁾가 있고, 장관 1인과 에너지담당 차관(Viceministerio de Energía)과 광업담당 차관(Viceministerio de Minas)이 있다.

경제부 (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www.mef.gob.pe
상공부 (MINCETUR)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www.mincetur.gob.pe
투자진흥청 (Proinversión)	Agenci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www.proinversion.gob.pe

18) www.minem.gob.pe

제 2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광업석유에너지 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Petroleo y Energía www.snmpe.org.pe
상류부문 석유공사 (Perúpetro)	www.perupetro.com.pe -페루의 광구 분양권 및 석유산업 규제권 보유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석유회사들과 광업권계약 협상 담당
하류부문 석유공사 (Petroperu)	www.petroperu.com.pe -페루 4개 정유시설 및 북페루송유관(Norperuano) 운영 -국내 석유제품 판매 등 하류부문 사업 총괄

4. 칠 레

정부기관으로서 에너지광업부와 14개 지역별 광업지청(Seremis)¹⁹⁾가 있다. 에너지광업부는 광산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최적화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목표로서 전국 광산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 성장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동 참여의 조성, 광업부문의 현대화, 공공기관의 현대화, 칠레 국제광산 리더십의 확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준수하는 광산 자원의 관리 등을 들고 있다.²⁰⁾

국가에너지 위원회(CNE)	Comision Nacional de Energía www.cne.cl - 수력, 화력, 풍력, 원자력,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각종 에너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위원장은 장관 겸임)
구리위원회	Comision Chilena del Cobre

19) www.minmineria.cl/574/propertyvalue-1937.html

20) www.minmineria.cl/574/propertyvalue-1933.html

<p>(COCHILCO)</p>	<p>www.cochilco.cl - 에너지광업부 소속기관 - 정부에 구리 및 그 밖의 광물에 관한 정책 자문</p>
<p>국영구리공사 (CODELCO)</p>	<p>Cooperacion Nacional del Cobre de Chile www.codelco.cl - 에너지광업부 소속기관 - 소속 6개 광산 채광·개발과 채광한 구리 판매 등 수행</p>
<p>국립광산기업 (ENAMI)</p>	<p>Empresa Nacional de Minería www.enami.cl - 중소 광업회사 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 - 중소광산으로부터 광물 구매, 융자 알선, 탐사 장려</p>
<p>국립지질연구소 (SERNAGEOMIN)</p>	<p>Servici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www.sernageomin.cl - 광업청으로서 에너지광업부에 소속된 광물 및 지질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p>
<p>외국인투자 위원회</p>	<p>Comité de Inversiones Extranjeras www.cinver.cl - DL 600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청을 접수하고 투자자와 투자조건에 관한 협약 체결 - 경제부/재무부/기획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등으로 구성</p>
<p>광업협회 (SONAMI)</p>	<p>National Society of Mining www.sonami.cl - 대부분 광업회사를 회원으로 최대 광업단체 결성(1883) - 정부에 대해 광업계의 이익 대변</p>
<p>광업자문위원회</p>	<p>Consejo Minero de Chile A.G. www.consejominero.cl - 구리·금·은 생산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결성(1998) - 대부분의 민영광업회사와 CODELCO 등 20여사 가입 - 회원사들의 구리생산량은 2004년 기준 칠레의 97%</p>

제 2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대형광산기자재 공급협회 (APRIMIN)	Asociación de grandes proveedores industriales de la minería www.aprimin.cl - 23개의 주요 광산기자재 공급업체들의 협회
------------------------------	---

5. 아르헨티나

정부부처로서 에너지부가 주무부처이며, 다음과 같은 유관기관이 있다.

광업청	Secretaría de Minería www.mineria.gov.ar - 광물자원 탐사개발 관련 기술지원, 광물 탐사개발진흥 기획 - 아르헨티나 연방기획·공공투자 및 서비스부 산하 - 주요부서 및 업무내역 ①국가광물국(Dirección Nacional de Minería) ②탄화수소 탐사·생산·수송국(Dirección Nacional de Exploracion, Produccion y Transportacion de Hidrocarburos) ③국토전략기획국(Dirección Nacional de Planificacion Estrategica Territorial)
광업차관실	Secretaría de Minería de la Nación www.mineria.gov.ar
광업지질관리국 (SEGEMAR)	Servicio Geológico Minero Argentino www.segemar.gov.ar
환경개발국	Secretaría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Unidad de Gestión Ambiental de la Actividad Minera)
광업위원회 (CONFEMIN)	Consejo Federal de Minería
투자진흥청	ProsperAr

	www.prosperar.gov.ar
국세청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AFIP) www.afip.gov.ar
관세청	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6. 콜롬비아

정부부처로서 에너지자원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가 주무부처이며, 다음과 같은 유관기관이다.

무역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www.mincomercio.gov.co
국영원유회사 (ECOPETROL)	Ecopetrol S.A. www.ecopetrol.com.co
국영가스회사 (ECOGAS)	Empresa Colombiana de Gas-Ecogas www.ecogas.com.co
국가에너지 제정단(FEN)	Financiera Energética Nacional www.fen.gov.co
국가원유단 (ANH)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www.anh.gov.co
에너지광업 계획단(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ética www.upme.gov.co
지질학광업단 (INGEOMINAS)	Instituto Colombiano de Geología y Minería www.ingominas.gov.co

제 4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

I.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1. 개 요

카자흐스탄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7위 수준(미국 추정매장량의 5배로 추정), 생산량(136 b/d, 2005년) 세계 18위, 천연가스 매장량(3조m³)은 세계 11위, 우라늄, 금, 은,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세계 10위내 매장량과 알루미늄, 크롬,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석유산업 등 자원분야로 막대한 FDI가 유입되면서 경제가 활기를 띤다. 결국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에너지 분야는 산업생산의 50% 이상, GDP의 26%, 수출의 56%,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한다. 석유산업은 텡기즈(Tengiz, 미국의 Chevron 주도)유전, 카라차가나크(Karachaganak) 유전, 카자흐스탄 최대의 유전으로 부상할 카샤간(Kashagan, 이태리 ENI 주도) 유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상당기간 FDI 유입 지속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옥상유전 생산물량 확대 및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원유생산량은 61.91백만 톤, 가스 생산량은 251.77억m³ 수준으로 증가했다. 원유개발 등 광업 분야에 대한 2005년도 투자액은 약 100억불이었으며,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체 투자액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0년 180만 배럴, 2015년 3백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한다.

카자흐스탄의 대외 교역은 원유·가스, 비철금속 등 광산물 수출, 기계장비 수입들을 중심으로 2004년도에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2005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유·가스 및 기초금속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로 인해 상품수지는 국제자원 시세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요 수출국은 스위스,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독일,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이다.

2. 석유·가스산업

카자흐스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008년 기준 396억 배럴이며, 가스 매장량은 105.9조 입방피트로 집계된다.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 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예상 매장량은 920억 배럴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카자흐스탄의 가채 가스매장량은 65~100 Tcf 로 추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 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수출파이프라인 제한 등으로 1990년 중반까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전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 혼란이 있었으며,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에서 러시아 사마라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 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외국 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 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 생산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 b/d), 마하치칼라-티호레츠크-노보로스츠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톤(5만 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 (15년)을 체결하였다.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원유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1억 300만 배럴이 생산되었다.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하고 국내소비를 위한 가스는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 b/d로 증대할 계획이다. 자국내 유전을 대형유전으로 증산할 예정이며, 중기적으로 새로운 유전의 생산개시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유전을 찾아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어서,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동북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 능력은 401천b/d이다. 특히 서부에 있는 Atyrau 정유공장은 컨테사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이며 이들의 정제가동률은 50~60% 수준이다. 현재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이며, 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Atyrau 정유공장에 대한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광업자원 현황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소득의 30%, GDP의 27%, 총 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제2의 산업이다. 광업은 2004년에 12.8%의 높은 산업생산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2005년에는 3.4%의 증가에 그쳤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이 있다. 철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금속으로, 2005년 약 450만톤의 선철과, 320만 톤의 강판이 생산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보유 광물은

우라늄, 크롬, 동, 아연, 망간 등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알루미늄, 티타늄, 모리브덴, 니켈 등 기타 광물로 풍부한 편이다.

II.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카자흐스탄의 석유법 2장에는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관할기관, 그리고 국영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탄화수소자원 이용에 대한 전략 및 관련 법제를 수립하고, 관할기관은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국영기업은 직접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상하체계에 따라 각각 역할 및 기능이 주어졌다.

또한 지방기관 및 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나 관할기관과 중첩되지 않고 각 프로젝트 지역에서 관할기관과 같이 환경오염을 감독하는 기능과 중앙정부의 석유가스개발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 정부

- 석유자원이용에 관한 전략 수립
- 지하자원개발에 필요한 규정 수립
- 각 지역의 석유매장량 감독
- 국가안보, 환경보호, 공공안전 등을 위한 지하자원개발 제한
- 가격정책 수립
- 석유개발지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짐

(2) 관할기관

- 계약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수행 내용에 관한 보고를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에 보고

- 입찰준비와 지하자원이용권 부여에 대한 협상 수행
- 지하자원이용권 이전 허가 발행
- 석유개발사업 계약조건에 대한 감독 및 관리수행

(3) 지방정부

- 카자흐스탄 토지법에 따라 지하자원이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해당구역의 토지를 할당
-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수행에 참가
-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 지역에서 관할기관과 함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문화 및 역사적 기념물을 보호
-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위해 계약자와 협상

(4) 국영기업

- 석유자원개발 사업에 참가
- 카자흐스탄 정부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참여지분을 통하여 석유 개발
- 석유개발을 위한 입찰에 참가
- 신규프로젝트 준비와 실현

제 3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제 1 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I. 석탄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1. 석탄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

스페인의 1889년 민법전에 의하면 광물자원(mines)은 조광계약(concession)에 의해 私人이나 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한 국유(public domain of the State)에 속한다. 과거에는 조광권자가 채굴된 광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minerals in situ) 즉 광물자원의 소유권까지 갖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광물자원의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 of mines)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지금 수정되었다. 광물자원(mines and in situ minerals) 즉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석탄(unworked coal)은 국유에 속하며 채굴된 이후에 비로소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광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는 1973년 광업법이 발효하였기 때문이다. 석탄자원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실 로마법의 부합 법리(principle of accession)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부합의 법리에 의하면 지표(surface land)의 소유자는 그 지표의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는 석탄 기타의 모든 광물자원은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국유(State Treasury)에 속한다고 지질광업법(Geological and Mining Act)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역주권체제(domianial law system)를 수용

21) 이것은 현재 이탈리아에서도 타당하다. 이탈리아 민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없는 지하자원(subsoil resources 'not available to the private owner of the land')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있다. 지표 소유권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지표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지하의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당해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 이용으로 제한하므로 지표 소유자와 국가의 권리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어찌 되었든 석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권리(the right to explore and/or exploit)는 광업용익권(mining usufruct)의 형태에 의해 타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영국 및 영미법계 국가(common law countries)에서는 광물자원과 암석 그리고 채굴되지 않은 광물(mines, quarries and minerals in their original position)은 토지의 구성부분(part and parcel of the land)이다. 따라서 지표의 소유자는 지하나 지표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prima facie entitled)(로마법의 부합 체제). 이 원칙은 지표에 대한 소유권이 시효에 의해 취득(prescription)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다.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금과 은은 모두 그 소유권이 국왕에게 있고 성문 법규에 의해 석탄은 (석탄에 포함된 일정한 광물과 함께) 원래 국가기구(National Coal Boar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며 노천광의 석탄(open-cast working of coal)에 대한 강제조치(compulsory rights order)에 따라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모두 석탄과 마찬가지로이다.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1994년 석탄산업법(Coal Industry Act)은 석탄의 소유권을 석탄위원회(Coal Authority) 즉 국가에게 귀속시키고 수많은 광산(mines)을 사기업에게 매각하는 근거가 되었다.

1980년 독일연방광업법은 광물자원을 두 가지 즉 bergfreie 광물과 grundeigene 광물로 분류한다. grundeigene 광물은 지표의 소유자가 광물의 소유권까지 갖지만 bergfreie 광물은 그렇지 않다. bergfreie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당해 광물자원의

개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으로서 광업법 Section 3(3)에서 열거하고 있다. 석탄은 bergfreie 광물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석탄이 부존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석탄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채굴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채굴하여 취득할 수 없다. 광업권은 관할 행정관청(Länder mining authority)이 부여한다. 토지소유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분쟁은 연방법원에 의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직적 상린관계’(vertical neighbourhood relationship)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2. 석탄사업에 대한 허가

어느 나라나 석탄의 탐사와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license, 독일에서는 Bergbauberechtigungen, 폴란드에서는 license와 mining usufruct를 받아야 한다. 석탄사업에 대한 지표 소유자의 허용을 강제하는 정부의 권한도 어느 나라나 인정한다. 그러나 석탄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석탄사업에 대한 허가를 다시 Erlaubnis와 Bewilligung 및 Bergwerkseigentum으로 분류한다. 후2자는 전자보다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강하다는 점에서 구분되고 Bewilligung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Bergwerkseigentum은 양도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도 탐사에 대한 허가(permiso)와 채굴에 대한 허용(concesión)을 구분한다. 그러나 독일법은 탐사나 채굴에 대한 허가와 별도로 석탄사업이라는 광업 자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폴란드의 경우 석탄사업은 대체로 국유 공기업이 담당한다. 스페인에서도 대부분의 석탄을 공기업이 생산하지만 소수의 사기업이 존재

한다. 영국의 경우 그러나 석탄사업이 이미 민간 영역으로 이관되었고 독일에서도 석탄사업이 사기업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3.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는 유럽의 산업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석탄산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생산비가 앙등함에 따라서 점차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조(State aids)는 역내 공동시장의 추구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가보조의 금지는 유럽통합의 핵심적 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럽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은 석탄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2002년에 ECSC조약의 효력이 소멸된 후 석탄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로마조약의 국가보조에 관한 일반조항 및 Council Regulation no 1407 of 23 June 2002가 적용된다. 유럽이사회가 각국의 석탄생산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함에 따라 독일, 스페인 및 영국에서 보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석탄에 대해 다른 연료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아직 존재한다. 유럽이사회가 이러한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의 본격적인 자유화에 앞서 취해지는 한시적인 조치로 보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페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국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는데 이것은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폐기한 것이다.

1996년과 2003년의 유럽전력지침(EU Electricity Directives 1996 and 2003)은 각 회원국이 에너지 공급 확보를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한 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15%가 허용되는 上限인데 이 조항은 주로 석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스페인은 국가 예산에 의한 한시적 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석탄과 같은 국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에너지 공급 확보를 명분으로 할증금을 적용하는 제도 (premium system)를 도입했다. 자국산 석탄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조에 추가하여 스페인은 석탄광산의 폐업에 대한 국가보조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석탄광업재정지원법이 석탄산업에 대한 직접적 재정 보조를 허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감축해 나가 2018년에는 석탄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II.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1. 규제법규의 체제

석유와 가스의 탐사와 채굴에 적용되는 법제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이 일반적인 광업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노르웨이나 영국처럼 석유법 (petroleum laws)을 따로 제정한 국가도 있다. 한편 스페인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의 전 부문에 대해 적용되는 탄화수소법(Hydrocarbons Act)을 1998년 제정하였다. 육상의 사업과 해상의 사업에 대해 하나의 법규로 규율하는 (예컨대 덴마크, 독일,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법규를 따로 제정한 국가도 있다. 육상에서의 석유 탐사 및 채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광업법이 적용된다. 광업법은 보통 20세기 초나 그 이전에 제정되었다가 나중에 개정을 거치거나 다른 법규로 대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원래 프랑스의 법(Loi concernant les Minières et les Carrières of 1810)이 1813년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2003년에 현대적인 광업법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법이 이미 1956년에 새로운

광업법으로 바뀌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에서는 20세기 초에 발효한 법규가 육상의 석유사업에 적용된다.

광업법이 광물자원을 둘 이상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부의 광물자원이 다른 종류보다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가장 중요한 광물자원에는 금, 은, 석탄, 그리고 탄화수소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광물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부여하는 조광권이나 채굴허가(concession or license)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광물자원은 정부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어도 채굴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1956년 광업법은 1810년 광업법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광물자원(minerals)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법적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종류는 mines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광물자원을 몇 가지로 분류하지만 1927년의 시행령(Royal Decree of 1927)은 광물과 암석(mines and quarries)의 두 종류만 구분한다.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구분한다. (각 주정부의 광업법을 대체한) 1980년 연방광업법(Bundesberggesetz)은 bergfreie 광물자원과 grundeigene 광물자원으로 구분한다. 후자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당연히 갖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전자는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권리가 귀속하며 license 또는 concession 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북해 대륙붕에서의 석유 탐사는 1959년 네덜란드에서의 Groningen 가스전 발견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탐사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연안국들은 탐사와 개발을 위한 법적 기초부터 확립해야 하였다. 대륙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정(1958 Genev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이 체결됨에 따라 북해연안국들(North Sea Sea States)은 바다의 석유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해양에 대한 기능적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덴마크와 영국은 육지에서의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자국의 국내법을 대륙붕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리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법 [Danish Subsoil Act와 UK Petroleum (Production) Act] 은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에 의해 해양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해양의 자연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에 적용할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네덜란드가 1965년에 대륙붕광업법(Continental Shelf Mining Act)를 제정한 것은 육지와 해양에서의 사업에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대륙붕광업법은 육지와 해상의 자원사업에 모두 적용되는 2003년 광업법의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해저의 자연자원 탐사와 개발에 적용되는 Act 12 of 21 June 1963이 제정되었지만 1985년 및 1996년의 석유법(Petroleum Act)이 제정됨에 따라 1963년 법은 노르웨이 대륙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송유관 설치와 같은) 영해에서의 석유사업과 육상의 인수기지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법이 적용된다.

2. 사업에 대한 허가

석유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①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예컨대 지진탐사, 지질학적·지구화학적 조사(seismic, geological and geochemical surveys)
- ② 탐사 또는 평가를 위한 시추(exploratory or appraisal drilling)
- ③ 탄화수소의 생산
- ④ 석유의 수송과 공급
- ⑤ 생산기지의 사용폐지와 철거

위의 5 단계 외에 사용 폐지된 광구를 저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단계가 추가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이러한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전제조건으로서 조광계약이나 허가 등의 행정처분

을 얻도록 요구하지만²²⁾ 전제조건이 되는 조광계약이나 허가 등의 수나 유형은 각기 다르다.

(1) 육상 사업에 대한 허가

탄화수소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부존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탄화수소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반적인 광업법이든 아니면 특별법인 광업법이든 이 문제의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취급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광업권, 조광계약 또는 허가 등이 없으면 이러한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법제나 공통된 사실이다.

과거에는 탄화수소에 대한 개발 허가나 조광권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광권 제도에 기초하여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매우 넓은 지역에 대해 권리가 부여되었다. 해양의 광구에 대한 권리가 단위구역(blocks)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부여되는 것과 달리 육지의 광구에 대한 권리는 과거부터 현재도 지질학적 단위(geological units)로 부여되고 있다. 이와 달리 폴란드와 덴마크는 전 국토를 몇 개의 직사각형 구역(rectangular blocks)으로 나누어 권리를 부여한다(다만 권리가 부여되는 지역과 위의 구역의 경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지에서의 석유 생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주목할 사실은 영국의 1918년 석유법에 의해 첫 번째로 부여된 개발허가(licenses)와 네덜란드의 1810년 광업법에 의해 부여된 조광권이 영구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지리적 범위에 관해서 놀랄만한 사실은 덴마크에서 국토 전역에 대해 하나의 허가가 발급되고 1963년에는 대륙붕으로 광구가 확대

22) 생산물분할계약(production-sharing contracts)나 단순한 도급계약(agreements establishing simple owner-contractor relationships)과 같이 석유, 천연가스 기타의 광업을 규제하는 여타의 방법이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과 같이 유럽에서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에게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license system)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1982년 이후 이러한 사례가 사라졌다. 위와 같은 과거의 조광권이나 허가는 권리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 의한 통제와 여지는 거의 없었다. 조광권이나 허가가 개별적인 협상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다수의 경쟁사업자 중의 하나를 선별하여 부여되는 경우는 없었다.

1994년의 EU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Hydrocarbons Licensing Directive)²³⁾의 시행으로 육지에서의 석유사업법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육상광업법제가 원래 채택하고 있었던 선착순 허가 체제가 경쟁입찰체제(competitive bidding system)로 바뀌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배타적 조광권제도가 폐지되었다(다만 기왕에 석유사업이 행해지던 지역 제외). 영국의 법제도 개정되었다. 과거의 3단계 허가 체제가 하나의 허가(Production, Exploration, and Development Licence; PEDL)로 바뀌었다. 다만 EU의 지침이 시행되고 육지의 사업에 대한 허가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계기가 되어 세 단계의 허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EU의 지침이 이러한 통합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PEDL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주로 행정적) 비용의 절감에 있었다. 육상의 중요 유전 가운데 미개발 상태인 것은 이미 거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비용절감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해상 사업에 대한 허가

해저의 탐사와 생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제를 1960년대에 제정했던 나라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뿐이다. 네덜란드는 그 당시의 대륙붕 광업법을 지금은 폐지하고 육상과 해상의 사업에 모두 적용되는 광업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는 육상의 사업에

23) Directive 94/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1994 on the Condition for granting and using authorization for prospect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for hydrocarbons [1994] OJL164/3.

적용되던 법제를 대륙붕의 사업에 확대 적용하였지만 영국에서는 해양의 석유사업에 적용되는 법제가 점진적으로 확립되었다.

법제의 기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북해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느 나라나 모두 허가절차에 경쟁을 도입했다는 점(competitive licensing system)에서 현대적이다. 석유와 가스의 탐사와 생산에 대해 각기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허가로 결합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해양의 사업에 대해 최근에 발급된 허가의 절차는 모두 경쟁적 출원체제(system of rounds)에 입각한 것이었다. EU의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은 경쟁적 출원체제 또는 수시출원체제(organized licensing rounds or ad hoc licensing system) 가운데 하나를 각국 정부가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전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누구나 출원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public invitation to bid)이지만 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출원할 수 있고 여타의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가의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북해 연안국들이 실시하는 허가 절차는 다양하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아직도 경쟁적 출원체제를 사용하지만 네덜란드 대부분의 광구에 대한 허가가 이미 발급된 상황이어서 새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다른 사업자가 포기한 광구인 경우도 적지 않아 수시출원체제를 채택하였다. 덴마크는 관련 법규에서 경쟁적 출원체제 외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수시출원체제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또는 수송사업에 대한 허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상사업에서는 유정과 정유공장(the first delivery point) 사이의 거리가 육상사업의 경우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이 사업허가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유전과 파이프라인의 접속 허용과 합리적인 요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행정관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와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치 않다. 과거의 대륙

붕광업법과 마찬가지로 2003년 광업법은 해양법에 의해 모든 국가에게 인정되는 권리(right of immersion) 즉 대륙붕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자유가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탄화수소의 탐사와 생산을 위한 해저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운영을 연안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1982년 해양법협정 제79조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한은 연안국의 기능적 관할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3) 탐사와 생산

석유나 천연가스의 탐사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허락(license)이 필수적이다. 지진탐사와 같은 예비적 활동은 이러한 허락 없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비배타적인 허락만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탐사 및 생산의 허가(exploration and production license)는 탐사를 위한 시추(exploratory drilling)와 생산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존속 기간은 탐사와 채굴(exploitation)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또한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기 전에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의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단계의 절차(two-step approach)를 거쳐야 한다. 영국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의 석유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는 위와 달리 탐사를 위한 시추(exploratory drilling)와 생산(production)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요구한다. 네덜란드 광업법은 탐사를 위한 시추에 대한 배타적인 탐사 허가를 규정하는 한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탄화수소를 탐사하며 채굴(exploit)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타적 생산 허가를 별도로 규정한다. 폴란드의 법제는 2001년 현재 석유 또는 가스의 탐사와 생산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탐사와 생산을 위한

광업용익권(mining usufruct)도 부여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허가가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탐사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 허가가 바로 부여되는 경우는 없다.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생산 허가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광업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물량의 탄화수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이탈리아의 1991년 개혁법이 비배타적인 탐사 허가(prospecting permi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석유사업자들은 이러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생산을 위한 별도의 조광권(separate production concession)이 부여될 수 있다. EU의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예컨대 하나의 유전이 복수의 단위구역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시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접 구역에 대한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과 충분한 양의 탄화수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후에야 석유 또는 가스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4) 배관망 또는 수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북해 연안국들은 대체로 파이프라인 또는 수송 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므로 생산에 대한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허가와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허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계획에는 채굴한 탄화수소를 해안까지 수송하는 것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피하다. 더구나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때 허가 관청은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생산에 대한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감안하는 것이 보통이다. 덴

마크의 경우 기존의 해저 석유 파이프라인을 국유 공기업 Dong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다른 연안국들이 관할권을 대륙붕으로 확장하지만 네덜란드는 관할권의 확장 없이 전통적인 해양법에 의해 모든 국가에게 인정되는 권리(right of immersion) 즉 대륙붕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자유가 있다는 자유를 적용하여 생산 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general right of immersion)를 인정한다. 파이프라인이 생산사업의 구성요소로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파이프라인 사업에 종사하는 별도의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석유의 생산과 수송은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에 근거한 지시와 경쟁법의 적용에 한정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노르웨이와 영국의 사례를 본다면 관련 석유법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경쟁법을 통한 금지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덴마크는 단 하나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별법 즉 Pipeline Act of 1981을 제정했던 유일한 북해 연안국이다. 이 법은 특히 제3자의 파이프라인 사용에 적용되는 자세한 요금체제를 규정한다.

EU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이 상류 석유사업의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유공장(first delivery point)까지의 수송과 인도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EU의 천연가스지침에는 상류부문의 파이프라인 설비 이용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EU 에너지법은 상류부문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관한 문제를, 규제에 관련하여 불분명한 영역(regulatory grey zone)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문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법제 중간에 해당하므로 현재 중류부문의 법제(midstream legislation)로 지칭된다. 그러나 EU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

이 상류부문의 파이프라인 사업법제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며 이것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법에서 과거에 규정하였던, 생산된 모든 석유가 해당 국가의 관할 영역 안에서 揚陸되어야 한다는 의무의 폐지와 관련된다. 석유의 직접 수출을 가로 막는 이러한 법적 장애를 제거한 결과, 가스전이 외국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경을 가로질러서 덴마크 대륙붕(Tyra field)으로부터 네덜란드 대륙붕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NOGAT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해저의 파이프라인 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관한 상황이 앞으로도 변화하고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의 연결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

(5) 사업의 주체

석유사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체(group of companies)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정하지 않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이 당사자 자치에 일임되는데 반해서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단체의 내부관계는 공동입찰 및 동업에 관한 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 JO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업계약은 사업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단체 구성들이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표준약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의 석유사업에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고 동일한 사업자들끼리 동업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협상하는 수년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동업계약의 내용이 점차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권한을 행사함에 따라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영국이나 덴마크와 같이 동업계약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의 기준이 동업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가 모범적인 동업계약을 제시하고 또한 사업자들이 이러한 모범약관을 수용하는 것이 생산에 대한 허가의 요건이라는 의미에서 동업계약은 표준약관(standard agreements)에 해당한다. 2007년 봄 노르웨이에서는 사업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자단체들이 기존의 동업계약을 동일한 표준약관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현재 사업자단체의 내부관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영국보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노르웨이는 특히 계약에 관한 노르웨이 특유의 전통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해상의 생산기지 건설에 관해 노르웨이표준조립계약(Standard Norwegian Fabrication Contract; NF05)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국가의 사업 참여

국내에 에너지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국가들은 모두 과거부터 정부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고 있는 기업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참여해 왔다. 각국이 에너지자원의 탐사와 생산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하고 에너지사업에서 최대한의 이익 획득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에너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참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국유화와 정부 개입 확대의 동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사유화와 자유화의 경향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국유의 석유공기업이 사라지거나 그 영향력 또는 우선적 지위가 매우 크게 훼손되었다.

국가가 석유회사의 지분을 통해 시장과 경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은 정부의 에너지사업

참여에 관해 분명한 방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980년대에 영국석유공사(British National Oil Company; BNOC)가 사라진 후 정부가 탄화수소의 탐사와 생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므로 위의 지침은 의미가 없다. 해저석유자원의 발견 이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영석유회사(노르웨이의 Statoil, 덴마크의 DONG)를 통해 에너지사업에 직접 참여한다고 결정한 것과 달리 네덜란드 정부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는 회사 EBN(Energiebeheer Nederland BV)를 통해 천연가스의 (나중에는 석유까지) 생산에 대한 간접적인 지분참가(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택한 것이다. 다만 EBN이 사업 허가를 받는 당사자는 결코 아니고 생산에 (그리고 때로는 탐사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받을 뿐이다.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석유사업에 참여하는 방식과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최근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985년에 State Direct Financial Interest(SDFI)가 설립되었다. 2001년의 개혁과 Statoil을 민영화한다는 결정으로 인하여 SDFI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Statoil이 아니라 국가 소유가 새로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Petoro라는 이름의 회사이다. 덴마크에서도 2006년 비슷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종래에는 DONG이 에너지사업의 소수지분(20%)을 갖는 것이 관례이었지만 특별기금(Danish North Sea Fund)을 설치하고 2006년 이후부터 새로 허가를 받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생산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 지분을 신설 공기업 Danish North Sea Partner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참여의 방식을 이렇게 변경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DONG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국가의 사업참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EU 탄화수소사업허가지침이 발효된 이후 북해 연안국들은 각기 국내법이 이 지침에 합치되는

지 여부에 관한 엄격한 검토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이 지침이 국영 석유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다만 국내회사든 EU의 외국회사든 그리고 폐쇄회사든 공개회사든 평등한 취급(level playing field)을 하도록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에게는 참여 지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귀속될 뿐이라는 것이 지침의 분명한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국영 석유회사가 갖고 있었던 특권 가운데 일부가 소멸했다. 게다가 국가의 사업 참여는 정부가 석유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4. 지하저장

상류부문에 관한 법제 가운데 일부는 저장사업에 대한 허가에 적용될 가능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폴란드에서 이러한 허가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장사업에 대한 허가는 폐기물의 영구적 보관으로부터 천연가스의 일시적 보관에 이르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가스시장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천연가스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허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프랑스는 최근 지하저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광업법규를 개정하였다. 지하저장사업의 허가(underground storage concession)를 취득한 자가 해당 장소에서의 지하저장에 관한 연구를 배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생산사업에 대한 허가가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나라에서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생산사업의 허가를 취득한 자의 숫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하저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생산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않은 자도 저장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장사업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때 (과거의) 생산사업 허가 취득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공간에 남아 있는 천연가스를 저장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은 남아 있는 천연가스의 소유권이 생산사업 허가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지하 저장에 적합한 육지의 저장공간 대부분에 대해 저장사업 허가가 2003년 이전에 발급되었고 그 곳에 남아 있는 천연가스는 저장 허가 취득자가 소유하게 되었다.

저장사업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생산의 마지막 단계 즉 사용폐지 단계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용을 폐지하는 대신 당해 공간을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폐지 시행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저장사업 허가 취득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다.

5. 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비

석유생산국들은 현재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유전이 더 이상 증산할 수 없고 새로운 유전의 발견에 전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발견하기 힘들고, 발견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것이 보통인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석유의 탐사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절실하다.

네덜란드는 2003년 광업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가 탐사 단계에 참여하여 탐사 허가 취득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위험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 유전에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생산 허가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석유법과 관련 규칙이 제3자에 의한 생산설비(installation)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계유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투자촉진적 허가(promote licence)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허가를 취득하면 좁은 면적에 단기간이지만 제3자에 대한 사업의 양도 또는 투자자금 융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덜란드는 광업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자촉진적 허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유전이나 가스전의 CO2 주입을 통한 석유회수율제고(enhanced oil recovery; EOR) 또는 천연가스회수율제고(enhanced gas recovery) 사업의 성공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석유 및 가스 생산의 제고 즉 유전 및 가스전의 수명 연장 외에 CO2의 분리/회수/저장은 CO2 배출량의 감소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I.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Mining Law)

호주에 있어서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국민을 대리하여 연방 정부 및 주정부와 준정부의 정부에 귀속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과 채굴권은 일반 지역사회의 대리인으로서 주 및 준정부의 정부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허가된다. 각각의 정부가 운용하는 절차나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호주 전국을 통하여, 환경보호·보전 및 개발 목적 등의 필요 요건에 대한 요구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광물자원의 관리, 개발권, 리스 등은 각주 및 준정부 정부 기관의 소관 사항이다.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각주의 광업법 및 관련 행정 시스템의 개요를 정리한 가이드 북을 발행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각각의 광업법이 제정되어 탐사권의 허가, 채굴권 리스의 허가, 그 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그 외의 관련 법규(선주권법, 환경법 등)를 제정하고

있어, 탐사,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령을 함께 받게 된다.²⁴⁾

II. 광업권의 내용

1. 초기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라이선스 (Initial Exploration License)

(1) 의 의

각 주 및 준정부에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또는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신청의 대상이 되는 광물탐사와 채굴방법에 대하여,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한 작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소관 주무장관이 신청자가 광물탐사 및 채굴 계획을 실행할 만한 충분한 자금 및 기술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게 된다. 또한, 소관 주무장관은 동 작업계획서에 특별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일반시민의 참가와 공고 및 보상

QLD주를 제외하고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이 있게 되면, 일반 시민에게 공고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의 경우 주정부의 관보 등에 공고를 게재하게 된다. QLD 주에서는 특별하게 신청 전후에, 토지소유자에게의 통고 및 소유자의 허가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NSW주에서도 사업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접근(access)에 관한 동의(경우에 따라서는 광업감독인(Warden)에 의한 조정, 접근조정에 관한 동의가 필요)를 얻어야 한다.

24)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 접근조정 (Access arrangement)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이란, 광물탐사 및 채굴권 신청자가 광물탐사 및 채굴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건을 규정한 동의서로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된다. 조정자(Arbitrator)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토지접근에 관한 허가기간
- 탐사작업 실시장소와 그 토지에 대한 접근방법
- 탐사 작업의 내용
- 탐사실시에 관련된 작업 조건
- 토지 액세스 및 광물탐사 및 채굴 작업 실시시에 환경보호에 관한 준수 사항
- 탐사작업에 수반하는 보상금의 내용
- 분쟁 또는 의의가 생겼을 경우의 해결방법
-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의 변경 방법
- 그 외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에 포함하는 사항

(3) 보상금의 지불

모든 주 및 준정부의 경우,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에의 접근에 관한 권리의 제한, 토지에 대한 접근의 방해, 토지내의 구조물 그 외의 자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광물자원의 가치에 관련되어 산정되지는 않는다. 주에 따라서는, 보호예금(Security Deposit) 또는 사적자산채권(Private Property Bond)을 징수함으로써, 토지사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불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WA주, VIC주, SA 및 NSW주에서는 토지사용의 제한, 수입의 손실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주 및 준정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상기한 권리의 허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광구의 크기 (Area Size)

각 주 및 준정부 정부는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 대상지역에 대하여 위선망단위(graticular unit : 경도 1분 × 위도 1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선망 단위의 1블록은, 경도 5분 × 위도 5분, 즉 25유닛이 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의 대상이 되는 최대 규모는 신청자에 의해서 1에서 100블록까지 다양하게 된다. 모든 주 및 준정부의 소관 주 무장관은 승낙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보다 큰 면적의 허가가 가능하다. 유닛은 “서브 블록”이라고도 불리운다.

(5) 허가기간(Time Period)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는 2년 내지 6년으로, 갱신시에 처음 허가받은 면적을 축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소관 주 무장관은 특별한 경우,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갱신시의 감구면적은 해당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 면적의 1/2 이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을 위한 신청요금은 각 주 및 준정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2. 평가 리스 / 보유유지 라이선스 (Assessment Lease / Retention License)

이러한 종류의 권리에는, 평가리스(Assessment Lease), 보유유지 라이선스(Retention License), 광물탐사 및 채굴보유유지 라이선스(Exploration Retention License), 연결 권리(Bridging Title), 광물개발 리스(Mineral Development Lease)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 의하여, 광물탐사 및 채굴권자는 실제의 채굴작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유하여 유지할 수 있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보유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 조사의

대부분이 종료되고 있는데, 광상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경제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상황이나 광물자원 가격의 침체 또는 시장조건의 악화와 추출 기술 개선의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리스에 의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조사, 검토를 실시하는 동안, 그 광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구의 이전, 광산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채굴 리스 (Mining Lease)

대부분의 주 및 준정부에서는 누구라도 채굴 리스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허가가 종료된 광물탐사 및 채굴권 또는 보유유지 리스권의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광산개발계획 제안(proposal)의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Miner's Right”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채굴리스권리의 취득요금은 다양하고, 허가 기간은 일정하게 주어지거나 또는 무기한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Miner's Right”란,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한 채굴사업자나 일반 시민이 정부소유지에서 표본채집 또는 취미의 목적으로 소규모의 탐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하는 것이다. 각 주에 따라서는 이 권리가 허가 또는 리스에 앞서서 대상광구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QLD주에서는 프로스펙팅 허가(Prospecting Permit, PP)라고 불리운다. PP에서는 구획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구획 프로스펙팅 허가(Parcel Prospecting Permit, PPP) 또는 관련 모든 지역 전반(District)으로 탐사가 허가되는 지역 프로스펙팅 허가(District Prospecting Permit, DPP)가 있다.

TAS 주를 제외한 각 주 및 준정부에서는 채굴 개시신청을 위한 공고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정부 관보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 신문에 게재된다. TAS주에서는, 신청자가 채굴계획 대상 광구의 구획에 공식적인 신청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에 공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모든 주 및 준정부에 있어서, 채굴 리스의 인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공동체에서의 공청회에 관한 규정도 있는 TAS주에서는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해관계자와 사유지의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채굴작업이 사유지에 있는 거주지 또는 그 외의 이용지의 주변 100m~200m의 범위(SA주에서는 400m의 범위)에서 행해지는 경우, 사전에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채굴 작업을 위한 보상금의 금액은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신청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지불된다.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Mining Approval Process)

광업 개발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초기 광물탐사 및 채굴
- 정밀 탐사/평가
- 실제의 광산 개발 및 조업

탐사를 위한 토지접근에 대해서,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가 직접적인 관할권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각 주 및 준정부는 환경문제, 도시개발계획, 선주민 소유지 등에 의하여 탐사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가 관련된 법규의 필요 조건을 준수하면 광물탐사 및 채굴권은 인가된다.

IV. 최저 지출 조건 (Minimum Expenditure Conditions)

1. 의 의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탐사라이센스,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채굴리스 등의 보유자가 광구에 관해서 연간에 지정된 최저 지출액수의 소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은 광물개발에 할당될 수 있었던 토지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주의 광업성(관청)은 최저 지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광구에서 실제로 소비한 비용은 연차 활동보고서로 권리보유자가 보고한다. 광업성은 보고된 지출액을 확인·검토하여, 그것이 최저 필요 지출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권리 보유자에게 통고한다. 그리고 권리 보유자가 최저 지출 조건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채울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조건이 면제시켜주게 된다. 각 주의 광업법은 권리보유자가 동조건의 면제에 대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신청(신청의 약 5분의 1)은 감독 재판소(Warden's Court)에 직접 송치되어 심문을 함으로써 의견서가 관할 주 및 준정부 광업성에 보내진다. 면제신청은 광업법으로 규정되는 면제범위에 따라서 신청이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Mining Act (WA) 102 (2) 광업법(WA) 제102조(2))²⁵⁾

2. 지출 조건 면제의 이유

- ① 광산권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 ② 작업 평가 및 향후의 광물탐사 및 채굴 또는 채광 계획/자본을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③ 시설 및 기계의 구입·조립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25) 이하에서는 <http://www.audit.wa.gov.au/> 참조

- ④ 토지를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⑤ 광상이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 ⑥ 장래에 가동하는 광상의 경우
- ⑦ 정치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의하여 채광이 저해 혹은 제한된 경우
- ⑧ 프로젝트안의 다수의 광구를 대상으로 한 일괄 비용의 경우

V. 환경 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1. 의 의

연방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한 일부의 법률을 소관하고는 있지만,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가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광업활동에 관한 환경관리를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각 주 및 준정부 그리고 연방에 의한 이원적인 법률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양 법률의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은 비록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연방 정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각 주 및 준정부의 개발 계획법과 환경법에 의한 내용에 구속된다. 호주에 있어서의 환경관리는 자원개발계획(Resources Planning) 및 개발의 모든 단계(평가, 건설, 조업, 폐산, 복구)의 통합적인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각 주 및 준정부간에 그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⁶⁾

2. 평가와 허가 (Notice of Intention, Proposal or Initial Advice Statement)

광산사업에는, 정부에 의한 평가와 허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평가의 정도는 그 사업이 환경에 주는 잠재적인 영향력과 중요

26)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와 허가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개발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구된다.

- 신규 광산 활동의 개시전
- 기존 광산 조업의 변경전
- 구폐지 광산의 재개전

개발계획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서류로서 제출되지만, 동시에 정부 허가심사의 개시 또는 지역사회에의 그 프로젝트의 공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개발 계획은 “Notice of Intention (NOI)”라고 일컬어 지는데, 각 주에 따라서는 “IAS Proposal”라고도 한다.

3. 정부에 의한 사정 (Government Assessment)

통상적으로 몇개의 정부기관이 계획의 평가에 관련되고 있다. 관계 관청으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에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환경보호청, 광구의 인가나 관리를 실시하는 광업소관청 혹은 자원소관청 그리고 그 지역개발 계획을 인가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체 정부가 포함된다. 소관 관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해서 개발 계획(Notice of Intention, NOI)을 심사한다.

- 환경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 특히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 주위의 생물,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 계획 사업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
- 법정 의무계획안, 공중위생, 용수, 수질 및 자원 관리 등의 여러 문제

개발 계획의 검토에 의하여 그 프로젝트가 환경에 대한 유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환경 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EIA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 또는 개발이 환경에 대하여 리스크 혹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또한, EIA의 심사절차는, 그 허가여부가 지역사회에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²⁷⁾ 심사의 기준에는 생태계, 사회, 경제, 선주민의 이해 및 그 장소의 현재와 장래적인 이용(환경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연방의 EIA에 관한 법률은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이다. EPBC법은 국가 수준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 연방 정부의 절차진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검토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현재 국가 수준의 환경에 관한 중요성에 있어서 7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세계 유산
- 국가적 유산
-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 습지 조약 대상 습지(Ramsar wetlands)
- 멸종 위기 지정종 및 생태계
- 지정된 이동종
- 연방 정부 관리 해역
- 원자력 관련 사업(우라늄 채굴을 포함한다)

EIA는 환경 문제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지만, 제안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환경적인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통상의 광물탐사 및 채굴 또는 시료채취를 실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층 더 검토가 필

27) 이하에서는 <http://www.environment.gov.au/> 참조

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환경상의 과제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한다. 그 이상의 검토에 관하여는 공개 환경보고서(Public Environmental Report, PER) 또는 환경 영향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의 작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2가지의 선택수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PER는 EIS의 전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수단에 의한 검토가 적절한가의 결정은 개발계획서를 재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세한 검토에 부담되는 경비는 그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5. 공개 환경보고서 (Public Environmental Report, PER)

공개 환경보고서(PER)는, 환경에의 영향이 크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것은 지방 또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관련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PER 작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일 혹은 한정된 수의 환경 문제
- 한정적인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 NOI의 중요한 부분에 한정된 경우

6. 환경 영향 진술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할 때에 사용되는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환경 영향의 평가를 실시하는 문서이다. VIC주에서는 “Environmental Effects Statement (EES)”라고 한다. E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실시 이유 및 장소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용지 특유의 문제
- 주변의 문제

- 보호 문제
- 사업 계획의 특징

이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며, 지역사회로부터의 개별적인 자문과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EIS에서 적용되는 전형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영향
- 상세 정보와 그 정보의 근거가 되는 증거 서류
- 지속적인 추가정보의 필요성
- 영향의 규모와 기간 및 빈도와 광범성

7.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특별히 복잡하거나 또는 논의의 여지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이것은 공청회 및 사업실시에 대한 지지자 및 반대자로부터의 의견서 제출을 수반하는 공적인 절차로서의 조사과정 이 포함된다. 조사위원회는 공공의 장소에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기술, 개발 사업 혹은 대규모 토지 이용을 하는 경우, 혹은 몇가지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 중요하다. 조사위원회는 몇 인의 독립한 위원중에서 한 명(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의 위원이 의장을 맡는다. 관계 부처(예를 들면,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일반 시민 등은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NSW주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에 대해서 특정 사업에 관한 진술 (Preferred Activity Statement, PAS)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가 모든 의견을 집약하고

그 대신에 그 계획이 인가되어야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VI.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1. 배경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크게 선주권(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주가 시작된 당시, 영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주민 보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나 시책은 최저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2. 선주권의 존재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에게 전통적인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가짐으로써 선주권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권법이 제정되었다. 선주권법에서의 선주권은 미이용의 정부소유지 및 방목리스지 내에 있는 토지나 수역 등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작용의 농업 용지나 주택용지, 및 인프라 용지, 공공기관 용지 등에서 선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96년의 획기적인 Wik판결

에 있어서, 방목리스지에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주권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권이란 토지 소유, 방목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선주권은 다른 특정의 토지이용의 권리, 예를 들어 농장으로서의 차지권(방목리스지)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주 민족 토지소유권 - 선주민의 집단으로서의 토지 소유

선주 민족집단 소유지에서는 법적으로는 선주권은 소멸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선주민에 의하여 선주권보다 강한 선주민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사적 보유지와 같은 배타적 선주 민족 토지소유권은 선주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SA주에서는 1966년에, NT준정부에서는 1976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설정되어 있다. 그 면적은 SA주에서 약 26만km², NT준정부에 약 59만km², 합계로 약 85만km²라고 하는 광대한 토지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에 있어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를 얻는 경우, 선주권이 존재하는 토지와 선주 민족토지 소유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있어서, 선주민의 권리 및 절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주 민족 토지 소유지권에 대해서는, 선주민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다.

4. 선주민 토지에 있어서의 광업 활동 (Mining on Indigenous Freehold Land)

NT주와 SA주에 있어서 광업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선주민 토지 소유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방법 및 인가 절차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선주민의 토지 신탁(Aboriginal land trust)에 의한 경우만이 허락과 동의에 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선주민 소유지에 있어서의 광물탐사 및 채굴·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그 주 및 준정부의 일반적인 광업법과 선주민 토지권법의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NT준정부에서는 광업법(Mining Act)과 선주민 토지권법(Aboriginal Land Rights Act)이, SA주에서는 광업법(Mining Act)과 선주민 토지 피체체체라/마라린가 토지법(Aboriginal Land Pitjantjatjara / Maralinga Lands Act)이 적용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민이 소속하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 및 주의 소관 주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주민 소유 토지에 있어 광물탐사 및 채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앞서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을 신청 할 필요가 있지만, 선주민 소유 토지에 있어서의 광물탐사 및 채굴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²⁸⁾

(1) 절 차 1

광업법(Mining Act)에 따라서 신청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에 관하여 주의 소관 주무장관은 사업자가 광업법에 따라서 교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된다.

(2) 절 차 2

해당하는 주의 선주민 토지법(Aboriginal Land Act)에 따라서 광물탐사 및 채굴권 신청자는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선주민이 소속하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Land Council)와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 선주민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선주민에 의한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은 유예기간(Moratorium Period)이 되어, 광물탐사

28) 이하에서는 <http://www.minerals.nt.gov.au/> 참조

및 채굴 개발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교섭이 결렬되고 나서 2년 후에, 소관 주무장관의 동의에 의하여,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는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교섭이 결렬되고 5년 지나면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자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와 교섭 재개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신청서를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허가를 얻은 후에 채굴권 리스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선주민 토지권법에 따르는 토지 관리 협회로부터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동법 제46조에 따라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와 광업 협정 (mining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절 차 3

광업법에 따라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 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관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VII.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1. 선주권 (Native Title)의 의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행해진 제도개혁으로 선주민 그룹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연방 최고법원에 의한 마보 판결까지, 선주민이 전통적으로 관련을 가져온 토지에 있어서의 권리는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즉, 연방 최고법원은 마보 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의 전통적인 권리는 호주 대륙이 식민지화된 시점에서 소멸하지 않았으며, 그 권리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민지화 된 후의 행위에 의하여, 선주민의 권리가 소멸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주민의 권리가 토지 보유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선주민의 권

리와 이해관계는 영국 통치 이전부터 존재해 온 선주민의 규칙(laws)이나 관습(customs)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다.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상응하여, 호주 연방정부는 1993년에 선주권법(Native Title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호주의 선주민은 토지에 대해서 선주권리의 신청·인가를 받는 절차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3년 이후의 선주권법 개정과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로, 선주권의 의미가 명확화하게 되었다. 연방 최고법원에 의하면, 선주민은 전통적인 규칙이나 관습의 내용에 의하여 그룹 또는 개인으로서 선주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선주권의 매매는 하지 못하였고, 양도 또한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선주권은 접근·사용 권리로부터 독점·보관·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는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선주권은 토지에 대하여 법률 또는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다른 권리와 조화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토지뿐만 아니라 수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최고법원은 선주권에 관한 연방정부와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 각각에 대한 행정권의 역할에 관하여도 명확화하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주권 문제는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어서, 각 주 및 준정부의 법규는 연방의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당초에 WA주 등 일부의 주는 연방정부가 설정한 선주권 시스템에 강하게 반발하여, 각주에서 대체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WA주와 NT주의 대체규정은 연방상원(the Senate)에서 각하 되었고, QLD주의 대체규정도 많은 내용의 변경 이후에 승인되었다. 선주권법은 선주권의 존재 장소를 확정하는 절차와 선주권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선주권이 침해 혹은 소멸했을 경우의 배상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였다. 선주권법에 의하여 선주권 보유자 또는 선주권 신청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업 활동(예를 들어 광물탐사 및 채굴 활동)의 신청에 대하여, 협의권(right to be consulted) 또는 의사결정에 참

가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선주민은 선주민법에 의해서, 고용이나 전통보호 등의 기회를 포함하고, 스스로의 커뮤니티의 이익에 관한 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주민법은 선주민신청자 및 선주민 보유자의 대표 조직의 승인 및 운영을 위한 구조도 확립하였다. 연방정부는 선주민법에 의하여 선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예로서 선주민 대표·조직, 연방 선주민 조정 기관(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NNTT), 호주 연방법원 등이 있다.

2. 연방 선주민 제도 (Commonwealth Native Title Scheme)

선주민 취득절차는 광업에 관련한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제기되지만, 항상 선주민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주민에 관한 절차는 선주민 보유자가 특정의 지역에 대하여 그들의 선주민의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결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 및 준정부에서는 연방 선주민 체계와 거의 동일한 선주민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VIC주, NSW주 및 TAS주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절차(expedited process)가 적용되지 않았다.

3. 선주민 확정을 위한 절차 - 선주민 신청 심사 (Native Title Determination Process “Registration Test”)

(1) 신청등록 (Filing)

선주민신청의 신청등록은 선주민 신청단체가 존재하는 주의 주도에 있는 호주 연방법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²⁹⁾ SA주에서는, 고등법원

29) 이하에서는 <http://www.nntt.gov.au/applications/> 참조

(Supreme Court)도 선주권신청의 신청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등록을 하게 되면, 법원은 우선 신청내용이 적절하고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 청 (Registration)

NNTT가 신청에 관한 심사(registration test)를 실시하지만, 심사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선주권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검토기간을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에 합격한 신청은 선주권신청등록(the Register of Native Title Claims)을 하고 선주권신청자는 교섭권(Right to Negotiate)을 포함한 교섭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심사에 합격하지 않았던 신청은 선주권신청권이 보유유지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NNTT가 선주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호주 연방 법원에 NNTT의 결단이 올바른지의 여부에 관한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 고 (Notification)

NNTT는 선주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선주권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의 내용에서는 선주권의 확정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개인, 법인, 각주 및 준정부의 정부에 대하여 조정(mediation)에 대한 참가자가 되는 신고를 법원에 대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신고는 공고로부터 3월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정에 대한 참가신고인으로부터의 신청을 수리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참가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는 통상 선주권 신청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자 및 그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공청회(directions hearing)에 의해서 수행된다. 공청회에서 법원은 참가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청승낙서 내용

을 NNTT에 통지한다. NNTT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합의 사항은 법원에 통지된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선주권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선주권의 확정을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NNTT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새로운 조정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재판으로 심리하여 선주권을 확정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4.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Mining/Exploration Application)

(1) 공 고

각 주 및 준정부의 소관 관청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정에 관한 예정을 공고한다. 각 주 및 준정부에 따라서는 광구권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관보(Government Gazette)나 일정한 신문간행물 등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고에 대하여 소관 관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간이절차(Fast-tracking)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도 일정상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선주민이 대상지역에 있어서 선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연방법원에 대해서 3월 이내에 선주권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은 상기한 바와 같은 선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정식 교섭 (Formal Negotiation)

간이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계자는 각 주 및 준정부에 의한 교섭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관계자는 NNTT 또는 중립적이라고 합의된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정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A주에서는, 중립적인 조직으로서 환경자원개발재판소(ERD)가 중재를 수행한다. 참가자가 허가에 필요한 합의를 작성할 수 있

는 경우,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은 허가된다.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NNTT 또는 중립적인 조직이 중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재 (Arbitration)

중재기관은 중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부로 허가한다. 또한,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일정한 경우의 판단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연방 장관은 판단결정 절차에 대한 간섭 또는 이의신청을 2개월 이내에 진행시킬 수 있다.

(4) 간이절차 허가신청 (Expedited “Fast-tracking” Process)

신청 대상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손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간이절차 허가신청을 채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간이절차의 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탐사 또는 소규모 탐사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이절차의 적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탐사권은 허가된다. 선주권과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간이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것을 수용하여 예비적 교섭(Preliminary)이 개시된다. NNTT는 이러한 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교섭 후에는 선주권 신청자가 간이절차의 적용을 합의하였을 경우, 이의제기 취하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탐사권은 허가된다. 만약 관계자가 간이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을 경우, 정식적 교섭절차(Formal Negotiations)를 개시하게 된다. 적절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이의제기의 판정은 NNTT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 3 절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I. 브라질

1. 광산 관련법³⁰⁾

(1) 개 요

브라질 광산과 관련된 모든 연구 조사 및 개발 사업은 1967년 제정된 광산법(Código de Mineração), 1988년 제정된 연방헌법 등에 따른다. 그 밖에 에너지자원부(Ministerio de Minas e Energia)·국가광물생산관리국(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cao Mineral; DNPM) 등 광산 개발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제정한 규정이 있다. 광산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 영토에 매장되어 있는 광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지하자원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브라질 영토 및 영해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자원개발과 이에 따르는 수익·금전적 보상 등은 연방·주·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광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는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연방·주·시 정부는 개발업체의 공식등록을 의무화함은 물론 주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인디언 주거지역의 광산개발 및 자원연구에 관한 허가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공청회를 열어 광산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물생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3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29~37쪽 참조.

- 국경 인근지역의 광산개발의 경우 반드시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주 정부는 환경보호 및 광부들의 경제·사회적 개발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광산개발을 허락한다.
- 광산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협동조합(Cooperativa)의 형태로 광부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광산개발 허가 취득에 유리하다.
-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조사활동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브라질 기업(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지역이 국경 지대이거나 인디언 거주지역일 경우에는 정부의 특별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광산자원 조사는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만 활동이 가능하며, 브라질 정부로부터 취득한 조사허가권을 허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광산개발 업체는 법이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2) 광산개발 사업절차

① 조사허가서(Alvara de Pesquisa)

조사허가서란 국가광산개발원(DNPM) 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광산개발 허가서로서 브라질에서 광산개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들이 취득하여야 한다.

광산법 9314/96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광산조사 활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조사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DNPM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70 UFIR³¹⁾을 납부하여야 한다.

31) 세금납부를 위하여 정부가 만든 화폐단위로 물가에 따라 변동된다. 2007년 11월

조사서류는 DNPM 및 광산개발지역 관할관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광산개발 전문가가 사전 검토한 상세한 조사계획서, 기술적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ART-CREA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관할관청은 희망지역에서의 조사활동 가능여부, 조사활동 적법여부 등 구비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활동을 허락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DNPM에게 조사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DNPM은 최종적으로 광산조사 활동을 허가하며, 허가사실은 관보(DOU: Diário Oficial da União)를 통하여 공식 발표된다.

서류상 미비한 점 또는 위법여부가 발견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업체에게 서류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신청서류는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조사활동을 희망하는 업체는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허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조사를 허가받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조사업체는 매년 토지 1 ha 당 1 UFIR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조사업체는 법으로 명시한 기한 내에 조사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사 중 발견된 광물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DNPM은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1년 이내에 광산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허락된 기간 동안 조사활동을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3년(아마존 지역의 경우)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준 1UFIR은 1.74헤알이다.

② 광산개발 허가 (Concessão de Lavra)

광산개발 허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광산개발계획서(Plano de Aproveitamento Economico da Jazida; PAE) 및 개발업체의 재무상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DNPM에 신청한다.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DNPM은 에너지 자원부(MME)에 허가를 요청하며, 이후 MME가 최종적으로 관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광산개발 허가를 발표한다.

③ 설비·영업허가(Licenca de Instalacao/Licenca de Fuincionamento)

MME의 최종허가를 얻기 위하여 설비허가(Licenca de Instalacao; LI)·영업허가(Licenca de Operacao(LO)/Licenca de Funcionamento(LF))·환경허가(EIA/RIMA)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④ 광구사용권 인정(Imissao de Posse de Jazida)

광산개발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산개발 업체는 DNPM에 광구사용권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광구사용권 인정식은 광산개발 현장에서 개발업체, 토지소유주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광산업자는 개발허가 공식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연간 개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업체는 광산소재지 시정부 및 주정부에게 매년 광산개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은 광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별도로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여야 한다.

⑤ 개발사업 중단

DNPM의 동의 하에 최대 6개월까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중단이 반복될 경우 정부는 개발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다.

(3) 광산법(Código de Mineração)

모든 광산개발 활동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APÍTULO I Das Disposições Preliminares (광산개발사업의 정의)

모든 광산자원의 개발·생산·유통은 국가가 관장한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산분야 활동은 다음과 같다(Art 2º).

- I. 에너지자원부 허가가 필요한 광산개발 사업
- II. 국가 광물생산국(DNPM) 국장의 허가가 필요한 광산개발 사업
- III. DNPM 등록 및 개발지역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
- IV. DNPM 국장 허가가 필요한 채굴 작업
- V.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독점개발 사업

CAPÍTULO II Da Pesquisa Mineral (광산자원 조사활동 및 허가기관)

광산업체는 개발을 희망하는 광물에 관한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진행될 예정인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광산자원 조사는 지질학 전문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허가는 DNPM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CAPÍTULO III Da Lavra (광산개발 관련규정)

광물의 채굴작업, 가공작업 등 광산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관리·통제하는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굴작업 시작 이전에 개발업체는 광산에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먼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DNPM과 에너지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CAPÍTULO IV Das Servidões (인력 고용)

자원조사 또는 채굴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노동인력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또는 채굴 작업 시작 이전에 토지사용료 등을 비롯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CAPÍTULO V Das Sanções e Nulidades (규제 및 계약 무효)

조사 및 채굴 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1) 경고, 2) 과태료 부과, 3) 허가 취소 등으로 차등을 두어 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

CAPÍTULO VI Da Garimpagem, Faiscação e Cata (금지명령)

정부의 지시에 따라 채굴 일부를 폐쇄하거나, 일부광물 발굴을 금지시킬 수 있다.

CAPÍTULO VII Das Disposições Finais (광산업체 등록 및 관리)

광산조사 또는 개발허가를 신청한 업체, 이미 허가를 취득한 업체 모두는 회사설립 정관 및 지분구조, 변경내용 등을 DNPM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나 벌금 조치가 취해진다.

2. 석유 관련법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법률 제11921호(2009. 4. 13), 제11909호(2009. 3. 4), 제11116호(2005. 5. 18), 제

11097호(2005. 1. 13), 제10871호(2004. 5. 20), 제10636호(2002. 12. 30), 제10453호(2002. 5. 13), 제10336호(2001. 12. 19), 제10312호(2001. 11. 27), 제10274호(2001. 9. 10), 제9956호(2000. 1. 12) 등이 있다.³²⁾

(1) 석유산업법

에서는 석유 및 가스 독점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과 활동,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Energética; CNPE) 및 국가석유청(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ANP)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³³⁾

제1장에서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익의 유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촉진, 소비자 이익의 보호, 환경보호 및 에너지의 보존 증진,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1조).

제2장에서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장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독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용어의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s)를 내리고 있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4장에서는 국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청을 설치³⁴⁾하면서 그 역할, 수입과 자산, 의사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부터 제20조까지).

제5장에서는 탐사와 생산에 관하여 일반규정, 활동에 대한 특별 규제, 입찰, 계약 양허권 및 로열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부터 제52조까지).

제6장에서는 석유 정제 및 천연가스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32) Brazil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8, pp.124~131.

33) 법률 제9478호(1997. 8. 6)

34) 법률 제11097호(2005. 1. 13)

제7장에서는 석유, 석유생산물 및 천연가스의 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8장에서는 석유, 석유생산물 및 천연가스의 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9장에서는 페트로브라스(Petrbras Brasileiro S.A.)가 에너지광산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의 지분 의무비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장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2) 바이오에너지법

에탄올 생산 1위를 기록하는 브라질은 이미 1970년대부터 바이오연료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에탄올뿐만이 아니라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관련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① 설탕·알코올 부처간위원회(CIMA) 설치³⁵⁾

CIMA는 설탕·알코올 업계의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에너지원 중 사탕수수제품의 적정 비중과 동 분야의 자급(self sustenance)과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CIMA는 생산 관련 프로그램과 연료용 에틸알코올 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②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입업자 등록³⁶⁾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입업자가 재무부 연방세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이오디젤 생산·수입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브

35) 시행령 제3546-2000호(2000. 7. 17)

36) 법률 제11116호(2005. 5. 18)

라질 석유청(ANP)의 승인이 필요함. 2002. 5. 10 제정된 법 제10451호와 2005. 1. 13 제정된 법 제11097호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③ 브라질 에너지원에 바이오디젤 도입³⁷⁾

브라질 에너지원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도입을 규정하고, 기름연료(석유디젤)에 대한 첨가비율을 정함. 종합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상업화, 그리고 석유청(ANP)이 시행하는 감독·통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④ 자동차 오염가스배출의 감축과 다른 대응책에 대해 규정³⁸⁾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 산화질소와 다른 오염 물질의 수준을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동차생산업자와 연료생산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배출상한선과 목표달성기한을 정하고, 국토 전역에서 가솔린에 무수알코올을 첨가하도록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⑤ 가솔린에 무수알코올 의무적 첨가 선언³⁹⁾

동 의무는 가솔린 생산업자에 해당하며, 가솔린의 생산 방법 또는 과정에 관계없이 국산 무수알코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⑥ 바이오디젤 첨가 및 상업화 규정⁴⁰⁾

첨부되는 기술규정에 의거, 디젤유에 바이오디젤을 2% 첨가할 수 있으며, 허가된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에 의해 국토 전역에서 상업화될 수 있다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7) 법률 제11097호(2005. 1. 13) - 법률 제9478호, 제9847호, 제10636호를 개정.

38) 법률 제8723호(1993. 10. 28)

39) 법률 제737-1938호(1938. 9. 23)

40) ANP 시행지침 제42-2004호, ANP 기술규정 제4-2004호(2004. 12. 9)

⑦ 무수에틸알코올과 함수에틸알코올 세부사항 규정⁴¹⁾

ANP 기술규정 제07-2005호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경제행위 자들에 의해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수에틸알코올과 함수에틸알코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⑧ 석유디젤 상업화 규정⁴²⁾

국토 전역에서 석유디젤과 석유디젤-바이오디젤(B2) 혼합연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경제 행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⑨ 바이오디젤 도입 규정⁴³⁾

브라질 에너지원에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규정한 법과 시행규칙으로서, 디젤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2%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 또한 디젤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양이 2% 이상이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⁴⁴⁾

II. 베네수엘라

1. 광업 관련법

(1) 광업법(Ley de Minas)

광물자원의 탐사·생산·양허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 법으로 1999년 Hugo Chavez Fria 대통령령(Decreto) 제295호이며, 2001년 대통령령 제1234호로 행정절차·조건 등이 수정·보완되었다.

41) ANP 시행지침 제36-2005호, ANP 기술규정 제07-2005호(2005. 12. 7)

42) ANP 시행지침 제310-2001호, ANP 기술규정 제06-2001호(2001. 12. 28)

43) 법률 제11097호(2005. 1. 13) 제2조1문(시행령 제5448호, 2005. 5. 20)

44)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2007. 5, 7~9쪽.

2006년 3월 16일 석유 및 천연자원의 국유화와 함께 광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서 베네수엘라 헌법 제302조, 제203조에 명시된 국가소유권의 천명 및 강화를 담고 있다.⁴⁵⁾

① 양허권의 면적

양허권 취득지역의 면적단위는 헥타르(ha)이며, los lote는 12 unidades parcelarias로 구성되며, 이는 최대 6156이다. 양허권은 2 lote(=12312 ha)를 넘지 않는다(법 제28조).

② 광업권 기간

광업권(Concession)은 10년 미만 기간으로 비연속적 2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며, 양허권 획득자의 채굴권은 3년으로 보장되며, 1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법 제49조).

③ 광물자원 세금

광물자원관련 세금에 관한 것으로서 금·다이아몬드와 그 밖의 광물로 나누어 채굴표면세와 채굴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채굴세 관련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류의 경우 상업가치의 4%, 금과 은은 3%, 그 외에는 4%로 규정하고 있다.

(2) 광업투자법(De Inversiones Mineras)

- 신외국인투자법(1990. 1. 공포, 제727호)
- 상표·특허·로열티에 관한 개정법(1992. 2. 공포, 제2095호)
- 은행법 개정법(1993. 11. 공포, 제3228호)
- 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99. 10. 3. 공포, 제356호)
- 전기서비스 법률(1999. 9. 17. 공포, 제319호)
- 입찰법(1999. 9. 5. 공포, 제296호)

4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20~23쪽.

- 공공 공사에 관한 법률(1999. 9. 17. 공포, 제318호)
- 가스법(1999. 9. 12. 공포, 제310호)
- 광업법(1999. 9. 5. 공포, 제295호)
- 금융에 관한 법률(2000. 3. 28, 관보 36920호)
- 광물법(2001. 3. 6. 공포, 제1234호/관보 37155)
- 조세법(2001. 10. 17. 공포, 관보 37305호)
- 토지·농지에 관한 법률(2001. 11. 9. 공포, 제1546호)
- 투자·촉진 보호법(2001. 11. 13. 공포, 제5555호)
- 원유·자원 / 로열티에 관한 개정법(2006. 3. 1. 공포)

2. 탄화수소법(hydrocarbon law)⁴⁶⁾

(1) 국유의 원칙

제1장에서는 원칙규정으로, 베네수엘라 내 모든 탄화수소물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석유에너지부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2조,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기업활동의 통제

제2장에서는 탄화수소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경쟁, 자본참여, 유통, 생산, 공급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장에서는 탄화수소와 관련된 주요 활동의 조건, 국가기업, 합작법인(Empresas Mixtas)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정부와의 계약은 최대 25년까지만 가능하며 15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그 밖에 증여와

46) 베네수엘라 헌법은 2009. 2. 15.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종전 헌법에 석유라고 표현된 것을 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의미의 탄화수소(hydrocarbon)로 고쳤다(실제 이들은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물이나 그 밖의 불순물의 혼합물이다). 그 이유는 차베스정부 하에서 외국 자본 및 우파들이 천연가스는 석유가 아니니까 민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연가스 민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세금은 3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4조), 벌칙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66조부터 제68조 까지).

Ⅲ. 폐 루

1. 광업 관련법

(1) 광업 일반법⁴⁷⁾

이 법은 광업부문에 대한 기본 법률로 그 밖의 광업관련 법령 및 규정의 근거가 된다.

(2) 광업부문 투자진흥 및 보장 규정⁴⁸⁾

광업 일반법 제9장 광업활동 투자진흥 및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다.

(3) 광업투자진흥법(제708호)⁴⁹⁾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여건 보장을 위한 투자보장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법령 등에 따른 광업분야 인센티브

① 세제 안정

광업부문 투자가는 투자승인 시점에서 유효한 세제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세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개정세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계정된 세금이 적용 가능하다).

47) Ley General de Minería, Decreto Supremo 014-92-EM(1992. 6. 3)

48) Decreto Supremo 024-93-EM(1993. 6. 7)

49) Ley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en el Sector Minero; Decreto Legislativo 708.

② 외환 안정

광업부문 투자기업에 자국화 및 외화의 자유로운 사용과 보유 외환의 국내외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배당금, 보유외화, 그 밖의 자본금 등의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③ 경영 안정

투자계획 승인 시 투자업체는 정부와 경영안정 계약을 체결, 이 계약을 통해 정부가 지원 사항을 개별적으로 문서로 보증하게 되며, 이 조항은 사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변경이 불가능하다.

2. 석유관련법

탄화수소에 관한 기본법으로 법률 제26221호(1993. 8. 20)가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명령으로 Supreme Decree 제042-2005-EM호(2005. 10. 14), 기본법 제11조를 승인한 Supreme Decree 제045-2008-EM호(2008. 9. 20)가 있다. 이에 관한 개정법으로 법률 제27377호(2000. 12. 7)가 있다.⁵⁰⁾

(1) 석유 및 가스 기본법(법률 제26221호)⁵¹⁾

이 법은 석유가스 분야의 탐사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다음과 같이 자유 경쟁, 세제 안정성,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하여 세제에 관한 규칙들이 있다.

① 자유 경쟁의 보장

자유 경쟁 및 경제활동 개방에 기초한 자원개발 탐사를 장려하고 있다.

50) Peru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9, pp.49~54.

51)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② 세계 안정성의 보장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세계 및 외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③ 계약 안정성의 보장

에너지광업부가 승인한 양허계약/서비스계약 등에 따라 자원 탐사 개발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서명된 계약은 양방 계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의 경우에만 개정이 가능하도록 헌법 제62조에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계약의 개정은 대통령령(Decreto Supremo)에 의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1장(Title I)에서 법의 적용범위, 목적 등을 서술하고 있고, 제2장(Title II)에서 탐사와 이용, 제3장(Title III)에서 파이프라인, 제4장(Title IV)에서 저장, 제5장(Title V)에서 정제와 처리, 제6장(Title VI)에서 운송, 유통 및 판매, 제7장(Title VII)에서 자유거래, 제8장(Title VIII)에서 천연가스의 유통, 제9장(Title IX)에서 일반조항, 제10장(Title X)에서 경과규정, 제11장(Title XI)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탄화수소법 (법률 제26211호)

1993년 후지모리 대통령은 새로운 탄화수소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계약은 Perupetro가 관장하고, 계약은 에너지광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의 내용을 보면, ㉠ 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 계약 기간은 석유 30년, 가스 40년, 탐사기간 7년, ㉢ 세금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법인소득세 30%), ㉣ 국제적 중재 가능, ㉤ 외국화폐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경쟁시장제도 도입, ㉦ 연료가격의 자율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그 밖의 석유가스 관련법

Petroperu에 관한 석유회사법,⁵²⁾ 천연가스산업화개발진흥법(법률 제 27133호)과 규정, 석유가스 운송규정, 천연가스 배급규정이 있다.⁵³⁾

(4) 바이오에너지법

① 바이오연료시장진흥법(법률 제28054호)⁵⁴⁾

이 법은 자유경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토대로 바이오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적 틀을 설정하고 있다. 2006. 6. 30.부터 북부 La Libertad, Lambayeque, Ancash, Piura 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가솔린에 무수에탄올(7.8%)을 혼합한 에코 가솔린(Gasolina Ecológica)의 생산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2010. 1. 1.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디젤유에 바이오디젤(5%)을 혼합한 에코디젤(Diesel Ecológica)을 2008. 1. 1.부터 야자수가 풍부한 Amazonas, Loreto, Ucayali, San Martin 등 일부 주에서 상용화하고, 이를 2010. 1. 1.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 내용을 보면 자유경쟁과 자유접근의 토대 위에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밝히고 있고(제1조), 제2조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에서는 정책수단, 제4조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제5조에서는 대체작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바이오연료시장진흥법 시행규칙(제013-2005호)⁵⁵⁾

바이오연료 사용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 연료의 생산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⁵⁶⁾

52) Legislative Decree No.43(1)

53) 각각 D.S. 040-99-EM; D.S. 041-99-EM; D.S. 042-99-EM.

54) Ley de Promoción del Mercado de Biocombustibles(2003. 8. 8)

55) D.S. 013-2005-EM(2005. 3. 30)

56)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IV. 아르헨티나

1. 광업관련법⁵⁷⁾

(1) 광업법(광업기본법, Código de Minería)

광물자원의 소유·탐사·생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모든 광산개발은 광업권의 취득, 광산물의 채굴·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광업법에 따라야 한다(광업법 제1조). 1887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법률 제25225호, 대통령령(Decreto) 제456호이다. 부속법으로 광산절차법(Código de Procedimientos Mineros)이 있다.

① 광산·광물 개발 책임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속하며(광업법 제7조), 광물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에 있다(아르헨티나 헌법 제124조). 즉, 연방정부는 광업관련 국가정책의 수립·조정 역할을 하며, 각 주정부는 이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② 프로젝트·입찰 책임

2003년 말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탐사 지역,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입찰 등에 관해서는 주정부 소관사항이다.

2007. 5, 11쪽.
5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24~29쪽.

③ 광물별 개발권

광물의 개발권에 대하여는 이를 광물별로 주정부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2조).⁵⁸⁾

카테고리	개발권
-주요 금속/비금속 광물 -고체연료 광물 -원천지열(내인성 증발)로써 형성된 광물	- 주정부 에게 있음 -개발하려는 자는 주정부에 광업권(Concession)을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가지게 됨 ※금속광물의 경우 통상 토지소유자와 자원개발권자가 다르므로 양자는 협상을 통해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함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자에게 그 토지사용 및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해야 하며, 개발권자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함 (개발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토지매입 의무는 없으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 적절한 시장가를 주고 부지를 매입)

58) Article 2 - As for the rights recognized and conferred by this Code, min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st. Mines whose soil is an accessory and which belong exclusively to the State and which may only be tapped or exploited under a legal license which is gra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2nd. Mines which, based on their importance, are preferentially licensed to the owner of the soil : and mines which, as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deposits, are used on a share basis.

3rd. Mines which belong solely to their owner and which cannot be tapped or exploited by anybody without their owner's consent, except in case of public benefit or good.

카테고리	개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금속 광물 - 염전·초석·이탄전 등 - 강가나 냇물에서 채취하는 금속과 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라이선싱 권한 있음 -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발을 원하지 않고 제3자가 원할 경우 권한 양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암·모래 등 건축용 자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만 가능함 (공적사용을 제외하고 이들 라이선싱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함)

④ 광산개발 기업의 책임과 의무

광산기업은 광물개발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광업법 제161조).

광산기업은 i) 채굴을 위한 천공계획도, ii) 광맥 발굴 30일 이내에 탐사천공 깊이 및 두께, 예상 생산량 및 광물의 품질보고서, iii) 매년 1분기에 개발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iv) 매월 각 공구별 생산기록부 등의 서류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Públicos) 지역 광업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광물 채굴과 관련한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의 감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사항 재발 시 관할 당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산개발업체는 관할 당국에 환경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매 2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광업투자법(De Inversiones Mineras)

광업에 대한 통합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i)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인적 대상과 등록 등에 관한 규정, ii) 회계 안정성과 소득세, 매장량 평가, 세금공제 추가조항 등을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세금 처리 등에 관한 규정, iii) 수입 상품에 관한 규정, iv) 광산 사용료인 로열티에 관한 규정, v)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vi) 광업사무국 등 승인관련 부서에 관한 규정, vii)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투자 와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법률 제24196호 법률 제24296호(수정)
금융 및 부가환급에 관한 법률 (De Financiamiento y Devolucion IVA Reglamento)	법률 제24402호
광업활동법 (De Actualización Minera)	법률 제24498호
광업재조정법 (De Reordenamiento Minero)	법률제 24224호

(3) 외국인투자법(De Inversiones Extranjeras) (법률 제21382호)

법 제3조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1조).

(4) 광업활동을 위한 환경보호법(De la Protección Ambiental para la Actividad Minera, 법률 제24585호)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제282조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인적 적용범위는 모든 개인과 공공 및 민간단체와 기업

이며, 물적 적용범위는 탐사, 개발, 가공 등이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대상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탐사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위험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 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피해의 복구, 폐쇄,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제19조).

(5) 광물상업시스템신설법(De Creación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 법률 제24523호)

광업사무국 산하에 국가 주도로 광물상업시스템(El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i) 광물상업데이터베이스(Base de datos de comercio minero), ii) 정보 및 상담 센터(Centros de información y consulta), iii) 정보관리인(Agentes de información), iv) 사용자(Usuarios)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제2조). 이하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제3조), 정보 및 상담 센터의 기능(제4조 및 제5조), 정보관리인의 의무(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일정한 정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제7조 및 제8조).

(6) 연방광업계약법(De Acuerdo Federal Minero, 법률 제24228호)

전국 각 지역에서의 광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방광업계약에 관한 원칙과 체계를 규정한 법이다.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타이틀 19에 따라 국가와 체결하는 광산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따른 탐사 및 채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Primera). 다음으로 타이틀 18에 따라 지역에서 발굴된 자원의 공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Segunda), 이와 같은 방법으로 23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primera ~ vigesima tercera).

(7) 광업권 획득 절차

광업권(탐사 및 개발권)을 얻는 절차는 광업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광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업권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신청기업에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1	브리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광업국에 대한 브리핑 실시 - 법인 및 광산에 관한 상세정보 보고
2	현장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국 공무원과 브리핑 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3	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후 접수건별로 서류철을 작성하여 심사 시작 - 관련서류는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관련부서로 이관
4	프로젝트 등록 (광업법 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공시·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 문제확인 후 프로젝트 등록
5	처리비용 지불 (광업법 2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 양허비용을 납부하면 3년간 광업권 보장
6	환경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분석 결과보고

<p>7 광물 상세보고 (광업법 제6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광물에 대한 상세한 보고(광산위치·광물종류 및 위치(깊이)·광물존재증명서류 등 제시)
<p>8 측량실시 (광업법 제7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에서 등록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광산에 대한 측량실시 - 측량 전 공시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 해결 필요
<p>9 지적부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결과를 지적부에 등록하고 광산개발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 - 광업권 유지를 위해 매년 정해진 유지비(Canon) 납부
<p>10 탐사/채굴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을 인정받으면 해당지역의 탐사 및 채굴 가능

(8) 개발계약의 형태 및 절차

① 광업투자 방법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한 직접 광업에 투자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 광업권을 허가받아서 직접 탐사 및 개발을 하는 방안
- 탐사 전문업체의 탐사권을 매입하는 방안
- 이미 생산하고 있는 광산의 지분을 구입하는 방안
- 주정부 회사가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곳에서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입찰에 공모하는 방안

② 채광권 취득 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유지요건	내 용
개발권 임대료 납부	광물 카테고리 및 개발지역 단위(크기)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800페소로 약 300불이 안 되는 미미한 금액임(국회에서 임대료를 인상 논의 중임)
최소한의 투자	개발권자는 최소 연간 임대료의 300배 이상을 개발비로 투자해야 함
개발중단의 경우	4년 동안 탐사나 개발 또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 관련 기관은(주로 주정부) 채광권자에게 재투자 계획서를 요청하며 동 계획서는 5년 내에 시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위 3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개발권을 박탈당하며, 다만 「개발권 임대료 납부」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탐사나 개발권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부서는 탐사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벌금·작업 정지·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석유관련법

(1) 탄화수소법(Hidrocarburos, 법률 제17319호)

아르헨티나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위하여 종전 탄화수소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탄화수소 사업자

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허가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바이오에너지법

① 세계 주요 농업 생산 및 수출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6. 5. 12.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를 제정했으며, 2007. 2. 12. 관련 시행령(Decreto 109/2007)을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② 바이오연료법 제26093호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식물성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법으로 제정 4년 후인 2010년부터 국내에서 판매 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의 최소한 5%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향후 15년간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동법의 집행기관을 창설하며, 동기관의 권한을 설정하고,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이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개발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는 법의 집행,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의 기능, 제5조에서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의 질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이하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V. 콜롬비아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료용 알코올 사용법(제693호, 2001. 9. 19)

연료용 알코올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 제품의 생산, 상업화와 소비를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였다.

(2) 형법 개정(법령 제1028-2006호, 2006. 6. 12)

이 법을 통해 형법 제10권에 ‘제6장: 탄화수소와 그 파생제품, 바이오연료와 그 혼합제품 등에 대한 압류,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추가하였다.

(3) 바이오연료에 관한 법령(법령 제939호, 2004. 12. 31)

디젤엔진용 동·식물성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4)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 저장, 유통과 판매에 관한 기술적 규정
(시행령 제180687-2003호, 2003. 6. 17)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뜻밖의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법 제693호에 의해 규정된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 저장, 유통과 혼합비율에 관한 기술·안전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5) 연료용 알코올법 제693호(2001년 제정)의 시행세칙
(시행령 제3862-2005호, 2005. 10. 28)

세제효과를 보기 위해 법 제693-2003호가 다루는 가솔린엔진용 연료와 연료용 알코올의 혼합은 가공 또는 생산 과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6) 바이오연료진흥법(제2,748-05호, 2005. 10. 7)

이 법은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제도에 명시된 청정개발제도(CDM) 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추구함.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디젤, 무수에탄올, 함수에탄올 등을 말하며, 동 연료 생산투자자를 위한 세금혜택을 규정하고 있다.⁵⁹⁾

59)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제10권 제5호),

제 4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I. 지하자원개발법의 의의

지하자원개발법(Surface and Surface Use Law)은 카자흐스탄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탐사 및 개발,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지하설비의 건설 및 운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지하자원 이용권의 종류는 탐광권과 채굴권으로 나누어지며, 탐광권과 채굴권은 각각 6년까지(2년씩 2회 연장가능)와 25년까지(대규모 특별 광종에 따라서는 45년까지 연장가능) 보유 가능하다. 이러한 지하자원 이용권은 일정한 제한하에 양도도 가능하다.

II.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

지하자원은 카자흐스탄의 소유물로 탐광채굴 등의 실시에 관해서는 지하자원 이용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협상을 통하거나, 지하자원이용권 취득을 위한 투자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부여받으며, 카스피해의 해상석유개발에서는 생산물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이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카자흐스탄 의회를 통과한 지하자원 개발법에 따라 종전에 카스피해 해상석유개발에 이용되는 계약유형인 생산물분배협약방식은 폐지되게 되었다. 또한 본 개정에서 계약체결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탐사계약의 경우는 낙찰자가 발표된 날(입찰의 경우)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직접협상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로부터 18개월 이내, 생산

2007. 5, 9~10쪽.

계약의 경우는 탐사계약의 경우는 낙찰자가 발표된 날 혹은 직접협상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직접협상(Direct Negotiations)⁶⁰⁾

직접협상의 절차는 신청자가 관할기관에 신청자의 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협상이 결정되면 관할기관은 선정된 신청자에게 협상일자를 통고한다. 직접협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탐사계약에 따른 지질조사로 광상을 발견한 경우, 배타적 채굴권을 갖는 해당자가 지하자원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 탐사 및 / 또는 개발과 관련 없는 지하설비의 건설 및 / 또는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이 목적일 때
- 신청자가 국영기업일 때

2. 입찰(Bids)

지하자원이용권에 대한 입찰은 공개적 입찰 또는 잠재적 입찰자에게만 통고하여 이루어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및 / 또는 개발을 위한 기술, 조직, 관리, 및 재정 능력이 명시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기관은 해당지역에 관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면 입찰자는 이를 근거로 투자 프로그램 입찰가격을 준비하여 제시하게 된다.

종전의 낙찰자 선정은, “탐사 / 개발의 시작날짜, 개발 이익, 정부에 대한 사업초 및 사업후 지불액 추산, 투자액, 해당지역의 산업

60) 직접협상에 의한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는 2004년 12월 개정에서 추가된 조항이다. 이 밖에도 양도된 지하자원 이용권과 법인의 권익 취득에 대한 국가의 선매권 규정, 지하자원 이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인 고용, 국내물품 및 서비스와 고도처리 기술의 도입에 관한 의무 규정, 입찰 수속기간 등도 이때 추가되었다.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와 자금조달의 약정 및 조건, 환경보호 그리고 운영 안정성에 관한 법제 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오직 “서명보너스”(Subscription bonus)⁶¹⁾의 액수와 사회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의 공제 액수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최저 1개월, 입찰 예고는 최저 3개월, 심사기간은 15일 (종전에는 2개월이었으나 15일로 단축)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입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입찰에 오직 한 명의 입찰자만 있다면, 관할기관은 직접협상을 통해 해당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입찰 위원회가 낙찰자를 결정하면, 낙찰자는 탐사/개발/건설/지하설비의 운영에 대한 지하자원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에서 관할 기관에 의한 경제성 검토 및 세무조사 그리고 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계약조건⁶²⁾은 관할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작성된다. 매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입찰을 위한 블록/매장지 리스트를 발표하고, 블록/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국영기업에 이를 제공한다.

3. 생산물분배협약(Product Sharing Agreement, PSA)

카스피해와 아랄해의 카자흐스탄 영해에서 석유개발에 대한 권리부여는 해상 석유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분배협약(PSA)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통과된 개정 지하자원개발법에는 지하자원개발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이러한 생산물분배협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법이 발효된 때부터는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유형으

61) 정부와 자원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실시권을 취득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

62) 2004년 12월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로서의 생산물분배협약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오랫동안 이용되었던 지하자원이용권 부여의 한 방법인 생산물분배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PSA에 기술된 지하자원사용권 부여에 관한 절차를 보면, 해양 석유 매장지에 대한 지하자원사용권은 일반적으로 공개 또는 제한적 입찰을 통해 부여되도록 하여 앞서 기술한 일반적 절차와 유사하나, 특별한 해안 석유매장지에 대해서는 국제 협정에 준하는 적절한 입찰 없이 부여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PSA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SA는 관련정부기관에서 구성된 특별작업분과(Special Working Group)에 의해 입안된다.
- 입찰조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 ‘카자흐스탄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석유 정제물량 공급유지,’ ‘첨단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가공제품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의 제안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와 동시에 계약자 선택의 주요 기준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가공제품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등’과 같은 계약의무 수행임)
- PSA 계약기간은 탐사 및 개발 35년, 개발 작업 25년 그리고 독특한 매장지에 대해서는 45년임. (계약자가 지하자원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PSA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 연장신청의 승인여부를 입찰 없이 고려함)
- 지하자원, 환경 및 보건, 작업 안정성을 위한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법제가 개정될 경우, PSA도 이에 따라 변경됨
- PSA로 계약한 기업들이 세금을 미납 또는 체납할 경우 이들 기업의 기업비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은 모든 PSA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50%를 참여할 권리가 있다.
-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 관련정부기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 이외에도 계약자들이 PSA 규정을 준수하여 탐사 및 개발 활동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에 귀속되는 생산물을 확보한다.

카자흐스탄의 생산물분배협약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SA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Royalty)를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탐사, 개발, 운영비 포함)인 비용회수원유(Cost Recovery Oil)는 사후 정산되나, 초기 과도한 비용회수를 막기 위해 대부분 비용회수원유에는 한도액이 설정된다.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나 대개 20 - 50 % 내에서 결정된다. 총원유 생산량에서 이용료와 비용회수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즉 이익원유(Profit Oil)는 정부지분과 사업자 지분으로 나뉜다. 이때 사업자 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Ⅲ.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

1. 개념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민사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전부 또는 부분적 양도)를 담당하는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Kazakhstan, MEMR)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를 위한 협의회가 체결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협의는 협의회가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그리고 1개 기업 이상에 관련된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는 관련된 모든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양도의 제한

카자흐스탄은 2005년 10월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지하자원이용권의 이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즉, 정부는 지하자원 이용자의 권리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i) 양도를 받은 제3자의 계약 수행가능성이 불충분하거나, (ii) 에너지 광물자원부로의 지출 정보에 관련한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자원 이용권의 자회사 양도와 기업상속(승계)이라도 국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3. 허가 대상

지하자원이용권의 자회사 양도와 기업상속(승계)이라도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자원이용권, 담보물을 포함하여 지하자원 이용자에게 투자한 지분 등의 상환청구시,⁶³⁾ 법인의 신규투자로 인해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이 증가한 결과, 지하자원개발기업에서 분배권(right to share)이 발생한 경우, 지하자원개발기업의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시, 그리고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의 담보로의 이전 등의 경우에도 관할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편 2008년 12월 개정법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조직화된 증권시장(organized securities market)에서 거래되는 지하자원개발기업의 주식 및/또는 파생증권의 양도거래시;

63) 제3자가 지하자원이용권자의 채무 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하자원이용권을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100 % 자회사(subsidiary)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 지하자원개발권 또는 지하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100 % 관계회사(affiliated company)인 법인 상호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IV. 석유법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탐사계약의 기간은 6년이고, 2년씩 2번 연장할 수 있어, 탐사기간은 총10년으로 간주된다. 생산계약의 기간은 25년이나, 가채매장량이 석유 1억 톤, 천연가스 1억 입방미터일 경우 40년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계약자와 관할기관 양자 합의에 따라 생산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탐사와 생산을 합쳐 계약한 경우 연장은 각각 탐사와 생산 기간 연장 규정에 따른다. 계약조건은 카자흐스탄 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 간에 상호승인 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2. 석유계약시 필요한 요건

석유계약(Petroleum Contract)은 다른 민사계약(civil contract)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되나, 석유명령(Petroleum Decree)은 그 협상과 집행에 필요한 많은 별도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서명하기 이전에, 석유계약은 보건의료(healthcare), 공중보건(public health), 환경(environment), 지하자원의 보호 및 광산의 안전(protection of the subsurface and mining safety)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기관과 합의가 이루어 져야. 이 절차는 해당 집단의 계약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⁶⁴⁾

64) Petroleum Decree 27조 1항

- 계약은 전문가 평가를 위한 계약서의 제출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경제적 및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⁶⁵⁾
- 계약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⁶⁶⁾

3. 천연가스의 탐사 및 생산

계약자는 천연가스의 상업적 발견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생산시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탐사를 시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매매가 이루어져 매장지로부터 매입지까지 수송이 확보되기 전까지 계약자는 천연가스 생산을 할 수 없고, 관할기관은 천연가스 생산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자가 1년 동안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기관은 계약자에게 제3자와의 매매협상을 합리적인 조건하에 종결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만일 계약자와 관할기관이 결정한 제3자가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약자와 제3자는 카자흐스탄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사고 및 환경오염

계약자는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보건, 환경오염, 설비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치방법들을 개발해서 매년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석유개발시작 이전과 개발사업기간 동안 지하자원이용자는 주변 환경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65) Petroleum Decree 27조 2항

66) Petroleum Decree 27조 3항

조사해야 한다. 만약 환경보호지역에서 계약자가 석유개발사업을 할 경우, 오염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탐사비용의 보상

탐사와 생산기간동안 소요된 계약자의 비용은 관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탐사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은 다른 조건이 특별히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이 시작된 후에 생산된 탄화수소자원을 할당하여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다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만 1년간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위해 생산된 석유가치의 50%를 초과하게 요구할 수 없다. 비용이 만1년간 보상되지 않았다면, 다음 1년으로 보상기간이 연장된다.

6. 파이프라인

메인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갖고, 관리 역시 파이프라인 소유자 즉 카자흐스탄 정부가 하는 것이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으로, 기술적 관리, 안전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 운영 규정은 파이프라인에 관계된 모든 관련정부기관, 기업, 토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지방기관 및 지방정부는 펌프, 비축, 수송 등 파이프라인에 관계된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 기업은 파이프라인 소유권자의 승인 없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안전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작업도 소유자의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없다.

제 4 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제 1 절 호주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I. 호주에 대한 에너지산업 투자 진출 형태

호주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 사무소를 제외한다면, 법인과 지점의 구분보다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외국회사(foreign company)로 등록하는지 지역회사(local company)로 등록하는지의 여부 구분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이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서 행하는 투자승인 등의 단계에서는 현지 법인과 지점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FIRB의 가이드에서는 “branch”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 Australia Pty. Ltd”와 같은 상호로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투자 진출 법인체의 성격상 자체적인 독립채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점으로 대외적 명칭을 정하기는 하지만, 호주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계좌개설, 은행거래 등에 있어 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국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만 초래할 수도 있다.⁶⁷⁾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느냐 호주기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은 외국기업의 경우 경영 공시의 의무가 없으며 대신 ASIC에 본사의 경영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타 법인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으나 개념적으로 외국 기업의 경우 본사의 수익 중 호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호주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포함한 모

67) 이하에서는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이중과세 협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 상담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경영 공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견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은행과의 거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은 호주 사회 전반적 풍토를 생각할 때 거래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II. 투자진출 형태별 절차

1. 지 사 (지점)

법인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⁶⁸⁾

2. 법 인

(1) 허가대상 투자

법인이 투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허가대상 투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허가 대상 투자는 투자 신청서를 사업 계획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제출 후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A\$ 5,0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기업의 인수
- ② A\$ 5,000만 이상의 신규 투자
- ③ 외국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 ④ 기존 호주 기업에 상당한 이해 관계를 가져올 주식 취득 또는 발행

68) 이하에서는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제조, 서비스, 자원 가공, 석유 및 가스, 광물 (우라늄 제외), 비은행 금융 중개, 주식 중개, 관광, 부동산(도시권 제외), 농림수산 부문에서의 A\$ 5,000만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FIRB 에 신고해야 한다.

- ① A\$ 5,000만 이상인 기존 호주 기업의 인수
- ② A\$ 5,000만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취득 (농장은 A\$ 300만 이상)
- ③ A\$ 1,000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2) 법인 등록

호주에서의 회사설립(법인 등록)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나면 이의 보전을 위해 기업등록소(Register of Companies) 또는 각 주의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에 법인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 명칭을 등록시킨 후에 다음 서류를 ASIC에 제출하면 법인으로 설립된다.

- ① 정 관 : 법인 명칭,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설립자 성명 및 주소, 주식 소유 관계, 주식 및 보증인의 책임 한계, 주식 자본금 규모, 주식 가격 등 법인의 사업 및 권한을 규정
- ② 부정관 : 이사의 임면 및 권한, 회의 개최 및 투표, 주식 양도 및 이익 배당금 처리 등 법인의 경영 및 통제를 규정
- ③ 법인 중역진 명단
- ④ 등록 사무실 공고

기업은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공개 법인은 정관이나 부정관에 주식 이전권의 제한, 주주의 50 인 이내 제한 (고용인 주주 제외) 및 저당 설정 또는 주식 공매 금지 조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투자 승인은 물론 현지 근무 예정자의 이민(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바, 가급적 현지 변호사 또는 회계 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 내의 절차는 최소 영주권 소지자 이상이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바 설립 단계에 있어서는 현지 파트너의 제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지인 1인과의 공동 대표 체제 등)

(3) 연락 사무소

투자심의위원회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ASIC에의 등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자의 발급, 사무실 임차 등에 있어 최소한 등록 사무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볼 때 법인 설립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의 성격상 FIRB의 승인 필요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공 장

신규 공장 건설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Landlord)와 지방 정부(Council)이다. Council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구, 지방의 경우 군 정도에 해당하며 이들 council은 공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 “Industrial Area”를 설정해 두고 있다.

다만, Industrial Area에 대해 지방 정부가 소유권 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은 통상 수 개의 부동산 기업, 금융 기업, 개인 기업에 나눠져 있다.

공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뉘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4A, 4B의 구분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4A 지역은 주중에도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작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공업용지상에서 원하는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의 검토와 최종 승인은 Council의 Planning Division을 통해 진행하며 이때 유능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특히 Council에 따라 산업 시설 유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른데, 불과 30Km 떨어진 council에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곳은 5주가 소요된 반면 다른 곳은 5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산업 시설 유치에 호의적인 지방 정부의 경우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상 부동산 에이전트는 의뢰인으로 부터 적정 토지의 물색에서 시작해 소유주와의 가격 협상, 지방 정부와의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A\$ 50~300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는 일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약한 달간 공시하고 의의를 접수한 다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해결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장 건설 시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드니가 소재한 NSW 지역에서 입지 선정 시 호주 최대의 상업항인 보타니 항, 시드니 공항과의 연계, 시드니, 울릉공, 뉴캐슬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NSW 지역의 도로망은 퀸즐랜드주나 빅토리아주에 비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1. 외국 투자법 및 규제 (Foreign Investment Law and Regulation)

호주 연방정부의 장기적 정책에서는, 호주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투자매수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하여, 호주 국가 이익에 상충되는 M&A 계획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⁶⁹⁾ 동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호주 경제에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수출 진흥형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개발 및 고용기회 창출은 호주 국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안전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연방 외국 투자 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외국기업이 가지는 호주 기업의 자산을, 다른 해외 기업이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산가치가 5000만 호주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경우 외국투자규제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호주의 외국투자정책에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표명하지 않는 이상, 매수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된다. 매수계획이 상세하게 심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라늄을 제외하고 광업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FIRB는 외국자본이 광업분야의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외국 기업에 의한 매수 계획에 대해서는 조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69) 이하에서는 <http://www.investaustralia.com.au/> 참조

2. 해외 기업의 등록 (Foreign Company Registration Requirements)

2001년 연방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근거하여, 외국 기업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로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란 호주에 있어 사채의 제공, 주식 또는 자산의 매매거래 또는 호주에 상설 사무소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 기업은 호주에서 투자를 하든가, 또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호주 국내에서 등록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각 주의 광업청에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주 광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던지 또는 각 주의 자원개발에 관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광물자원법(QLD)에서는 「적격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누구라도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적격자」는 성인, 지방 자치체, 외국등록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의미하고, 등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WA주에서는 등록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1년 연방회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하려면 외국 기업은 호주 거주자 또는 호주 기업인을 현지 대리인으로 하여 을 최소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호주 국내에 사무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등록신청은 회사설립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사본, 기업행동헌장, 이사의 상세한 내용, 호주 거주자 이사의 권한, 호주 자산의 주식 명세 및 등록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상세를 첨부하여,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ASIC)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호주에서 외국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에 호주에서 설립된 비상장 기업 또는 상장기업인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는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하는지, Paper Company 등의 호주 기업을 취득하여 설립할 수 있다.

IV.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1. 탐사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Exploration)

탐사권 허가를 얻은 기업에 대하여는 인가에 관하여 부수하는 조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광물자원 또는 석유자원의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 호주 또는 호주기업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새롭게 탐사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탐사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투자 매수법에 따르는 심사가 면제되므로, 연방 외국투자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에 대한 보고나 허가신청의 필요는 없게 된다.

2.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Development)

일반적으로 광업권리스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포함한 채굴권 광구의 매수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매수법에 의하여 FIRB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이 관여한 광물자원 또는 석유의 탐사활동의 결과, 개발사업에의 전투자액이 1000만 호주 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FIRB가 심사를 수행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보고한다.

V.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호주에 있어서 일반 광업 및 석유 등의 에너지자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형태는 Unincorporated Joint Venture(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공동 사업)이다. 그 외의 형태로서는, 일반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유닛트러스트, 유한책임회사가 있다.⁷⁰⁾

70) 이하에서는 <http://www.investaustralia.com.au/> 참조

1.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공동 사업 (Unincorporated Joint Venture)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 또는 수익의 분배가 공동참가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 조세당국은 이러한 공동참가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 형태를 호주 소득세법의 적용상 세무상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일반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서 사업 참가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 채광, 유정 또는 유전의 개발 및 생산비용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담한다. 또한, 사업 참가자 사이에서는 공동기업체에 있어서의 지분비율에 따르고 생산물을 인수하는 등의 계약을 맺고 있다. 공동기업체의 참가자는 각각에 분배된 생산물의 판매를 각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보통 이러한 계약체결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 참가자가 하나의 판매회사와 개별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참가자가 각각의 생산물을 하나의 판매 회사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 판매회사는 공동기업체에 의한 생산물의 마케팅을 수행한다. 공동기업체의 각 참가자는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공유(Tenant in Common)로서 각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 각 참가자는 자본에 의한 지출에 관하여 세법상의 여러 가지 특별 공제의 우대조치나 선택의 특전 등을 각각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의 참가자에 대하여 공동기업체와 관련된 세무상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참가자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호주 소득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처리된다. 공동기업체의 계약으로는 매니저 또는 오퍼레이터를 선임하고, 사업의 관리 및 사업 참가자로부터의 거출금(Cash Calls)의 징수 및 공동 기업체 사업 운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운영에 관한 표준 계약서가 이용되고 있다.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공동참가인의 수익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유로 취급할 것인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Un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일반법상 파트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에 대하여 사업형태가 세무상 파트너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광업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로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즉, 파트너십 참가자는 연대 한편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종결하지 않는 한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 파트너십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모든 파트너가 구속된다는 점,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취득한 전소득을 기본으로 각 파트너에게 과세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은 세법상 『파트너로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조직이며, 회사를 제외하다』고 정의되고 있어서 일반법에 따르는 정의인 『파트너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과 비교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공동기업체는 일반법에 의하여는 파트너십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법의 규정에서는 파트너십으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주의 일반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서는 세무상 파트너십이라고 보여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기업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

3. 유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에 의한 파트너십의 설립을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약간의 추가적 특징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보통의 파트너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파트너십은 최저 한명의 무한책임 사원(General Partner)과 일정한 수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 사원은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파트너십 경영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각 출자한 금전 또는 자산의 액수를 한도로 한다.

VI.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1. 개 요

호주 정부는 최근 2008년 2월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 호주 투자를 심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들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중 하나로 IMF와 OECD도 국제 공조를 통한 국부펀드 관련 국제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⁷¹⁾

2. 주요 내용

2008년에 호주 정부가 발표한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대한 6가지 가이드라인(2008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71) 이하에서는 <http://firb.gov.au/> 및 KOTRA 자료 참조

(1) 투자자의 경영이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호주정부는 잠정 투자자가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잠정 투자자의 정관(지배구조 협약)이 외국정부에 의한 실질적·암묵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자금조달 구조를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경우, 호주정부는 비정부 지분의 규모와 구성(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

호주정부는 투자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의한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 및 감독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배구조 관행을 점검하며, 국부펀드의 경우 펀드의 투자정책 및 호주회사에 대해 어떠한 경로로 투자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3) 투자가 해당 분야/산업의 독점을 유발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동 사항은 호주 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의해서도 검토될 수 있다.

(4) 투자가 호주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기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예를 들어, 외국 정부기관에 의한 투자는 다른 여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기타 정책(예컨대, 환경 등)과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5) 투자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호주정부는 특정 투자가 국가의 전략적 / 안보적 이익 수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투자가 호주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호주 기업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호주정부는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호주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등을 검토하며, 핵심 검토대상에는 수입, 수출, 역내 가공, R&D 및 노사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 후 유지될 기업의 소유, 지배, 관리에 대한 호주의 참여도(고용자, 채권자, 기타주주의 이익을 포함)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 검 토

호주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지배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다.

그런데,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은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재무부는 특정 외국인투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 호주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사업체(석유 탐사 및 생산 업체 포함)의 지배적 지분 획득하기 위한 제안, 또는 A\$5천만 (2006년 기준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A\$831백만) 수준의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

② 총 투자액 A\$1천만 이상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예: 석유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③ 5년 이상 토지를 획득 또는 임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제안. 다만, 연방정부, 주정부, 테리토리 정부로부터 직접 획득한 토지나, A\$5천만 이하의 가치를 지녔고 이미 개발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한편으로, 2005년 1월 발효된 호주-미국 FTA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공표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A\$831백만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A\$5천만 한도). 또한, 다른 관련 정책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석유 탐사에 소유권을 가진 외국기업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해외 정부, 정부기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기업은 호주 내에 직접투자(탐사 포함)를 할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석유 및 가스 산업 포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중남미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I. 브라질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⁷²⁾

① 회사설립 개요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할 회사의 종류, 현지법인(subsidiary)과 지사(branch),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 S.A.)⁷³⁾와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⁷⁴⁾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i) 브라질에서 지점개설이 어렵고, ii) 현지법인과 해외본사와의 책임관계를 절단할 수 있고, iii) 현지사업의 수행과 현지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② 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 현지법인의 임시대표 선임과 주소선정, CETESB의 환경허가(Licenciamento Ambiental), 소방안전 검사(Vistoria do Imóvel), 회사명의 확정, 설립정관의 작성, 주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NIRE), 연방세무국에 법인납세등록신청(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ídica; CNPJ), 은행계좌 개설,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연방세무국에 외국 투자자의 법인납세등록신청(CNPJ), 투자금의 송금과 중앙은행에 외국

72)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37~49쪽.

73)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며,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1976. 12. 12. 제6404호). 1997. 6. 5. 제9437호, 2001. 10. 31. 제1030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되었다.

74)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형태이며, 주식회사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다.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제10406호).

인 투자금 등록, 州 세무국에 등록(ICMS), 市 등록(CCM)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③ 지사설립 절차

외국회사가 브라질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branch)나 사무소 등을 설립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공법적 규제

① 핵에너지 분야

브라질에서는 핵에너지에 대하여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제 21조 제23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자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광물자원 분야

지하자원, 광산업(조사·채굴·가공 등)⁷⁵⁾의 경우 모든 업체들은 사업개시 이전에 자원에너지부(Ministério das Minase Energia)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취득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국·내외 업체 모두에게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다.⁷⁶⁾

(i) 국경지대 투자금지

외국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규제는 국경지대 투자금지이다. 브라질 국경지대의 총길이는 15,719km로서 국경선을 기준으로 150km 근방 이내에서 외국업체는 광물조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75)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되었으며,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7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49~50쪽.

(ii) 환경적 규제

광산개발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부(Ministerio do Meio Ambiente; MMA)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석유자원 분야

석유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3) 투자유인 법제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브라질 현지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Isonomia Legal a Fiscal). 따라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브라질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의 혜택 및 세금 인센티브 등을 얻을 수 있다.⁷⁷⁾

① 연방정부 인센티브

연방정부는 경제·사회적 발달이 늦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과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북동부 지역 투자는 SUDENE(북동부지역 개발기구)가, 아마존 지역 투자는 SUDAM(아마존지역 개발기구)가 관장하며, 이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는 광산개발 수익으로 인한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7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51쪽.

(i) 소득세 면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에게 생산 가동일부터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1997년 11월 14일 이전에 시설 확충, 사업 확장·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ii) 소득세 감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SUDAM 또는 SUDENE 허가를 취득하고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기업(공업 및 농업분야)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 확충, 사업 확장·변경 등의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게도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75% 감면
-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50% 감면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또한, 1998년 1월 1일 기준 SUDAM과 SUDENE 지역에서 영업 중인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소득세 37.5% 감면
- 2004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소득세 25% 감면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12.5% 감면

② 주정부 인센티브

대부분의 주정부는 주별로 다른 인센티브를 州 내에 설립한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상품유통세(ICMS)를 감면하는 것이다. 한편, 세금 감면 대신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한다. 주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모든 인센티브는 국가 조세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Fazendária; CONFAZ)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세 법

(1) 조세체계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으며, 브라질 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담세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과세방식이 아주 복잡하여 기업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주·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⁷⁸⁾

- ① 연방세로서, 수출세(IE), 수입세(II), 농지소유세(ITR), 소득세(IR), 공산품세(IPI), 금융거래세(IOF), 사회보장세, 수표세 등이 있다.
- ② 주세로서,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자동차보유세(IPVA),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다.
- ③ 시세로서, 토지가옥세(IPTU), 서비스세(ISS), 유류세 등이 있다.
- ④ 사회부담금(PIS-COFINS)⁷⁹⁾으로서, i) 사회보험용자부담(COFINS: 모든 서비스나 상품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은 과세되지 않음, ii) 사회통합계획(PIS: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며 수출수입은 과세되지 않음), iii) 금융거래부담(CPMF: 현금 및 수표의 발행·자금운용 등 당좌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과세함), iv) 사회

7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61~64쪽.

79) 사회부담금은 국민의 건강이나 연금 및 약자 구제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고용주·근로자·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복권 등에 의하여 재원이 확보된다. 부담금의 액수는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징수는 연방국세청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부금(CSLL: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모든 법인과 법인지위의 대우를 받는 자에게 부담의무, 부담금 표준액은 법인세 공제 전 이익에 몇 가지 가산항목·감산항목에 대하여 조정을 행한 금액) 등이 있다.

- ⑤ 그 밖의 주요 부담금으로서, 사회복지원(INSS)에 대한 부담금과 근속연수 보상기금(FGIS)이 있다.

(2) 광산개발세(Compensação Financeira pela Exploração de Recursos Minerais; CFEM)⁸⁰⁾

광산개발세(1988년 법 제정)는 연방·주·시 정부에게 광산개발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가광물생산관리국(DNPM)이 법 8876/94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광산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징수한다.

광산개발세는 총 매출액에서 운송비·보험료·ICMS·PIS·COFIN의 세금납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개발업체가 광물을 (판매하지 않고) 가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과된다. 세율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i) 알루미늄·망간·암염·칼륨 3%, ii) 철광석·석탄 및 그 밖의 광물 2%, iii) 금 1%, iv) 보석 및 귀금속 0.2%이다.

납부기간을 보면, 광산업체는 매달 납부하되, 세금산정기준 월의 다음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고지서는 DNP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납기일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광산개발세는 관련 국가기관·주 정부 및 시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광산이 두 도시 사이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각 도시에서 생산되는 광물 생산량에 비례하여 양쪽 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해당기관(DNPM, IBAMA, MCT) 12%, 주 정부 23%, 시 정부 65%).

8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브라질-, 2007. 12, 65~67쪽.

광산개발세는 광산소재지의 산업 인프라 개선·환경보호·보건위생 및 교육을 위하여 사용된다.

II. 베네수엘라

1. 투자법제 개관

외국인 투자법으로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나 헌법(제301항에 수록), 1992년 공포된 법령 제2095호(Comunidad Andina 관련), 1999년 공포된 투자촉진·보호법, 특별법 등이 있다.

(1) 법인·지사 설립⁸¹⁾

① 회사설립 개요

외국인투자법(1992. 3. 개정, 대통령령 제2095호)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청(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 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설립 절차

정관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소에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 국세청(Seniat)에 납세자 등록(RIF 및 NIT), 외국인투자청(SIEX)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③ 지사설립 절차

현지법인 설립 대신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국회사의 국적을 보유하며, 본국회사와 다른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지사

81)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25~28쪽.

는 베네수엘라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공법적 규제

① 외국인 투자금지⁸²⁾

(i) 규제분야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석유·철광석·그 밖의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석유공업, 은행·보험·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 허용된다.

(ii) 석유개발의 제한

석유·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정부 수립 이후 1999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2006. 3. 30 의회는 에너지석유부(MENTPET)가 제출한 석유법 합작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주요내용은 ㉠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회사(Empresa Mixta; Joint Venture)를 설립하되 그 회사 지분의 51% 이상⁸³⁾을 PDVSA가 소유, ㉡ 합작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국가의 독점적 판매권 확보), ㉢ 국제중재를

8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29쪽.

83) 실제 대부분의 합작투자회사의 PDVSA 지분율은 60% 이상이다.

통한 분쟁해결 금지 및 국내판결을 통한 독자해결 규정, ㉞ 외국기업의 석유 로열티를 기존의 1~16.66%에서 33.3%(2008년 현재)로 인상하였다(가스생산 로열티는 20%).⁸⁴⁾

2008. 4. 15.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시 부과되는 특별부가금’ 규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 5. 부터는 원유 및 정제유 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i) 월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US 70\$ 이상시, 동 평균가격과 US 70\$과의 차액의 50%, ii) 월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US 100\$ 이상시, 동 평균가격과 US 100\$과의 차액의 60%가 특별부가금으로 부과된다.⁸⁵⁾

(iii) 토지소유권의 제한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기간산업지대, 군사시설지역, 국경지역, 해안가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의 사전인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취득, 공장의 신규건설 및 증축 시에는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환경적 규제⁸⁶⁾

모든 광물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은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물과 관련된 환경법으로는 「광물채굴·생산에 관한 법률」(1992. 4. 23. 공포, 특별법 제 4418호)과 「광물프로젝트·탄화수소채굴·생산에 관한 법률」(1996. 7. 4. 공포, 특별법 제5079호)이 있다.

84)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4쪽, 13~15쪽.

85) 이 금액은 전액 ‘국가개발기금’(FONDEN)으로 전입되어 베네수엘라 내 서민주택 건설,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각종 사회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ISLR) 산정 시 손비로 인정된다.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4쪽, 15쪽.

8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21~22쪽.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통하여 환경과피 등 법에 저촉될 경우 50~50,000 Unit 과세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하다(석유법 제66조).⁸⁷⁾

(3) 투자유인 법제⁸⁸⁾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조세감면, 장단기 금융지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Paraguana 산업단지와 Margarita 자유무역지대, Santa Elena de Uairen 자유무역지대를 설치·운영하며, 수출·수입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석유생산 및 관련사업에 신규투자 시 8%의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석유탐사, 유정시추, 설치, 수송, 저장, 가스저장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 추가로 4%의 소득세가 감면된다(2001. 12. 28. 공포, 특별법 제5566호). 또한, 농업·수산업·관광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에는 8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2. 세 법

(1) 조세체계⁸⁹⁾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SENIAT)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취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87)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41쪽.

88)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0쪽.

8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5쪽.

(2) 법인의 소득세⁹⁰⁾

① 법인의 소득세율

과세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표 4-3> 법인의 소득세율

과세소득(T.U.)	세 율	누진 공제율(T.U.)
0~2,000	15%	0
2,000~3,000	22%	140
3,000~	34%	500

주 : T.U.(tax unit) : 1 T.U.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됨
2007년 11월 현재 1 T.U. = 27,632볼리바르

②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지방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의 세율이 적용된다.

③ 지점이익세

지점이익세는 지점과 베네수엘라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베네수엘라 법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④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 또한 없다.

⑤ 법인의 소득세는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제출된 연간소득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9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5~36쪽.

(3) 개인소득세⁹¹⁾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소득은 소득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며, 봉급과 특별수당 같은 그 밖의 유형의 보상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함께 i) 납세자의 경우 10 T.U., ii) 배우자와 거주자인 각 부양가족의 경우 10 T.U.의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4) 부가가치세⁹²⁾

①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8~16.5%의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데, 1999년 최초 15.5%, 2000년 8월 14.5%, 2002년 16%,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4%, 2006년 11%, 2007년 9%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다만, 3만 달러 이상의 고급 자가용이나 500cc 이상 오토바이·헬리콥터·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② 면세대상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품목은 쌀, 달걀, 커피, 버터, 마아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 및 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하여도 면제이다.

(5) 금융거래세⁹³⁾

베네수엘라는 부족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19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세를 적용하였었다. 금융거

9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7쪽.

9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8쪽.

9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8쪽.

래세의 세율은 0.5%로 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 유동성 자금 및 신탁예금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 제3자에 의한 각종 환어음·약속어음·신용장 등의 현금결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의 횡수, 청산, 양도결제 및 금융기관의 대출·은행 간 대출·은행보증수표의 결제·이자지급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활동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은행 및 상공인이 반발로 2000년 5월부터 폐지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하여 2002년에 부활하여 1년 동안 지속되다 폐지되었으며, 최근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모든 법인 금융거래에 1.5%의 세금을 부과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6) 법인 자산세⁹⁴⁾

소득세와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에 소재한 유형·무형자산 액면가액에 대하여 최소 1%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준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조정된 유형·무형 자산가액의 순평균액이다. 국세청이 논란 가운데 자산세를 2002년부터 1.7%로 인상하였다.

(7) 지방자치면허세⁹⁵⁾

지방자치면허세는 베네수엘라 자치도시 영토관할 안에서 상업적·산업적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매년 신고에 의하여 보고된 회사의 총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사업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세율표에 의하여 자치당국에서 정한다.

세율은 0.25~10%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0.5% 또는 그 이하이다. 자치당국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9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9쪽.

9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9쪽.

(8) 천연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그 밖의 조세가 부과된다. 광업운영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품목을 채광하는데 따라서 다양한 조세가 부과된다.⁹⁶⁾ 또한, 2006년 이후 정부는 33.3%의 석유 채굴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도 36%에서 50%(현재)로 인상하였다.⁹⁷⁾

(9) 석유법상 세제⁹⁸⁾

km²당 100 Unit의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 부과 및 초기 5년간 매년 2%가 가산되고, 5년 이후 매년 5% 가산된다. m²당 10%의 적정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Propio)가 부과되며, 판매가격에 대한 총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General)를 30~50% 부과된다. 시체세(Impuesto de Extraccion)는 시추된 석유의 1/3이 과세되며, 수입등록세(Impuesto de Registro de Importacion)는 0.1% 과세된다(석유법 제48조).

3. 자국산업 보호법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발전’ 및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2008. 1. 11.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MILCO)는 베네수엘라 국내생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08년산 외국산 차량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이후 배기량 3,000cc 이상 완제품 차량수입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 투자유치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과 기술도입을 통하여 국내생산을 확대시키려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⁹⁹⁾

9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베네수엘라-, 2007. 12, 39쪽.

97)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15쪽.

98) KOTRA,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 9, 41쪽.

99)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베네수엘라-, 2008. 7, 16쪽.

Ⅲ. 페 루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⁰⁰⁾

① 회사설립 개요

광업회사는 회사 일반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INACC에 등록해야 하며, 국립등기소(SUNARP) 등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INACC에만 등록하는 회사들은 상호에 광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사가 광업 이외의 분야에도 종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립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광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의 지사는 회사 일반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로는 첫째, 국세청에서 발급 받는 사업자등록증(RUC)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재고조사·결산 장부, 일지, 원장, 임금대장, 회의록, 현금출납부, 매입장부, 매출장부 등 주요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스페인어, 국내 화폐로 기장하여야 한다. 셋째,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표 4-5> 페루의 법인설립 방식

종 류	개인형태	기업체형태		
방 법	개인회사 (E.I.R.L.)	유한책임회사 (S.R.L.)	주식회사 (S.A.C.)	주식회사 (S.A.)
특 징	법인의 형태를	2~20명으로 구성	2~20명의 주주로 구성.	2명 이상으로 최고의 수의

100)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34~38쪽.

종 류	개인형태	기업체형태		
	취하지만 한 사람 으로 구성함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제한 없음
자본금	현금, 부동산	자본금은 참여금으로 표시하며 최소한 25%를 불입해야 함	자본금 불입은 국내외 화폐 또는 무형의 기술제공 등으로 할 수 있음	자본금 불입은 국내외 화폐 또는 무형의 기술제공 등으로 할 수 있음
존속기간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한정 또는 무한정

*자료 : Proinversion

② 법인설립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동시설립 방법과 순차설립 방법이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증인을 통해 설립하여야 하며, 설립자는 필요한 서류와 인적 사항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설립의 경우 자본금은 페루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자들은 페루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 초고에 서명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공증인은 이를 토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여 등기를 한다.

순차설립(모집설립)의 경우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서명공증을 받아 지역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고 모집에 응할 신청인 모집공고를 낸다.

③ 지사설립 절차

지사는 본사와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영구적인 법적 대표권이 있으며 본사가 지정한 활동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외국에서 지사를 설립해도 본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사의 유효한 증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에 해당하는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본사의 해당 조직에서 지사설립에 동의했다는 서류로서 i) 지사 자본금, ii) 지사가 종사할 업종이 본사의 회사 정관에 본사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진술서, iii) 지사주소, iv) 최소 1명이 법적 대표자가 국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표자를 임명하고 그에 따르는 위임장, v) 지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 페루의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요비용으로는 공증의 경우 자본금에 비례하고, 공증서 작성비용이 추가된다. 등기비용은 자본금의 3/1000이며, 기타 이사 임명 등록·변호사와 공증인의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2) 공법적 규제¹⁰¹⁾

① 광산개발상의 규제

(i) 광업진흥법에 따른 의무

광산개발에 종사하려는 회사는 법인등록서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명시한 광산운영권 신청서를,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서약서와 첫 해의 유효세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1) 상세한 내용은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38~49쪽.

(ii) 주거지역·국경지대 투자제한 등

도심 지역에 양여를 신청할 때 양여지역이 주거지역과 전면 일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일치하면 신청면적을 줄이거나 여러 개로 나누도록 하는데, 최소 면적인 10 헥타르 미만을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경에서 50km 이내 지역에서는 양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이 의결서를 발행하여 허가한다.

(iii) 로열티

로열티에는 광산로열티와 광산개발로열티가 있다.

광산로열티는 광산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금속·비금속 광물을 추출하는 대가로 국가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며,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가치 있는 광물을 농축시킨 후에 이를 변형시키는 회사는 최종 생산품 가격 또는 공정한 시장 가격에서 변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로열티를 산출한다.

광산개발로열티는 국가가 자연자원의 추출로 광산업체로부터 징수한 것을 지방정부에게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소득세 징수액의 50%를 지하자원 추출지역의 각 계층의 지방정부에게 배분한다.

② 환경적 규제

광산운영권 소유자를 포함한 금속광물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에서 광물의 탐사와 추출과정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주위 환경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의 법적 허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광산운영권이나 광물처리권 신청자 또는 확장신청자는 에너지광업부의 광업환경총국에 프로젝트가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서(EIA)를 제출하여야 한다.

EIA에 부가하여 시설·처리·계획·실행 등에 필요한 변화를 자세히 설명한 환경운영프로그램(Programa de Adecuación y Manejo Ambiental; PAMA)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AMA에는 결함과 충격의 확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프로젝트를 현행 또는 장래의 법의 요건에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며 환경심사관이 행한 특별실험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광하려는 경우에는 회복방법, 비용 등을 명시한 폐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산업자는 EIA와 PAMA가 승인된 날부터 1년 안에 폐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유인 법제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 제662호; 1991.08)

외국인 투자개발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② 민간투자 증진에 대한 기본법 (법령 제757호), 민간투자보장체제 규정 및 수정규정(Decreto Supremo 1612-92-EF)

외국인 투자의 처우에 대한 일반적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③ 내국민 대우의 원칙

위의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고, 증권거래소나 다른 기구를 통한 국내투자자의 지분인수도 완전히 허용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외 지역의 광산이나 삼림, 물, 연료, 에너지를 외국인에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령의 공포 및 내각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2. 세 법

(1) 조세체계

소득세와 임시 총자산세(Impuesto Temporal a los Activos Netos; ITAN), 금융거래세(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ITF), 부가가치세(Impuesto General a las Ventas; IGV) 등이 주요 세금이다.

(2) 소득세¹⁰²⁾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연인의 국적, 회사 설립·생산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발생한다.

회사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각 회계연도를 마감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도 납부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를 마감할 때 발생한 총 소득의 30%가 부과된다. 산출한 소득세는 다음 회계연도 첫 3개월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한다. 경비로 처리한 금액의 4.1%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는 세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임시 총자산세¹⁰³⁾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었던 임시적 성질의 세금이다. 이는 전년 12월 31일까지의 총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며, 3종 소득세 납세자 중 일반소득세 과세대상자로서 현 과세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페루에 적을 두지 않은 회사의 지사·대리점·그 밖의 고정 연락사무소에도 적용한다.

세율은 S/.1,000,000.00까지는 0.0%, S/.1,000,000.00 이상은 0.5%이다.

10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59쪽.

10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59쪽.

(4) 금융거래세¹⁰⁴⁾

금융기관에 국내의 화폐로 입출금을 하는 금액에 대하여 0.08%가 부과되며, 시행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연장가능성이 있다. 이 세금 납부액은 소득세 공제대상이 된다.

(5) 부가가치세 환급¹⁰⁵⁾

정부는 국가와 탐사투자계약을 맺고 탐사활동을 하는 광업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DL No. 963, 시행기간 2009년 12월 31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국내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매입과 수입·서비스 제공과 이용·건축계약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IGV) 17%와 지역개발세(IPM) 2%를 매입장부에 기장한 날짜의 다음달부터 매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0년 간의 조세안정성 계약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42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15년 간의 투자촉진보장장려 계약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42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탐사투자프로그램 승인은 광업국(D.G.M.)에 신청한 때로부터 동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최소한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국세청(SUNAT)에 등록할 때까지 최소한 180일 이상 경과 후 승인한다.

10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60쪽.

10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페루-, 2007. 12, 60쪽.

IV. 칠 레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⁰⁶⁾

① 법인설립 절차

투자준비	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지역 선정, 정관작성 등
설립신청	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등기/공시	등기소에 기업설립 등기 관보에 설립공시 (정관서명 후 60일 이내)
납 세	국세청(Sii)에서 납세번호(RUT) 취득
영업허가	관할구청에서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 취득

(i) 법인설립 신청

칠레법인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와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Ltda)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칠레는 법정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본금을 정하고 회사 정관 및 기업설립 서류를 상업등기소에

10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12, 32~35쪽.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에는 발기인 인적사항, 회사명 및 주소,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회계연도,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 방법, 청산방법, 중재방법, 주요임원 및 감사 명단 등이 포함된다(다만, 유한·주식회사에 따라 주식관련 내용 등은 일부 상이하다).

(ii) 법인설립登記 및 관보 게재

회사 정관과 법인설립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등기소(www.conservador.cl)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다. 3~7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비용은 5,500페소+자본금의 0.2%이다(최대 300,000페소).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보(Diario Oficial)에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관보게재 비용은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게재까지 3~10일 정도 소요된다.

(iii) 납세번호 취득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www.sii.cl)에 납세번호(R.U.T.) 발급을 신청한다.¹⁰⁷⁾ 세무서에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납세번호를 발급한다.

(iv) 영업허가증 취득

납세번호를 획득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한다.¹⁰⁸⁾ 구청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상이하므로 법인설립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107) 제출서류는 대표자의 칠레 주민등록증(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공증서류), 회사설립 관련서류 일체(공증본), 관보 게재내역 사본, 상업등기 서류 사본, 세무서에 비치된 F-4115 서식이다.

108) 기본제출서류는 대납세번호증(R.U.T.), 회사설립 관련서류 일체(공증본), 회사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관련 관청의 허가서 등이다.

② 지사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에서 사전에 본사의 법인정관, 위임장, 임명장을 주한 칠레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와야 한다. 준비서류를 칠레 외무부에 제출하여 인증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공증한다. 주재원의 개인 주소지 및 사무실 주소가 확정되면, 2분의 공증서류를 세무서와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납세번호(R.U.T.)와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을 발급받으면 된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칠레는 행정처리 속도가 느려 거주지 확정, 신분증 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특히, 모든 서류들이 스페인어로 작성되므로 현지 사정과 기업설립 절차에 능숙한 전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법적 규제¹⁰⁹⁾

① 탐사·개발상의 규제

모든 지하자원은 국가 소유이므로 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광업권은 정해진 신청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지만, 가스·석유의 개발은 국영석유공사인 ENAP에서 전담한다. 민간기업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ENAP와 특별운영계약(CEOP)을 맺고 탐사·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칠레정부가 채취된 자원의 선취매입권을 가진다(국제시세 적용).

또한, 토륨·우라늄 등 원자력 관련 광물자원도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위원회와 계약을 통해서만 채취와 판매가 가능하다.

109)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35~37쪽.

국경지대·군사지역 등 국가보안상 중요한 지역의 광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며, 국가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는 광업권이 허가되지 않는다.

② 환경적 규제

광업이 발달한 칠레 북부지역은 사막지형으로 수자원이 부족하고 기후가 건조하고 서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 오염도가 높다. 따라서 환경 관련법규는 대기오염 관련법규와 수질관리 규정이 주요골자를 이룬다.

칠레 환경법(D. L. 19300)은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개인·법인)이 그 복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업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동법에서 규정한 프로젝트는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와의 접경지대에서 Pascua Lama 금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캐나다의 Barrick Gold 사는 당초 3개월의 빙하를 절단하여 광물을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및 정치권의 반론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였으며 환경청으로부터 빙하를 절단·이동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받아 추가 개발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칠레 정부의 입장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칠레 정부는 법령으로 아황산가스 배출 기준·대기 중 미세먼지 관련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주의·벌금부과(최대 1,000 UTM)·영업정지 또는 폐업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 수출절차상의 규제

칠레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국가로 수출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와 그 부산물의 수출에 대하여는 구리위원회 Cochilco

에 계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Cochilco를 통하여 구리 수출이 국제시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는 선적 전에 Cochilco에 판매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적 시 세관에서 받은 수출제품 내역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칠레에서 수출되는 구리의 원산지 증명은 유럽지역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그 밖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Cochilco가 관장한다.

(3) 투자유인 법제

① 원 칙¹¹⁰⁾

칠레는 기본적으로 내·외국기업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자원개발에 대하여도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외에 지역별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산업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외국인투자법(D.L. 600)¹¹¹⁾

(i) 취 지

D. L. 600(Decreto Ley 600)은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실현된 FDI의 84%가 D. L. 600을 통하여 유입되었다.

110)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38쪽.

111)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31~32쪽;

www.cinver.cl/english/regulaciones/estatutos_antecedentes.asp

(ii) 장 점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나, D. L. 600을 통해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투자·투자목적 변경·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iii) 제 한

D. L. 600을 통해 반입된 자금은 도입 후 1년 동안은 반출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D. L. 600을 통해 투자자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U.S. 500만 달러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투자규모·투자자본형태·투자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하여야 한다. 사전 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iv) 고정세율 선택권

D. L. 600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no tax change)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7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세율 대신 10년 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중앙은행외국환관리규정(제14장)

칠레 현지화(페소) 형태의 투자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부분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④ 영업이익에 대한 특별세(Royalty II법)

칠레정부는 2006.01.01. 이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정광 기준 5만 톤 이상 구리생산업체에는 영업이익의 5%, 1만 2천 톤~5만 톤 생산업체에는 0.5~4.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매년 4월 납부).

2. 세 법

(1) 조세체계

대표적으로 제1종 소득세(first category tax)로서 법인세가 있고, 추가세(additional tax)와 로열티(royalty)가 있다.

(2) 법인세¹¹²⁾

칠레에 소재한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17%이다. 납부시기는 매년 4월이며, 매월 잠정세금(Provisional Monthly Payments)을 내다가 4월에 정산하여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거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추가세¹¹³⁾

칠레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자연인·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며, 세율은 기본 35%(사안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이다. 해외배당소득·과실송금에 대하여 35%,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종

11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42쪽.

11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42쪽.

법인소득세 17%가 세액공제된다. 해외상표·특허 이용에는 30%, 도서 저작권에는 20%, 해외이자 상환에는 35% 등이 부과된다.

(4) 로열티¹¹⁴⁾

칠레 정부는 2006년부터 ‘로열티’라는 일종의 광업세를 신설하였다. 로열티는 광물자원이 칠레 모든 국민의 소유임을 전제로 재상이 불가능한 광물자원 채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로열티로 거둬들인 세금은 기술혁신, R&D, 인력양성 등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12월 이전에 D. L. 600 조항에 의하여 투자하면서 제7항의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선택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율은 구리 판매량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과세대상은 연간 구리판매량 12,000TMF 초과 광산업체이다. 표준구리가격은 런던금속시장에서 거래된 구리(Grade A) 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V. 아르헨티나

1. 투자법제 개관

(1) 법인·지사 설립¹¹⁵⁾

① 회사설립 개요

아르헨티나의 기업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de los Sociedades Comerciales)이다(법률 제19550호). 기업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합자회사(Sociedad de Coman dita; S.C.),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11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칠레-, 2007. 12, 36쪽, 43쪽.

11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0~38쪽.

외국기업 투자 시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3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 형태이다. 설립절차 면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쉽고 주주간 의견조율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쉽다.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인척, 친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는 형태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의무도 없으며, 내국기업에 대하여 100% 주식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합작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관리부서는 ① 상장회사의 경우 아르헨티나 증권거래소(Comision Nacional de Valores), ② 비상장회사(개인소유 주식회사)의 경우 아르헨티나 법무 및 인권부 산하 법인청(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 ③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등이 있다.

<표 4-6>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최 소 자본금	- 12,000 페소 (약 4천 달러)	- 없 음
설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을 아르헨티나 법인청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정관 기재사항 주주 인적사항, 회사명, 주소, 목적, 자본금, 주주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간 계약, 출자조항, 관리 책임, 출자자 변경 등을 기재한 약관 필요 - 절차가 간단하나, 변경시 출자 사원의 다수동의(또는 만장일치) 필요 - 자본금 210만 페소(약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하여 설립기간이 짧고 정부규제가 약함
주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인, 유한책임 - 국적·거주지 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인~ 최대 50인 - 국적·거주지 불문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 법인 또는 개인이 가능하나 주주다수는 아르헨티나 거주	- 외국회사 또는 개인이 가능하나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이 사	-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 - 수 제한 없고, 1명도 가능(상 장된 경우 3인 이상)	-

② 법인설립 절차

기업명 중복확인 등 투자를 준비하여 법인 등록후 세무서에 등록함

투자준비	- 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지역 선정 등
기업명 중복확인	- 아르헨티나 법인청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업명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명을 예약
법인설립 신청	- ‘법인설립 및 수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법인청에 제출(최초회의록 원본, 공증사본, 설립수수료영수증 등)
공증	- 주주(동업자) 서명 · 공증
법인등록 및 공포	- IGJ내 상업등기소에 기업등록 · 관보(Boletín Oficial)공포
특별장부 구입	- journal book, inventory book은 법정 의무
CUIT 취득	- 법인 등록 후 국세청(AFIP)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CUIT) 신청 · 취득

관할세무서 등록

- 제3자가 등록절차를 대행할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이사·주주 또는 법정대표자의 서명이 부기되어야 함
-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신분증, CUIT, 정관/사회계약서, 상업주소지 증명서, 회계주소지 원본 및 사본 1부

고용주세번호취득

- 국세청(AFIP)에서 고용주세 번호 취득

외국인 투자등록

- 경제생산부에 외국인 투자등록(의무사항 아님)

③ 지사설립 절차

(i) 한국 내 절차

i) 모회사의 등기부등본·이사회결의록·정관·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모회사 재무건전성 입증자료를, ii)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iii) 외교통상부의 영사 확인, iv)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친다.

(ii) 아르헨티나 내 절차

i)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확인 후, ii) 공식번역사를 통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공증하고, iii) 아르헨티나 법인청(IGJ)에서 지사설립 신청서류를 제출(설립승인에 3~6개월 소요)하며, iv)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 등록 및 납세번호(CUIT)를 취득한다.

(iii) 그 밖의 절차로서 은행에서 본사 명의로 미화 및 현지화 당좌계좌(Cuenta Corriente)를 개설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영업할 때

통상 1,000 페소 이상의 비용은 수표발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사설립 등기 및 납세번호(CUIT) 취득 후 한국에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영사면담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지사 대표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입국허가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표가 아닌 주재원은 ‘입국허가서’를 사전에 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법적 규제¹¹⁶⁾

① 탐사·개발의 규제

모든 광물자원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탐사 및 개발 전에 주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광업법상 공익성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13조 및 제17조).¹¹⁷⁾

환경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광물자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광물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대책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39~42쪽.

117) 탐사·채굴·계약 등 모든 행위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은 계약과 관련하여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성은 광물탐사와 직접 관련된 관 계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형성한다(제13조). La explotación de las minas, su exploración, concesión y demás actos consiguientes, revisten el carácter de utilidad pública. La utilidad pública se supone en todo lo relativo al espacio comprendido dentro del perímetro de la concesión. La utilidad pública se establece fuera de ese perímetro, probando ante la autoridad minera la utilidad inmediata que resulta a la explotación(Artículo 13); 광물개발은 중단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안전을 위한 피난의 경우와 광업권·근로자의 건강 또는 신변보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Los trabajos de las minas no pueden ser impedidos ni suspendidos, sino cuando asilo exija la seguridad pública, la conservación de las pertenencias y la salud o existencia de los trabajadores(Artículo 17).

② 수출·판매 부과금·로열티 등 세제상 규제

로열티는 “원천”지에서 채광한 광물의 양을 기초로 하며, 경우에 따라 광물 상품화의 최초 장소 및 상태를 기초로 개별 광산별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광물개발에 따른 로열티는 일괄적으로 3%이다 (광업투자법 22조).

광업기업단체는 광산업 개발 촉진을 위하여 현재 10%인 수출세를 5%로 인하여 줄 것을 2007년 9월 정부에 요구하였다.

③ 환경적 규제

「광산업에 대한 환경보호법」(법률 제24585호)에 따라 환경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광산개발업체는 광물채취로 인한 환경훼손(물적·인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속광물에 대한 노천채굴(Cielo abierto)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광물 선별과정에서 시안화물·수은·유황산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광산개발업체는 관할당국에 환경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매 2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당국은 광산개발 단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승인한다. 관계당국은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보호대책을 미이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은 경고·벌금·영업정지·복원명령·허가취소·자격취소 등으로 구분된다.

(3) 투자유인 법제

① 국가개혁법

아르헨티나는 1989년 8월 국가개혁법(La Ley de Reforma del Estado; 일명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¹¹⁸⁾

② 외국인투자법

1993년 9월 개정 외국인투자법(법률 제21,382호)은 외국인 투자대상을 특별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등록의무까지 폐지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상으로도 내국 투자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i) 외국인투자의 내국인 대우 보장, ii) 외국인투자의 사전승인 폐지, iii) 투자대상을 방송, 신문 등 특별법에 규정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 iv) 외환취득, 대외지급 및 투자자본 회수, 과실송금의 자유화 등이다.¹¹⁹⁾ 또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과 투자보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금융법과 경쟁법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도 1986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4년 2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1982년 채무위기사 폐쇄하였던 외국은행의 등록재개를 허용하였으며 외국계은행의 지점설치도 완전 자유화하였다(Decree 146). 2001년 3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하여 경쟁법(법률 제25,15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아르헨티나 기업 인수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였다(Decree 304).¹²⁰⁾

118)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8쪽.

119)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9쪽.

120)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8~39쪽.

④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1977년 제정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 산업진흥법(Industrial Promotion Law), 1989년 9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긴급경제조치법(La Ley de Emergencia Economica), San Juan 주 · San Luis주 등 북부 4개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한 법령 1033/91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¹²¹⁾

⑤ 광산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아르헨티나는 광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일련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¹²²⁾

- 탐사비용 이중감면 : 비용인정 및 과세소득 공제
- 탐사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 12개월 후 환급
- 광업권 보장 : 타당성 조사 후 30년간 보호, 사후 변경세금 미적용
- 가중감가상각 : 자본재에 대한 조기 감가상각 허용
- 관세감세 :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등 제세금 면제
- 자본형성 잉여금 미과세 : 증자를 위한 이익잉여금은 면세
- 광업권 자본설정 : 광업권 가치의 50%까지 자본설정 가능
- 자산세 면제 : 광산개발과 직접 관련된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 주정부세 면제 : 인지세 등 주정부세 감면 추진
- 로열티 감축 : 일부 7% 징구중인 로열티를 일괄 3%로 인하 추진
- 수출세 감축 : 현재 10%인 수출세를 5%로 인하 추진
- 금융지원 : 자본재 구입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 외국계 회사의 광업분야 진출 제한이 없고 수출의무 없음

121)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11, 39쪽.

122)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42~43쪽.

2. 세 법

(1) 조세체계¹²³⁾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연방정부), 주세(주정부), 시세(시청)로 구분되며, 납입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관세를 제외한 세금징수 총괄기관은 국세청(AFIP)이며, 직접 징수기관은 관할세무서(Direccion General Impositiva; DGI)이다.

(2) 국 세(國稅)¹²⁴⁾

① 법인세

과세대상은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조합·기금·외국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으로서, 세율은 35.0%이다. 과세소득은 법인이 거주자(resident)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아르헨티나 국적자(귀화 외국인 포함)·영주권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법인·회사·조합·재단 등이 포함된다.

②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모든 개인으로서 세율은 9.0~35.0%(소득에 따라 누진)이다. 과세소득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123)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48쪽.

124)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49~51쪽.

③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

세율은 21.0%(1995년 4월 18%에서 인상)이지만, 통신·가스·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하여 27.0%, 자본재·과일·채소·곡물·육류·신문·잡지·의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의 경우에는 10.5%를 적용한다.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④ 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

2001년 4월 신설된 세금(법률 제25413호, 제25414호)으로서 세율은 0.6%이고, 급여계좌 및 대출(예금)계좌 금융거래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 악법으로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단기간 내 폐지를 어려울 전망이다.

⑤ 재산거래세

세율은 1.5%로서,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니다.

⑥ 추정 최저소득(Impuesto a la ganancia mimima presunta)

세율은 1.0%로서, 관세 특혜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도(Tierra del Fuego)에 위치한 자산, 광업투자에 따른 자산 등 별도로 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⑦ 개인재산세(Impuesto sobre los Bienes Personales)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거주자는 해외재산을 포함하고,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주식의 경

우 거주자는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세율은 0.5%(358,050~700,000 페소)부터 0.75%(700,000 페소 초과)까지이다.

(3) 주 세(州稅)¹²⁵⁾

① 매출세(Impuestos sobre los Ingresos Brutos)

세율은 주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어업·광업) 1.0%, 2차 산업(제조업·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유통) 3.0%가 부과된다.

② 인지세(Impuesto a los Sellos)

세율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0.5~2.5%까지 차등 적용된다.

③ 부동산세(Impuesto Inmobiliario)

주 정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4) 그 밖의 세금¹²⁶⁾

그 밖의 세금으로서, i)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5.0~35.0%, ii) 수출세는 수출품목에 따라 5.0~25%, iii) 추가부가세는 10%(수입통관 시 부과되며 추후 국세납부에 크레디트로 사용할 수 있다), iv) 내국세는 주류·담배·일부 전자제품에 부과된다(수입품의 경우 내국세율이 20%일 경우 CIF 가격의 39~40% 부과효과).

125)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1쪽.

126)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1쪽.

(5) 광업관련 세금¹²⁷⁾

① 수출세

세율은 10%로서, 광업단체의 요구에 따라 5%로 인하를 추진 중이다.

② 로열티

법률로 3%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③ 광업세

i) 광업권유지비(Pertenencia)는 연 80페소, ii) 시굴허가비(Permisos de cateos)는 단위당 400페소, iii) 갱도허가비(Socavones)는 연 40페소, iv) 탐사허가비(Exploración)는 연 100s/m당 200페소, v) 항공시찰비(aeronaves)는 1s/Km당 1페소이다.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I. 카자흐스탄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1. 수용이론(incorporation doctrine)의 적용

2003 투자법은 국제법을 카자흐스탄 국내법의 일부로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형식, 즉 수용이론(incorporation doctrine)¹²⁸⁾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 조항으로서, 제2조 항은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계약이

127)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아르헨티나-, 2007. 12, 52쪽.

128) 국제법을 국내법 질서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 내지 받아들이는 방법을 결정하고 국내법 질서 내에서 국제법의 위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헌법적 결단에 맡겨져 있다. 주로 국제법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법이 의회의 입법, 사법부의 판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서 채택이 되어야만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전자와 같은 방식을 受容理論(doctrine of incorporation or adoption)이라 하고, 후자를 變形理論(theory of transformation)이라 한다.

현행법과 다른 규칙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국제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¹²⁹⁾고 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구속하는 국제법률은 이에 반대되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이다.¹³⁰⁾ 이러한 제도(즉 incorporation doctrine)가 조약에 관해 적용할 때에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2003년 투자법의 내용이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양자이중과세협정(bilateral double taxation agreements), 관련 다자간 협정(relevant multilateral treaties), 그리고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성립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새로운 법에서 형성된 투자자 보호는 국제관습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국내투자보호(inward investment guarantees)는 어떠한 형태로의 해로운 국가행위(adverse State action)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고자 국내입법(domestic legislation)이 도입한 수단이며 투자를 늘리고 증진시키는 수단이다. 이는 정부와 그 집권화된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한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투자자 보호는 외국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외국 민간투자자들을 위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보호의 내용, 기술, 그리고 절차적 측면들은 국내법(domestic law)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외국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자투자 및 이중과세회피협정(bilateral investment and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에서 발생한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재산의 수용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의 영역내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사법 또는 중재 재판(judicial or arbitral forum)에 있어서 수용행위에 관한

129) If an international agreement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azakhstan sets other rules different from those contained in the present Law, rule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shall be applied.

130) 국제법에 관하여 수용이론(doctrine of incorporation)을 적용하는 것이 CIS의 관행이다.

국가와 외국인간단체(foreign private entity)간의 분쟁문제는 국내법에 입각한 행동의 적법성(legality) 여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법과 국제법간의 외국투자법에 있어서 이러한 복잡성은 이하에서 검토될 것이다.

2. 투자보장조항의 약화

2003년 법은 이전 법률이 규정한 보장조항을 몇 가지 삭제한데 대해 비판을 받았다. 2003 투자법 4조 2항은 “투자가는 카자흐스탄 법에 적법하지 않은 규정을 정부기관이 제정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라 정부 기관 대표가 행한 위법적 작위(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¹³¹⁾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러한 행동이 카자흐스탄법률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조건과 절차들이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라 유효하게 결정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행위가 부적법한지 여부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국제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일 다른 결론이 난다면, 국가책임에 관한 2001년 ILC 조항(2001 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비록 이것은 조약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ILC 조항 제3조는 “국제적 부당행위로서의 국가행위의 성격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the characteris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131) Investor shall enjoy the right for compensating damage resulted from acts issued by state bodies which do not comply with legislative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s well as from illegal action(inaction) of officials of these bodies in compliance with the Civil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icle 4 (2)).

internationally wrongfu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자흐스탄법에 반하나 국제법에는 반하지 않는 국가기관(State agents)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카자흐스탄의 절차법 및 실체법에 따라 규율된다.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혹은 계약의무의 위반은 그러한 행위가 수용(expropriation)의 형태로 간주될 경우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이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따라서 규율된다.¹³²⁾

따라서 외국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분쟁해결조항(appropriate dispute settlement clauses)을 주최국 정부(host government)와의 계약에, 일체의 분쟁은 중립적 중재(neutral arbitrators)에 의해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교적 보호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4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정부기관과 투자자간에 체결된 모든 투자계약조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 과세대상상품(excisable goods)의 수입, 생산, 또는 판매의 절차나 조건을 변경시키는 관련법률 또는 국제조약이 개정된 경우; 또는
-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는 환경, 보건, 또는 도덕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진 경우¹³³⁾

132) 국제법이 실체적 내용을 정하고, 국내법이 보상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Ilias Bantekas, *The 2003 Investment Law-Its Impact and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I. Banatekas, J. Patert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pp .174-175

133) Article 4 (3) :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guarantee stability of terms of contracts concluded between investors and state bod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cept the cases when contracts are amended upon agreement of parties. These guarantees shall not cover: 1) amendments in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or coming into effect and/or amend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hich modify the procedure and terms of import, production, sale of excisable goods; 2) amendments introduced to legislative acts of the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보상(indemnification)을 제공하지 않는다. 2003년 법이 채택된 직후, 카자흐스탄에서 US Embassy가 발행한 Response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제외(예외)는 천연오일과 가스 응축물을 포함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기타 카자흐스탄 법률에 있는 투자자 보호는 그것이 2003년 법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1999년 Sub-Surface Law가 천연오일과 가스 응축물에 대한 안정성 보장(stability protec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에게 이로울 수 있었고, 따라서 투자법(the Law on Investment)상의 과세대상상품에 대한 보장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3년 법은, 이전 법률제도와는 달리,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안정조항에 대한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분명, 전체적으로 제4조의 목적은 오직 작위 또는 부작위(an act or omission)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만일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의 관련 규범을 위반하였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2003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도는 1997년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지원법에 따라 존재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1997년 정부지원법은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기타 다른 조치들을 자본유입국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한 ‘안정조항(stabilization clauses)’을 마련하고 있었다.¹³⁴⁾ 2003년 법 제4조3항의 적용이 그 소급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국제법 위반을 수반하여 새로운 투자에 적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증진한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¹³⁵⁾

Republic of Kazakhstan to ensure national and ecological security, public health and morality.

134) T. Walde and G. Ndi, *Stabilis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 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31 *Texas Int'l L.J.* (1996), p. 31.

135) Illias Bantekas, *The 2003 Investment Law-Its Impact and Compatibility with*

어떠한 경우이든,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외국회사는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같은 다양한 정치적 위험보험제공자(political risk insurance providers)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같은 국립보험원(national insurance institutes)으로부터의 일체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은 유쾌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금융이 불안정(politico-financial instability)한 국가라고 추정되는 국가에, 또는 국가의 법이 현재 카자흐스탄의 경우처럼 국가에 의한 일방적 변경대상이어서 투자기업들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에 투자하려고 그러한 보험을 요구하는 투자자는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투자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MIGA에 보험을 가입한 투자자는,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계약이 위반되거나 재산이 수용된 투자자는 MIGA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MIGA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재하거나, 투자자의 권리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그것을 현재 및 장래 고객들 모두에게 이 국가의 투자 환경은 매우 불리하므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위반 정부(offending government)에게 분명히 알릴 것이다.

II. 수용(expropriation)의 문제

수용의 문제는 2003년 법에서 중요하다. 수용권(right of expropriation)이 주권주의(principle of sovereignty)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I. Banatekas, J. Patertson and M. Suleimenov (eds.); Oil and Gas Law in Kazakhst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2003 Kluewer Law International) p .175.

정한 한계가 있다. 합법 및 불법적 수용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시에 방어목적으로의 수용 같은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한 수용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재산의 특정 아이템의 수용 또는 주요 산업이나 자원의 수용은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한 불법이다.¹³⁶⁾ 따라서 만일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면, 비로소 위에서 언급한 수용은 합법적이게 된다. 동일한 원칙이 간접적 수용(indirect expropriations), 즉 외관상 국가행위(disguised State action)와 관련하여 적용되는데, 주로 직접 수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차별적 입법(discriminatory legisl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자 재산에 대한 국유화는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되고, 다음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사용정지(국유화, 몰수 등) 시킬 수 있다.
- 재산을 국유화할 경우,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국유화법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100% 보상해준다.
- 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했을 경우, 현 시세에 따라 재산 가치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현 시세에 따른 재산 가치 계산 작업은 카자흐스탄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 소유자에게 상환된 몰수 재산가치의 평가결과는 법정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몰수와 관련된 상황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었을 시, 투자자는 재산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때 보상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재산의 가치절하된 부분을 계산한 후).¹³⁷⁾

136)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8), pp. 540-541.

137) Article 8. Guarantees of Investors' Rights in Nationalization and Requisition

1. Forced seizure of investor's property (nationalization, requisition) for public needs shall take place only in exceptional cases as provided by legislative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이 경우, 투자자는 국유화된 재산의 시가(market value)에서의 모든 손실들에 대하여 완전히 보상받는다. 이때의 시가는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평가될 것이나, 그 평가는 “법원(in court)”에서 반박될 수 있다. 수용시 그 보상은 충분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에서 널리 인정되어 있다. 신속성의 결여(Lack of promptness)와 지급의 유예(deferred payments)는 보상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¹³⁸⁾ 지급의 양, 방법, 시기는 수용의 시기에 카자흐스탄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이다. 수용의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서명한 대부분 조약에서, 또는 양자투자조약에서 고려된다는 것은 주지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양자투자조약(Kazakh-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Article III에서 투자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해 수용되거나 국유화되지 않는다: 공익적 목적, 비차별적 방식으로,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금의 지급에 의거하여, 그리고 Article II:2에서 규정된 적법절차와 처우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
2. At nationalization all losses of investor caused by issuance of legislative act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nationalization shall be compensated in full volume by the Republic of Kazakhstan.
 3. At requisition investor shall be paid a market value for the property. Market value for th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in the procedure set by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 The value for compensation to the owner for the seized property can be disputed in the court.
 5. With termination of circumstances which caused requisition investor shall enjoy the right to demand restitution of the remained property but shall be obliged to repay the received sum of compensation with account of losses from reduced property value.
- 138)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8), p.546.

Ⅲ. 투자특혜제도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투자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우선분야¹³⁹⁾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현물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감면 등 제반 투자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담당기관인 무역산업부내 투자위원회(Committee of Invest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가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1. 투자특혜의 유형

정부가 부여하는 투자특혜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투자세제특권(investment tax privileges)
- 관세의무의 면제(exemption from customs duty)
- 국가의 현물원조(state grants in kind)¹⁴⁰⁾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제 특혜기간은 최장 5년이며, 특혜의 발효일은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계약서상에 명시된다.

139)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투자우선부문은 카자흐스탄 정부 Resolution No. 436 (2003. 5. 8.)에 수록된 것으로 농업활동, 식품, 의복, 종이, 섬유, 비금속광물, 기계 및 설비의 생산, 화학제품 생산, 건설, 수송, 숙박 및 요식 등의 서비스업 등이다.

140) Article 13. Types of Investment Preferences

In compliance with the present Law the following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by means of concluding contracts with authorized body:

- 1) Investment tax incentives;
- 2)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 3) public in-kind grants.

법인세 혜택기간은 약10년이고, 관세면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제공절차

투자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특혜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자 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적인 활동목록범위에 속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각의 우선적인 활동에 대해 확인하고 공인 기관에 투자특혜를 제공할 때 투자 최고규모와 투자세 특혜 적용 기간 등을 규정한다;
- 국가가 정한 투자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투자세 특혜 적용기간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 투자 특혜는 투자가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제공된다.¹⁴¹⁾

투자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해 제공되며, 각 우선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41) Article 14. Procedure for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1.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for priority activities the list of which is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level of classifier of sub-types of activit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approve maximum amounts of investments for each priority activity and time period for investment tax incentives when investment preferences are to be granted by the authorized body.

3. If the set maximum investments amount exceeds, periods of validity of the applied investment tax incentives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an appropriat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by means of concluding contracts with the investor.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특혜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간의 투자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확정하며 제공한다.

3. 제공조건

투자특혜 제공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우선적 투자활동목록의 범위에 속하고;
- 새로운 투자유치 및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현 생산 확대 및 재개를 위해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시; 그리고
-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잠재력(재정적, 기술적, 조직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시(제19조에서 규정)¹⁴²⁾

4. 구비서류

투자특혜 공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 공증 받은 국가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 공증 받은 통계 카드(statistic card) 사본
- 공증 받은 법인 정관 사본
- 공인기관이 규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42) Article 15. Terms of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under the following terms:

- 1)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investment activity with the list of priority activities;
- 2) investments to fixed assets of legal entit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create new, extend and modernize the existing productions applying advanced technologies;
- 3) presentation of the necessary documentation stated in Article 19 of the present Law which proves that investor avails financi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 투자 프로젝트 시행 시 사용되는 고정자산 획득에 필요한 비용 및 건설-수리 견적비용 관련 서류
-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 보장 및 자금공급 주체를 확인하는 서류
- 투자자가 요구하는 국가 현물그랜트의 규모(가격)를 확인하는 서류와 국가 현물그랜트를 제공하겠다는 예비 동의서¹⁴³⁾

5. 심사기간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투자특혜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된다.¹⁴⁴⁾ 특혜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6. 투자특혜 유형별 내용

(1) 투자세 특혜(investment tax privileges)

2003년 법 제16조는 투자세 특혜(investment tax privileges)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프

143) Article 19. Requirements to Application for Investment Preferences

Applications for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accepted and registered by the authorized body if these documents are available:

- 1) copy of the certificate on public registration of a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 2) copy of statistics card of the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 3) copy of the charter of the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 4) business-plan of the investment project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determined by the authorized body;
- 5) documents justifying construction budget and costs for purchase of fixed assets used in investment project implementation;
- 6) documents determining sources and guarantees for financing the project;
- 7) documents proving the amount (value) of the public in-kind grant requested by investor and advanced agreement of granting it.

144) Article 20

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개발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¹⁴⁵⁾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세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한다. 특혜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Kazakh Tax Code)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결정될 것이다.¹⁴⁶⁾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세제특혜는 고정자산에의 투자규모를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공여되나, 5년을 넘지 않는다.¹⁴⁷⁾

신 세법(New Tax Code)이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종전에 비해 투자세 특혜가 감소되었다. 신 세법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유형의 투자세 특혜만 규정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우선부문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건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현지법인의 권리가 그것이다.¹⁴⁸⁾ 또한 법인세 특혜는 제조 작업이 이행될 때 기계 및 설비 등의 공장건축에 사용한 초기비용을 3년 이내에 혹은 한 번에, 동일비율(equal ratio)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145)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not be granted to activity of the legal entity to which special tax procedures are applied, as well as activity by contracts for bowels use (Article 16 (3));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not be granted in relation to fixed assets given to a legal ent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s public in-kind grant (Article 16 (4)).

146)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pplying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be determin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icle 16 (2)).

147) Investment tax incentives shall be granted for the period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vestments to fixed assets but less than five years (2003년 투자법 제 16조 1항). 법인세의 경우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되었다.

148) Article 123 of the New Tax Code

다.¹⁴⁹⁾ 신 세법은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100% 면세를 정한 조세특혜를 정하고 있지 않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세 특혜가 여전히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만기일까지 투자세 특혜는 유효하다.

또한 법인세 비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는 20%,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는 17.5%, 2011년 1월 1일부터는 15%의 비율로 과세된다.¹⁵⁰⁾

따라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카자흐스탄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대 3년 동안 공제권(right of deduction) 을 가지며, 법인소득세 비율(20% in 2009; 17.5% in 2010; and 15% in 2011)로 납세하게 된다.

(2) 관세감면(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다음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 카자흐스탄에서 비슷한 종류의 설비 및 부품이 없는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및 부품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부족할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 및 부품이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과 맞지 않을 경우¹⁵¹⁾

149) Article 125 of the New Tax Code

150) Article 147 of the New Tax Code; Article 4 of Law of the RK “About entering into force the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bout taxes and other obligatory payments in the budget.’”

151) Article 17.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1.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can be granted for import of equipment and its components brought for implement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in the following cases:
 - 1) absence of production of similar equipment and its component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2) insufficient production of similar equipment and its components in the territory of

관세면제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¹⁵²⁾ 관세면제 및 그 기간연장에 관한 결정은 소관 정부기관이 내리며, 결정내용을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3) 국가 현물그랜트(State Grants in Kind)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 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특혜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을 공여한다. 요청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¹⁵³⁾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토지 구역, 빌딩, 건축물, 기계 및 설비, 컴퓨터기기, 조정 장치 및 설비, 교통수단(경자동차 운송기는 제외), 생산 용품 및 가정용품 등이 있다.¹⁵⁴⁾

국가 현물공여는 카자흐스탄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국가 현물공여의 최대규모는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그 법인은 그것의 평가가치와 국가현물 공여의 최대가치의 차액(초과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¹⁵⁵⁾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implement activity in compliance with the investment project;

3) incompliance of similar equipment and its component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ith requirements of this project

152)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one year with probable extension but not more than up to five years since contract registration (Article 17 (2)).

153) Article 18 (1)

154) Article 18 (2)

155) Article 18 (3) and (4)

7. 투자권의 보장 및 양도

투자자의 권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투자법,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한 국제조약 등에 근거하여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양도받은 제3자의 투자권리는 투자여부, 계약상의 특정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계약조건이 계약자 쌍방의 합의로 바뀌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조건이 유효성이 보장된다.

- 소비세 대상 품목의 수입, 생산, 판매의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는 법규 수정
- 환경, 국민보건, 도덕적 문제를 보장하려는 목적의 법규 수정

정부에 의해 카자흐스탄 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제정되거나,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 혹은 태만에 의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투자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계약의 체결과 파기

특혜 소관기관은 투자 특혜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견본계약서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체결할 준비를 한다. 계약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관기관이 등록하고,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¹⁵⁶⁾

투자 특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법 제22조는 계약의 정당한 만료일 이전에 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혹은 소관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소관기관의 일방적 통보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56) Article 21

- 투자 특혜 제공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닉하였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투자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 소관기관은 계약 파기에 대한 서면상의 통보를 하고, 3개월을 기다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투자특혜계약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및 관세,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에 따른 (그의 사전 및 사후 계약 이행실패로 인한)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¹⁵⁷⁾

이러한 세금과 관세를 지불할 의무는 계약이 투자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결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특혜 계약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및 관세,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투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특혜 계약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정부가 국가현물공여의 형태로 제공했던 자산을 현물로 반납하거나, 계약서 조건에 따라 제공받았던 시가의 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¹⁵⁸⁾

157) Article 22 (1), (2), and (3)

158) Article 22 (4), (5), and (6)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지역별로 국가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협정 또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간 시스템 구축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의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대상 국가인, 유럽각국과 중남미 그리고 호주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에너지개발법제 및 투자법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국가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자원외교의 상대국가이면서도 에너지개발에 관한 선진적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최종적

인 취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연구대상국가에 대한 에너지개발의 투자진출에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유럽각국에 대한 에너지개발법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상대국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법제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원이 과거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개발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호주와 중남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외교의 중요한 상대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국가들의 에너지개발법제 뿐만 아니라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20세기 초에는 에너지의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공급이 국제적 차원 특히 유럽지역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규제에 관한 쟁점은 국가 전체 나아가서 유럽 전체에 공통된 문제로 부각된다. 세계화의 영향은 에너지공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에도 현저하다. 국제협력에 의해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각 국가별로 개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이미 현저하게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간주될 것이다. 에너지에 관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은 여전히 유럽 에너지법의 핵심과제이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보장과 환경 문제가 에너지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막중하다. 해상 풍력 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여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규제의 등장으로 인해 에너지규제법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을 정도이다. 1990년대에 유

럽 전역에서 불었던 에너지산업 자유화의 바람은 경쟁적 전력·가스 시장, 역내 회원국 간의 교역, 공급의 안전보장 그리고 법과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쟁점의 통합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directives), 규칙(regulations) 그리고 가이드라인(guidelines)이라는 형태의 입법조치와 결합하였다.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던 적이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2007년 역내 에너지시장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차 복합적(package) 입법조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03년의 전력 및 가스 지침 및 규칙의 개정과 각국 규제기구 사이의 협력을 위한 기구의 신설이 포함된다. 자유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회원국 간 교역의 촉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EU가 에너지법의 조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각 회원국들의 에너지법 사이에 점차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상존할 것이며 또한 유연한 조화의 원칙 (framework of flexible harmonization) 아래 이러한 차이가 묵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회원국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affordable price) 그리고 환경의 질적 훼손 방지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에너지법의 조화가 촉진될 것은 분명하다.

중남미 지역에서 국가별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 철광석, 석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석유, 천연가스 등 석유관련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중남미 지역 전체가 모든 자원에 대하여 풍부한 부존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부족한 자원을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자국의 에너지 부존지역을 개발하거나 찾아 해매는 사례들도 있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진출할 때에는 각국의 에너지 부존 현황과 개발 상황 등에 대

하여 광물부문이 풍부한지 석유부문이 풍부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 계측을 철저히 하여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광물이나 석유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하는 이들 중남미 국가들에서조차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도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자국의 풍부한 식물 자원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대체에너지 수입을 위한 부존국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남미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양허권이나 국영기업의 독점권을 통하여, 또는 자국의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로서도 자원 확보 및 자원 투자를 위하여 진출하려는 국가의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갑자기 해당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서 법제가 바뀌어 큰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러한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권의 향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남미 각국의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에너지 정책은 관련 국가의 법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헌법을 고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부존자원을 광물자원과 석유자원으로 크게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법령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풍부하면서도 규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을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 자원별로 정확한 법률 규정과 각종 제한 등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법률과

규정에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라는 국가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규정에 이러한 취지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자원 확보정책이 특기할 만하다. 투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든 국가별 특징을 고찰하여 탐사, 개발, 생산 등의 상류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 정제, 수송, 판매 등 하류부문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확보와 투자를 위해서는 대상국의 에너지 정책과 문화, 개발법제, 투자법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원외교 대상국가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와의 자원외교 및 자원투자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수입국을 살펴보면 호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에 있어서의 에너지 자원개발 법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법제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법제 이외에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호주의 국가정책이 외국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대하고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유형지로서 이용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호주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토지이용권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크게 선주민(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주가 시작된 당시, 영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주민 보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나 시책은 최저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던 1993년이 되어야 이루어졌다. 즉,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에게 전통적인 토지와 관련된 성을 가짐으로써 선주민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민법이 제정되었다. 선주민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민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민이란 토지 소유, 방목 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호주 특유의 토지이용권리는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법령과 일반적인 광업법과의 적용 및 교차되는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자원 개발의 첫 단계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장기적 정책에서는, 호주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투자매수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하여, 호주 국가 이익에 상충되는 M&A 계획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호주 경제에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수출 진흥형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개발 및 고용기회 창설은 호주 국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안전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연방외국투자규제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의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현행 법규의 세부사항은 불투명하고, 잦은 개정으로 투자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임의해석 또는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광산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투자와 관련된 법규정비 및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최초로 국제신용평가 기관 3사(Moody's, Fitch, Standard & Poor's)로부터 투자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World Bank가 작성한 2006년 국가별 투자환경 분석에서 175개국 중 6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9단계 상승한 결과이며, 최근 우리나라 투자자의 투자

제5장 결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보다 높은 순위로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아직 과도기에 있으며, 향후 국제 기준에 맞는 법의규정과 글로벌 수요에 의한 산업개방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경신, 호주동티모르해양에너지자원공동개발협정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1호 (2008.2)
- 김정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8-15,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김진현,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신법,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2009-04 (2009)
- 국제 자원협력 심포지엄 자료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2007.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 지역경제 (1997. 8)
- _____,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2007.8)
- 문영석,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 가스연맹, 2004년 겨울호
- 류지철, 한국의 에너지안보 : 정책과 대응방안, 국제평화 제2권 1호 (2005.6)
- 오상면, 주요 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비교연구, 수시연구보서 07-02,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유승직, 호주의 에너지시장현황 및 잠재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12)
- 수은해외경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06.3)
- _____, 중미 통합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06.3)
- _____, 칠레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시사점 (2006.5)

참고문헌

- _____, 중남미 경제의 동향 분석과 전망 (2008.3)
- _____, 남미 3개국(페루, 칠레, 아르헨)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2008.1)
- _____,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향후 전망 (2007. 12)
-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프랑스 (2007)
- _____, Country Profile 영국 (2007)
- _____, Country Profile 베네수엘라 (2007)
- _____,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동향, KEII Issue Paper, No.13 (2008.5)
- _____, 한·중남미 바이오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2008.10)
- 외교통상부, 남미국가의 바이오연료 관련법 현황, 월간 중남미 정보 (제10권 제5호) (2007.5)
- _____, 에너지 자원 - 베네수엘라 (2008. 7)
- _____, 에너지 자원 - 페루 (2008. 7)
- _____, 에너지 자원 - 칠레 (2008. 7)
- _____, 에너지 자원 - 볼리비아 (2008. 7)
- _____,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08. 9)
- 이대근·부경진·이창훈,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방안, 기본 연구보고서 05-11,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 이종영,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 27권 제1g호 (2005)
- _____, 독일의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
- 정 철, 한국의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최근의 동향, 2008년 10월 31일 국제거래법학회 발표자료 (2008.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동향 (2008. 3)
- 한국수출입은행,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8.11)
- _____, 베네수엘라, 대 미국 석유수출 축소 움직임 (2004.4)
- _____,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최근 볼리비아의 자원국유화를 중심으로 (2006.6)
- _____, 브라질, 광산법 개정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검토 중 (2008.12)
- _____, 한국기업, 페루 오일광구 개발권 획득 (2008.9)
- 홍성수, 영국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법,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2007-3 (2007)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2009)
- _____,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 _____, 주요 선진국의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 _____,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9)
- _____,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브라질 (2007.12)

참 고 문 헌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2007.12)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페루 (2007.12)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칠레 (2007.12)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아르헨티나 (2007.12)
- _____,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콜롬비아 (2007.12)
- _____,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산업 개발수요 및 패키지진출가능 유망프로젝트 조사보고서(지식경제부 정책연구과제) (2008.12)
- _____, 중남미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2005)
- _____, 소규모 국별 설명회자료 -중남미 최대시장 멕시코 진출 확대 방안 (2004. 9)
- _____, 중남미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2004. 5)
- LG경제연구원, 각국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시사점, (2008. 7)
- 岡久 慶, イギリス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制, 『外国の立法』 第225号 (2005)
- 大島堅一,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に関するイギリスの経験: 競争入札の仕組みと実際, 『立命館国際地域研究』 第25号 (2007)
- A Rønne and M Budtz, “The Legal Framwork for Exploration for and Production of Oil and Natural Gas in Denmark” in (1985) JERL
- Argentin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 Australi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 Brazil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2008.
- Cameron, Peter D. Competition in Energy Markets: Law and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2nd ed., Oxford Univ. Press, 2007.
- _____, Legal Aspect of EU Energy Regulation, Oxford Univ. Press, 2005.
- Chalmers/Hadjimmanuil/Monti/Tomkins, European Union Law: Text and Materials, Cambridge Univ. Press, 2006.
- Chile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 CMS, Comparative Study on the Main Renewable Energy Support Mechanims in European Jurisdictions, 2008.
- Deutsche Bank Research - The Energy Sector in Latin America, 2007. 9. 7.
- Mexico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

참 고 문 헌

M. Rivando - Latin America - Energy Supply, Political Developments, and U.S. Policy Approaches, 2006. 10. 17.

Ocana, Carlos. Trends in The Management of Regulation: A Comparison of Energy Regulators in OECD Member Countries(IEA Working Paper)(visited June 30, 2008)<<http://www.iea.org/textbase/papers/2002/manage.pdf>>

OECD -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Latin America, 2006. 4. 24.

Peru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

Regulation for the Tax Stability Guarantee and Tax Standards of the Organic Hydrocarbon Law

Rogenkamp/Redgwell/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National, EU,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2nd ed. Vol. 1 · 2, Oxford Univ. Press, 2007.

Summary of Oil and Gas Developments in South America, 2006.

Sustainable Energy Policy Initiative Repor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7. 4. 30.

T Daintith (ed). The Legal Character of Petroleum Licences: A Comparative Study (1981)

_____, “State - Company Relations in Offshore Oil Exploitation: Regulatory and Contractual Analyses,” in B. Barton, LK Barrera-Hernández, AR Lucas, and A Rønne(eds), Regulating Energy and National Resources (2006)

USDA Gain Report, Brazil Bio-Fuels Annual-Biodiesel 2007, 2007. 8. 17

Venezuel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January 1, 2009.